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6. 3.

대 한 민 국 국 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 1

2. 감사기간 ····· 1

3. 감사 대상기관(총 44개) ····· 2

4. 감사실시 경과 ····· 3

가. 감사반 편성 ····· 3

나.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 4

5. 증인 · 참고인 현황 ····· 5

가. 기관증인 현황 ····· 5

나. 일반증인 현황 ····· 6

다. 참고인 현황 ····· 7

6. 주요 감사 실시내용 ····· 10

가. 공통사항 ····· 10

나. 보건복지부 소관 ····· 11

1) 보건복지부 ····· 11

(1) 기획조정실·인사과·감사관 ····· 11
(2) 복지정책관 ····· 12
(3) 복지행정지원관 ····· 13
(4) 연금정책관 ····· 14
(5)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 15
(6) 인구아동정책관 ····· 16
(7) 노인정책관 ····· 21
(8) 사회서비스정책관 ····· 28
(9) 장애인정책국 ····· 29
(10) 보건의료정책관 ····· 35
(11) 공공보건정책관 ····· 41
(12) 한의약정책관 ····· 46
(13) 건강보험정책국 ····· 48
(14) 필수의료지원관 ····· 65
(15 건강정책국 ····· 66
(16) 정신건강정책관 ····· 69
(17) 보건산업정책국 ····· 74
(18) 첨단의료지원관 ····· 75
(19) 의료개혁추진단(의료혁신추진단) ····· 75
2) 국민건강보험공단 ····· 76
3) 국민연금공단 ····· 86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95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102
6)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104
7)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106

8)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109
9)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109
10) 국립암센터 ····· 111
11) 대한적십자사 ····· 111
1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112
13) 한국장애인개발원 ····· 113
14)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115
15)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115
16) 국립중앙의료원 ····· 116
17)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118
18)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119
19) 한국장기조직기증원 ····· 120
20) 한국한의약진흥원 ····· 120
2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122
22) 한국공공조직은행 ····· 122
23) 아동권리보장원 ····· 123
24)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128
25) 한국보건의료정보원 ····· 129
26) 중앙사회서비스원 ····· 131
27)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131
28)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 132

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132

1) 식품의약품안전처 ····· 132

(1) 기획조정관 ····· 132

(2) 소비자위해예방국 ····· 133

(3) 식품안전정책국 ····· 134

(4) 식품기준기획관 ····· 137

(5) 수입식품안전정책국 ····· 138

(6) 식품소비안전국 ····· 140

(7) 의약품안전국 ····· 141

(8) 마약안전기획관 ····· 144

(9) 바이오생약국 ····· 146

(10) 의료기기안전국 ····· 148

(11) 감사담당관 ····· 149

(12) 규제과학정책추진단 ····· 150

(13) 위해사범중앙조사단 ····· 150

(14) 사이버조사팀 ····· 150

(15) 운영지원과 ····· 151

2) 식품안전정보원 ····· 151

3)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151

라. 질병관리청 소관 ····· 152

1) 질병관리청 ····· 152

2) 대한결핵협회 ····· 162

7.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5

가. 보건복지부 소관 ····· 165

1) 보건복지부 ····· 165

(1) 기획조정실·인사과·감사관 ····· 165

(2) 복지정책관 ····· 166

(3) 복지행정지원관 ····· 167

(4) 연금정책관 ····· 168

(5)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 169

(6) 인구아동정책관 ····· 169

(7) 노인정책관 ····· 175

(8) 사회서비스정책관 ····· 181

(9) 장애인정책국 ····· 182

(10) 보건의료정책관 ····· 188

(11) 공공보건정책관 ····· 194

(12) 한의약정책관 ····· 200

(13) 건강보험정책국 ····· 202

(14) 필수의료지원관 ····· 216

(15) 건강정책국 ····· 217

(16) 정신건강정책관 ····· 221

(17) 보건산업정책국 ····· 225

(18) 첨단의료지원관 ····· 226

(19) 의료개혁추진단(의료혁신추진단) ····· 227

2) 국민건강보험공단 ····· 227

3) 국민연금공단 ····· 237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46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53
6)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255
7)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257
8)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259
9)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260
10) 국립암센터 ····· 262
11) 대한적십자사 ····· 262
1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263
13) 한국장애인개발원 ····· 263
14)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265
15)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266
16) 국립중앙의료원 ····· 267
17)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268
18)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269
19) 한국장기조직기증원 ····· 270
20) 한국한의약진흥원 ····· 270
2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272
22) 한국공공조직은행 ····· 272
23) 아동권리보장원 ····· 273
24)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277

25) 한국보건의료정보원 ····· 278
26) 중앙사회서비스원 ····· 279
27)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280
28)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 281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281

1) 식품의약품안전처 ····· 281
(1) 기획조정관 ····· 281
(2) 소비자위해예방국 ····· 282
(3) 식품안전정책국 ····· 282
(4) 식품기준기획관 ····· 286
(5) 수입식품안전정책국 ····· 287
(6) 식품소비안전국 ····· 288
(7) 의약품안전국 ····· 289
(8) 마약안전기획관 ····· 292
(9) 바이오생약국 ····· 294
(10) 의료기기안전국 ····· 296
(11) 감사담당관 ····· 297
(12) 규제과학정책추진단 ····· 298
(13) 위해사범중앙조사단 ····· 298
(14) 사이버조사팀 ····· 298
(15) 운영지원과 ····· 299
2) 식품안전정보원 ····· 299
3)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299

다. 질병관리청 소관 ····· 299
1) 질병관리청 ····· 299
2) 대한결핵협회 ····· 310
8. 증인 및 참고인 주요 신문사항 ····· 312
가. 증 인 ····· 312
나. 참고인 ····· 313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실시한 국정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감사의 목적

❑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처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법률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국정 전반에 대한 정책 대안과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25년 10월 13일(월) ~ 10월 31일(금) [19일간]

3. 감사 대상기관(총 44개)

❑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호~제3호): 40개

❑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 4개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40개)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4개)
1. 보건복지부 2. 질병관리청 3. 식품의약품안전처 4.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5.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6.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7.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8.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9.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0.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1. 국민건강보험공단 12. 국민연금공단 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5.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7. 한국보건복지인재원 18.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9. 국립암센터 20. 대한적십자사 2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2. 한국장애인개발원 2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4.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5. 국립중앙의료원 26.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8. 한국장기조직기증원 29. 한국한의약진흥원 30. 의료기관평가인증원 31. 한국공공조직은행 32. 아동권리보장원 33. 한국자활복지개발원 34. 한국보건의료정보원 35.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36.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37.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38. 식품안전정보원 39.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40.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 대한결핵협회 2. 중앙사회서비스원 3.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4.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반 편성

❑ 감사위원

구 분		위 원
감 사 반 장		**박주민 위원장**
감사위원	더불어민주당 (14인) *위원장 포함	△ **이수진 위원**, 김남희 위원, 김 윤 위원, 남인순 위원, 박희승 위원, 백혜련 위원, 서미화 위원, 서영석 위원, 소병훈 위원, 윤호중 위원, 이개호 위원, 장종태 위원, 전진숙 위원
	국민의힘 (8인)	△ **김미애 위원**, 권성동 위원, 김예지 위원, 백종헌 위원, 서명옥 위원, 안상훈 위원, 최보윤 위원, 한지아 위원
	조국혁신당 (1인)	김선민 위원
	개혁신당 (1인)	이주영 위원

△ : 간사

❑ 사무보조자

구 분	성 명
위원회 직원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전문위원) 정경윤 · 오세일 (행정실장) 하상우 (보건의료정책조사관) 안병갑 · 조서연 · 이강혁 · 오은선 · 허기원 · 오현승 · 최은영 (복지정책조사관) 김태엽 · 김대명 · 박지호 · 양승민 (식품의약정책조사관) 정현하 · 김수진 (행정관) 최신기 (주무관) 김은숙 · 임희경 · 배자영 · 임현숙
의원 보좌진	김인아 · 변철환 · 김민식 · 허희수 · 김봉겸 · 배혜진 · 이현주 · 김용성 · 김형준 · 박정선 · 이슬기 · 윤삼정 · 김미중 · 김용천 · 신영훈 · 최영철 · 이가연 · 김영상 · 정훈재 · 이수철 · 김동현 · 원종용 · 김명신 · 김성필
정책 연구위원	하주영 · 박지훈 · 전문영

나.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시 각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10. 13.(월)		(자료정리)	
10. 14.(화)	10:00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회
10. 15.(수)	10:00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회
10. 16.(목)		(자료정리)	
10. 17.(금)	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회
10. 20.(월)		(자료정리)	
10. 21.(화)	10:00	식품의약품안전처 * 소속기관 및 소관기관 배석(지방청 포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국회
10. 22.(수)	10:0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대한결핵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국회
10. 23.(목)		(자료정리)	
10. 24.(금)	10:00	국민연금공단	전주
	17:00	현장시찰(장애인 복지시설)	남원
10. 27.(월)		(자료정리)	
10. 28.(화)	10:00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국회
10. 29.(수)		(자료정리)	
10. 30.(목)	10:00	종합감사	국회
10. 31.(금)		(자료정리)	

5. 증인 · 참고인 현황

가. 기관증인 현황

기 관 명	증인수 (명)	비 고
보건복지부	31	
질병관리청	18	
식품의약품안전처	1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7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	
국민건강보험공단	8	
국민연금공단	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	
국립암센터	1	
대한적십자사	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	
한국장애인개발원	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	
국립중앙의료원	1	
한국보건의료연구원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	
한국장기조직기증원	1	
한국한의약진흥원	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	
한국공공조직은행	1	
아동권리보장원	2	
한국자활복지개발원	1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	
한국보건의료정보원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3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	
식품안전정보원	1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1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	
대한결핵협회	3	
중앙사회서비스원	2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1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1	
계	142	

나. 일반증인 현황

연번	성 명	직업	신청의원 (소속정당)	피감기관 (출석요구일)	신 문 요 지
1	김가연	현 X코리아 공공정책총괄 상무	백혜련 위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10. 15.)	자살유해정보 차단 관련 질의
2	김동락	씨케이(주) 대표	남인순 위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10. 15.)	수급조절 및 저빈도 한약재 공급, 의약품 정보공급 시범사업 관련
3	김인원	한국건강관리협회장	이주영 위원 (개혁신당)	보건복지부 (10. 15.)	유전체 데이터 유출 관련
4	이상곤	녹십자의료재단 대표원장	백종헌 위원 (국민의힘)	보건복지부 (10. 15.)	유방암 판정으로 가슴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암이 아니었던 사건 관련
5	이태경	국립부곡병원 원장	최보윤 위원 (국민의힘)	보건복지부 (10. 15.)	국립부곡병원 수행 임상연구의 절차적 타당성 및 임상연구비 명목 급여 보전 의혹 질의
6	임철환	의료법인 열린의료재단 이사	김 윤 위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10. 15.)	열린의료재단 불법 사무장병원 수사 건 관련
7	조남제	전 한국농아인협회중앙회 사무총장	박주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10. 15.)	협회 회비로 골드바 배포 및 횡령 조사
			이수진 위원 (더불어민주당)	(10. 30.)	한국농아인협회 내부 비리 관련
8	Lee Hwee Siang	노보진코리아 대표	이주영 위원 (개혁신당)	보건복지부 (10. 15.)	유전체 데이터 유출 관련
9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한지아 위원 (국민의힘)	식품의약품 안전처 (10. 21.)	현대백화점, 농약 성분(디노테퓨란) 함유 음료 판매 관련
10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박희승 위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공단 (10. 24.)	MBK 파트너스 투자로 예상되는 약 9천억의 손실 위기에 대한 향후 대책,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및 확대 적용 필요성 점검
11	박병우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위원	백혜련 위원 (더불어민주당)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10. 30.)	허위진단서 발급 관련 사실 확인 및 채용 적정 여부 점검
12	황인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김선민 위원 (조국혁신당)	보건복지부 (10. 30.)	공동모금회 기금 횡령의 건

다. 참고인 현황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신청의원 (소속정당)	피감기관 (출석일자)	신 문 요 지
1	강주성	건강돌봄시민행동 대표	김선민 위원 (조국혁신당)	보건복지부 (10. 15.)	의료현장에서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의 한계점 지적
2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	서영석 위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10. 15.)	창고형약국, 공공심야약국 관련
3	권○○	한국사회복지 공익신고자연대	서미화 위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10. 15.)	사회복지시설 학대, 회계부정 등 공익신고 현장종사자 의견청취 등
4	김미영	(사)한국1형당뇨병 환우회 대표	최보윤 위원 (국민의힘)	보건복지부 (10. 15.)	비대면진료를 통한 만성질환자의 의료 접근성 강화 및 심리적 안정 제공 사례
5	김애정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김예지 위원 (국민의힘)	보건복지부 (10. 15.)	복지시설 내 장애인 자립지원 관련
6	김이경	대한신생아학회 Long-Term FU 사업단장	백혜련 위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10. 15.)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정상 추진 관련 의견 청취
7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대표	김미애 위원 (국민의힘)	보건복지부 (10. 15.)	중증발달장애인 탈시설 정책
8	박○○	가정위탁 자립준비청년	김미애 위원 (국민의힘)	보건복지부 (10. 15.)	가정위탁제도 개선방안
9	서상수	국립부곡병원 의료부장	최보윤 위원 (국민의힘)	보건복지부 (10. 15.)	국립부곡병원 수행 임상연구의 절차적 타당성 및 임상연구비 명목 급여 보전 의혹 질의
10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이수진 위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10. 15.)	의료대란 이후 의료현장 실태 및 환자단체 요구사항
11	양동헌	경북대학교병원장	장종태 위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10. 15.)	의료인력 지원 등 지역의료 활성화 관련
12	오경석	두나무 대표	한지아 위원 (국민의힘)	보건복지부 (10. 15.)	의료계 블랙리스트 논란 메디스태프에 대한 두나무 ESG 책임투자 배경과 경위
13	유청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	이수진 위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10. 15.)	전공의노동조합 설립 배경 및 활동 관련
			서명옥 위원 (국민의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14	이세용	부산의료원 원장	김미애 위원 (국민의힘)	보건복지부 (10. 15.)	지역 필수의료 활성화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신청의원 (소속정당)	피감기관 (출석일자)	신 문 요 지
15	이윤지	한국당원병환우회 공동대표	최보윤 위원 (국민의힘)	보건복지부 (10. 15.)	당원병환우(희귀질환자)의 AI, 디지털을 활용한 비대면진료 필요성 및 환우고충 의견 청취
16	이정식	한국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 중앙회 회장	서미화 위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10. 15.)	장애인거주시설 학대사건 관련 시설 운영법인 의견청취 등
17	이주리	안산의료복지사협 새안산의원 재택의료센터장	남인순 위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10. 15.)	통합돌봄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 관련
18	정경원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장	김 윤 위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10. 15.)	중증외상환자 진료의 지역격차 해소 및 중증외상체계 개편 관련
19	정신	전남대학교병원장	김 윤 위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10. 15.)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육성 및 관리체계 일원화 관련
20	조문주	마음공간사유 심리상담센터 대표	안상훈 위원 (국민의힘)	보건복지부 (10. 15.)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현황 파악
21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전문의	김선민 위원 (조국혁신당)	보건복지부 (10. 15.)	지역/필수 의료 공백문제 지적
22	최용재	소아청소년병원회 회장	서영석 위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10. 15.)	달빛어린이병원 개선 관련
23	최운	대한노인회 스마트경로당 정책위원장	서영석 위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10. 15.)	스마트경로당 개선 관련
			최보윤 위원 (국민의힘)		고령화시대의 비대면진료 등 디지털 의료 확대 필요성
24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이수진 위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10. 15.)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서명옥 위원 (국민의힘)		
25	한쌍수	이니스트에스티 대표	백종헌 위원 (국민의힘)	보건복지부 (10. 15.)	국산원료의약품 위기와 자국화를 위한 방안 마련
26	박보람	시신경척수염 환자	서미화 위원 (더불어민주당)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10. 17.)	시신경척수염 신약 보험 급여화 및 치료환경 개선 관련
27	박정식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 기관장	김예지 위원 (국민의힘)	중앙사회 서비스원 (10. 28.)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수탁 관련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신청의원 (소속정당)	피감기관 (출석일자)	신 문 요 지
28	한인선	(사)충북장애인 부모연대 회장	김예지 위원 (국민의힘)	중앙사회 서비스원 (10. 28.)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수탁 관련
29	김두경	(사)코로나19 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	김미애 위원 (국민의힘)	보건복지부 (10. 30.)	코로나 백신 피해 인과관계 추정 규정 관련
30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외과 교수	김미애 위원 (국민의힘)	보건복지부 (10. 30.)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31	김성현	119 구급대원	김 윤 위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10. 30.)	응급실 뺑뺑이 실태, 응급의료체계 개편 관련
32	박유로	전북특별자치도 수어통역센터 지원본부 부장 (수어통역사)	박주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10. 30.)	한국농아인협회 내부 비리 관련
33	백종우	경희대학교 교수	한지아 위원 (국민의힘)	보건복지부 (10. 30.)	사법입원제 도입 필요성 관련
34	로션킴	승일희망재단 공동대표	장종태 위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10. 30.)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관련
35	신소미	위탁가정 부모	김미애 위원 (국민의힘)	보건복지부 (10. 30.)	가정위탁제도 개선방안
36	이정민	최중증 와상장애 당사자	서미화 위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10. 30.)	최중증 와상장애인 자립지원 욕구 및 필요성 등 복지서비스 인프라 관련 의견청취
37	이한결	정신장애인 당사자	김예지 위원 (국민의힘)	보건복지부 (10. 30.)	정신장애인 지원사업 필요성
38	정은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노동자 겸 작가	서미화 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위원 (조국혁신당)	보건복지부 (10. 30.)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 관련 발달장애 참여 당사자 의견청취 발달장애인 당사자로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의 필요성 제기
39	정은화	자활기업 ‘홈케어마스터’ 대표	안상훈 위원 (국민의힘)	보건복지부 (10. 30.)	청년(경계선&자립준비청년 등) 특화 자활사업 확대 필요성 등

6. 주요 감사 실시내용

가. 공통사항

(1) 2025년도 업무현황

(2) 2024년도 및 2025년도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

(3) 2024년도 및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4)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5) 2024년도 및 2025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6) 2024년도 및 2025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7)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내규 포함) 등의 제정·개정·폐지현황

(8) 위 (1)~(7) 요구자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9)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나. 보건복지부 소관

1)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 인사과 · 감사관

○ 국회 업무보고 현황에 직급별·성별현황 및 장애인 고용 현황을 기재할 수 있도록 산하기관에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원장이 국정감사 앞둔 돌연 사퇴, 기관장에 의한 괴롭힘(갑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필요

○ 지방재정을 고려한 국고지원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을 필요

○ 보건복지부 직원 마음건강 진단 결과와 관련하여 복지부 직원 대상 정신건강관리시스템의 제도화 및 정원 정상화 계획 수립 등 대책 마련 필요

○ 보건복지부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업무량에 적합한 수준으로 조직 보강 및 인력 확충 필요

○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고위·관리직군 중 여성 비율이 향상되도록 노력 필요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피해 현황 파악 및 신속한 복구가 필요하며, 정부의 책임 인정과 국민 피해 확인 시 보상 검토 필요

○ 민간의료기관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필요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해외사무소 법적지위 미확보에 따른 파견직원 안전 문제 및 ODA사업 차질 우려 관련 질의

○ 대미 통상 의약품 관세 협상과 관련한 국내 대응 상황에 대한 질의

○ 최근 부내 각종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내부비위 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 필요

○ 국립부곡병원의 임상연구비 집행에 있어서의 부적절성에 대한 확인 및 제도 개선 필요

○ 현 정부 사회부총리제 폐지에 따른 사회부처 간 협업 대책 마련 필요

○ 사회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서비스 관련 기관의 업무 역량에 대한 진단을 시행하고 인력·예산 부족 수준 관련 자료를 마련할 필요

복지정책관

○ 복지 신청주의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복지재정 포퓰리즘에 따른 재정 확대에 대한 질의

○ 향후 청년, 미래세대가 짊어질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정책 전략 마련 필요

○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설치 의무화 이후 설치 확대 노력 필요

○ 중증장애인의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참여를 위한 실태 파악 및 개선 노력 필요

○ 사회복지사 실태 신고제 도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 질의

○ 기준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의 격차 해소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하여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의 전면 재검토 필요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및 신청주의 폐지 등 방안 적극 검토 필요

○ 기준중위소득의 정확한 산정방식을 마련하고, 그 산정원칙 및 조정수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위촉 시 다양한 단체 및 인사 포함 방안 마련 필요

○ 자활사업 참여자 수 확대 및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필요

○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창업률 제고 등 실효성 있는 자활사업 운영 필요

○ 청소년 노숙인 실태 파악 및 사각지대 해소 필요

○ 여성 노숙인 임시보호시설 내 정신건강 전문요원 배치 필요

○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에 대한 질의

○ 수급자 본인부담 증가 우려가 있는 의료급여 정률제 재추진 여부에 대한 질의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서비스 과소이용자 관리 방안 마련 필요

복지행정지원관

○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정확도 제고, 지자체 인력 합리적 운영 필요

○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신속한 구축을 통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고독사 위험군 발굴하고 발굴 규모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통계 수집 항목으로 장애여부, 질환유무, 소득수준 등 복합 위험요인 반영 필요

○ 지자체에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고독사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표준 매뉴얼 마련 필요

○ 청년층뿐 아니라, 중장년층을 위한 고독사 및 고립 예방대책 마련 필요

○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고 개선 계획 마련 필요

○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정 기준으로 복합 소득기준 산정 모델 도입 검토 필요

○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정 기준으로, 소득 발생과 반영 시기의 시차가 있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사용한 것에 대한 지적

○ 성평등가족부에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접근 보장 필요

○ 영구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인력기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별도 인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검토 필요

○ 사회복지관에 시설안전관리자 의무 배치 필요

○ 사회복지관 관장 자격 기준 상향 필요

연금정책관

○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전문위원에 대한 철저한 복무관리 필요

○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 검토 필요

○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사전 부여 및 청년세대에 대한 국비 지원 필요

○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필요

○ 자동조정장치, 국고 투입 등 국민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의 대부금 상환 시 상속 등에 따른 연체관리 효율화 필요

○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요건 재검토 필요

○ 평균 기대여명을 고려한 중증장애인의 노령연금 조기 수급 검토 필요

○ 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공석 장기화 해소 필요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및 수도권 중심의 연금보험료 징수 불균형 완화 필요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및 불안정 고용계층을 위한 대책 필요

○ 여성 및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한 대책 필요

○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 관리체계 강화 필요

○ 국민연금 외국인 반환일시금 수급관리 강화 필요

○ 국민연금기금의 홈플러스 투자 손실 점검 필요

○ 국민연금 책임투자 공시 내실화 필요

○ 노동권 침해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기금의 투자현황 점검 필요

○ 국민연금기금의 석탄기업 투자제한 기준 조정 필요

○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국민연금 주주활동 강화 필요

○ 기초연금 부정수급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기초연금 재산공제액 상향 필요

○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 대상 기초연금 지급 방안 마련 필요

○ 국민연금운용에 정치권 개입하지 않도록 기금운용 독립성의 원칙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연기금 기금운용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방안 마련 필요

○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 재정안정(최소 70년 유지)을 위한 정부안 마련 필요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 복지사업의 유사중복 문제 해소 및 급여의 효율적 전달을 위해 사업을 통합 조정하여 단순화할 필요

○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신규·변경만 조정이 가능하고 기존사업은 통폐합이 안 되어 관련 법안 발의 시 검토 필요

인구아동정책관

《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

○ 저출생 국민인식개선 사업 취지에 맞도록 단체를 선정하고, 포교활동에 정부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인구정책평가센터」 사업에 대한 개선 필요

○ 고령층 건강관리 및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를 위한 인구정책 과제 필요

《 위기아동청년 》

○ 13세미만 가족돌봄아동 지원 위해 병원·학교 등의 적극적 발굴과 홍보 강화 노력 필요

《 자립준비청년 》

○ 아동복지시설에서 장애인 거주시설로 보호시설이 변경된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대책 필요

○ 자립준비청년 경제·금융교육 및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필요

○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 간 자립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와 협의하여 지원 체계 일원화 검토 필요

○ 보건복지부 자립수당과 성평등가족부 자립지원수당의 시스템 연계 필요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

○ 위기임산부에게 충분한 지원을 위해 인력, 예산 확대 필요성 검토 필요

○ 경기남부 지역상담기관 운영 종료 관련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 필요

○ 숙려기간 연장 및 베이비박스 폐지 검토 필요

○ 지역상담기관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처우개선 필요성 검토 필요

《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관련 》

○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대상 밖인 병원 밖 출산 시 지자체 담당자 등의 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한 출생신고 불편 해소 필요

○ 병원 밖 출산의 경우 출생등록 간소화 및 지자체 직권등록 절차 마련 필요

《 모자보건사업 관련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 인공수정 지원 횟수 및 사실혼 지원 확대 검토 필요

○ 산후조리원의 수도권 집중 현상 해소를 위한 국가 역할 강화 필요

○ 인구감소지역의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가 지원 필요

○ 산후조리원 내 RSV 등 감염병 관리감독 체계 강화 필요

○ ‘크론병가족사랑회’ 등에서 건의하고 있는 크론병 환아의 특수조제분유 지원 확대 요구에 대해 검토 필요

○ 미숙아 출생률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의 본사업 성공적 안착 필요

○ 결혼 여부 불문 출산을 희망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지원 필요

○ 남성 난임 지원 등 포용력 있는 임신·출산 지원 필요

《 인공임신중절 관련 》

○ 모자보건법 제14조 우생학적, 유전학적 사유로 장애인에 대한 인공임신중절 예외적 허용 조항에 대한 대책 필요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19.4월) 이후 법적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속한 법 개정과 제도 정비 추진 필요

○ 여성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결정을 안전하게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과 안전한 임신중지 환경 마련 및 법·제도 개선 논의에 여성의 목소리 반영 필요

《 아동수당 》

○ 아동수당 서울시 국고보조율을 타 지자체 비율과 동일하게 조정되도록 재정당국과 협의 필요

《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호 관련》

○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생존, 건강, 보호 등을 위한 개선 방안 검토 및 범정부 차원의 논의 필요

《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 》

○ 입양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전문성 강화, 아동 분야 전문공무원 제도 도입, 입양정보공개청구 전담인력 증원, 입양기록관 예산 편성 등 노력 필요

○ 입양과정에서 친부모·예비양부모 개인정보 상호노출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입양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입양인 당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 필요

○ 장애입양인의 입양기록물 열람 접근성 보장을 위한 계획 마련 필요

○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감사 후속 조치가 미비사항이 없는지, 관련 예산은 적정한지 점검 필요

○ 입양정보공개신청 접수 지연 등 해외입양정보공개 사이트 문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 마련 필요

○ 진실화해위원회의 해외입양 인권침해 조사결과 권고사항에 대한 책임 있는 후속 조치 계획 마련 필요

○ 해외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 관련, 정보공개사유, 횟수 제한 관련 개선 및 해외입양인 2세의 정보공개청구권 인정 등 제도 개선 필요

《 아동권리보장원 》

○ 공적 입양체계개편, 아동보호·지원정책 강화 등 아동권리보장원의 안정된 역할 확장을 위해 직원 처우 개선 및 인력 증원 검토 필요

《 아동복지시설 관련 》

○ 부산 덕성원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과 관련된 후속 조치가 장기간 지체되고 있어 조치 필요

○ 13년간 변동없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 필요

○ 시행령 등에서는 계약 의사를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아동보호치료시설에는 부족하기에 적정한 조치 필요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양육시설 운영 등 보호대상아동 관련 사업에 대해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적정한 조치 필요

《 마을돌봄 관련 》

○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전국 지자체에서 호봉제 적용, 인력 추가 배치 등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 필요

○ 다함께돌봄센터 직영 전환 확대방안 및 운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적용 시 지자체별 임금 격차가 크지 않도록 조정 기능 등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 필요

《 가정위탁 관련 》

○ 위탁부모에게 법정대리권을 부여하여 수술, 입·전학 등 일상 양육 지원 필요

○ 위탁가구가 다자녀 혜택이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지원 체계 등 공공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개선 필요

○ 가정형 보호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보호대상아동 면접교섭 활성화를 위한 전면적 제도 개선 필요

○ 위탁부모 기초생활수급 지출 증빙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가정위탁 지역별 위탁부모 모집 pool 칸막이, 양육보조금 격차 해소 필요

《 아동학대 관련 》

○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 대한 용어 등 인식개선, 생존아동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 확실한 처벌, 체계적인 아동보호 시스템을 갖출 필요

○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의 인력보강 및 전문성 강화 필요

○ 모로코 교민 부부에 의해 학대 피해를 입은 입양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

○ 출생신고가 지자체장 직권으로 처리된 아동에 대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위기아동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고 직권 처리 후 바로 상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전달할 필요

○ 익산 보육원 장기 아동학대관련 철저한 진상조사, 피해아동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

○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형제자매, 친지 및 이웃사람 등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고의무자로 명시하여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할 필요

○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 대한 정확한 통계 관리와 살아남은 아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아동사망검토제의 적극적 추진 필요

○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선임상담원 신설과 상담원 직위 세분화 등이 이루어졌으나 다시 이 조항이 삭제되는 재개정 사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서 근무하던 상담원이 근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피해사례 관련 전수조사 필요

○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요보호아동 그룹홈 등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필요

노인정책관

《 노인복지 》

○ 생계형 고령범죄 방지를 위한 범부처 통합지원체계 구축 필요

○ 고령화, 노인빈곤, 공적연금, 노인 일자리 등 노인문제를 다루는 컨트롤 타워로서 노인정책관을 확대할 필요

○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웰다잉 관련 내용 포함 등 추진 계획을 마련할 필요

○ 노인맞춤돌봄사업 '위탁기간-근로계약기간'이 동일하게 설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노인생활지원사의 교통비·통신비 등 돌봄경비 지원 예산을 마련할 필요

○ 케어안심주택의 전국 확산 및 대상자기준·운영방식·유형 등 마련 필요

○ 고령층 주거정책 설계 및 노인복지주택의 서비스 지원 활성화 필요

○ 경로당 부식비·시설개선비 예산 지원 필요

○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 기재부 협의를 통하여 경로당 부식비 예산을 반영할 필요

○ 노인복지관 급식단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

○ 노인을 위한 공공서비스 종합플랫폼으로서 경로당을 활성화할 방안 검토 필요

○ 스마트경로당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현장의 정책 참여 대책을 강구할 필요

○ 경로당 공공요금 감면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국 실태조사, 표준 운영지침 마련 등에 대한 견해

○ 노인여가복지시설 건강관리 목적 실현을 위하여 간호사 배치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상 직원배치기준을 개정할 필요

《 노인 일자리 》

○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를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도록 지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고 제수당의 안정적 지급을 위한 계획을 마련할 필요

○ 노인일자리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필요한 참여자 선발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충분한 안전 담당 인력을 확보할 필요

○ 노인일자리 참여자 최고령자 현장을 조사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노인일자리 참여를 독려할 필요

○ 경로당 급식도우미 등 노인 일자리 확대와 처우개선 필요

○ 노인 아이돌보미 사업의 매칭률 저조 사례를 볼 때,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개선할 필요

《 노인 인권 》

○ 노인학대, 재학대 증가에 따른 예방 및 사후관리 방안 강구 필요

《 장사지원사업 》

○ 장례식장 내 같은 공간에 일반 시신용, 감염병 사망자용 안치냉장고가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안치냉장고 표준화 기준을 마련할 필요

《 치매 관리 》

○ 치매선별검사는 운전능력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에 치매선별검사 활용하는 것을 재검토할 필요

○ 발굴·전달·평가체계 개선, 사회전담인력 확충 등 치매 공공후견사업 및 공공신탁 시범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조기 진단 및 치료 지원 방안이 포함여부, 치매 예방을 위한 대책 등 질의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입장 및 추진계획 등 질의

○ 치매 예방을 위한 치매조기예방체계 강화 필요

○ 치매환자 증가에 따른 경찰 실종신고 등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배회감지기 예산을 배정하여 대응할 필요성에 대한 복지부 입장과 계획 질의

《 의료 · 요양 · 돌봄통합 》

○ 성공적인 통합돌봄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지자체 지원 예산 확보 노력 필요

○ 전담인력·전담조직 확충, 운영가이드라인 마련, 재택의료·방문진료 확대, 운영가이드라인 구체화, 노인안심케어주택 활성화, 장애인·정신질환자 사업 개발 등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준비 필요

○ 통합돌봄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전담인력 확보, 통합돌봄협의체 구성, 재택의료센터 설치 등 준비상황을 점검할 필요

○ 통합돌봄사업 전담조직 표준모델과 읍면동 보건소 간의 역할 기준 마련 및 지자체 준비상황 점검 필요

○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원 기준을 재검토하고, 재택의료 확충, 인력·자원 조직화 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

○ 통합돌봄사업 예산 지원대상을 모든 기초 지자체로 확대하고, 지원규모 증액 및 국고보조율 상향, 예산지원 기준 개선(노인・장애인 인구 등)을 검토할 필요

○ 지자체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간 협의 경과에 대한 질의

○ 지자체 통합돌봄 인력 확충을 위해 인건비 6개월 한시 지원을 확대하고, 공무원 외 민간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할 필요

○ 시범사업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본사업 예산을 확대할 필요

○ 퇴원환자 연계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통합돌봄 사업 내 식사지원 서비스 범위 및 표준 제공 기준 마련과 정부 차원의 영양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견해에 대한 질의

○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 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돌봄 통합지원 정보 시스템 구축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질의

○ 서비스 대상자 및 시설의 통합판정결과 수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성에 대한 질의

○ 기존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향후 사업 평가에 따른 예산 추가 배정 시 평가 기준에 대한 질의

○ 기존 서비스와의 중복에 대해 어떤 대응을 마련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관련하여 여러 계층에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향후 법 개정 계획에 대한 질의

○ 통합돌봄 사업 내 구강관리 서비스를 지침 내 반영 계획에 대한 견해에 대한 질의

《 장기요양보험 》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의 전국 시군구 확대 필요성 질의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서비스 범위 및 참여기관 확대를 위한 유인책 마련 필요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에 모든 기초 지자체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의과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에 의과의원이 참여할 때까지 보건소가 한시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지방의료원의 거점 재택의료센터 역할 수행에 대한 검토 필요

○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재택의료센터 설치 방안 마련 필요

○ 장기요양 방문간호 활성화 계획에 대한 질의

○ 통합판정결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유인책 마련과 통합판정 기준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 방안에 대한 질의

○ 장기요양 인정조사표 및 돌봄통합지원법 종합판정 항목에 ‘구강기능·구강위생 상태’ 지표 신설에 대한 견해 질의

○ 온요양원의 부당 이득금에 대해 철저한 환수 필요

○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이득금 징수시효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 질의

○ 요양기관 환수제도의 불합리성과 신고포상금 제도 악용 사례에 대한 질의

○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의 부적정 가입 사례에 대한 합리적인 급여비용 환수 방안과 전문인 수 산정 기준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필요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기준의 법적 모호성 및 소급 환수 문제에 대한 질의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관련한 환수를 중지하고, 2025년 이후부터 적용할 필요

○ 복지용구 예비급여 제도 개선을 통한 신기술 복지용구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고령친화식품을 복지용구 급여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 영양급여 항목을 신설하는 계획에 대한 질의

○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관련 근속기간 조건에 대한 제도개선 검토 필요

○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부담 완화 정책, 고소득층 및 직장가입자의 부담 합리화를 통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재정개선책 마련 필요성에 대한 질의

○ 장기요양 재정 안정화와 질 관리의 병행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

○ 기초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국고 지원 필요성 및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 수립 방안에 대한 질의

○ 요양보호사 인력 가산 수가 제도 운영의 경직성 및 재정 부담 가중 문제에 대한 질의

○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 항목 분리 또는 별도 수가체계 마련 방안 검토 여부에 대한 질의

○ 요양보호사 단체의 장기요양위원회 참여 필요성에 대한 질의

○ 장기요양 전산시스템의 장애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고령 여성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장기요양 통합관리 서비스 강화 계획에 대한 질의

○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건강상태 개선에 따른 보상제도 관련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

○ 장기요양보험 등급하향 변경에 따른 보상과 재가복귀 지원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질의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호봉제 도입 필요

○ 같은 업체가 요양원, 위탁 급식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급식비 리베이트 등 급식 관련 제도적 개선 필요

○ 외국인 인력 확대에 앞서 요양보호사 처우와 근속환경을 개선하여 자격 취득자가 실제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적 대책 마련 필요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임금가이드라인 제정 적극검토 필요

○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핵심 메시지로 하는 사회적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필요

○ 장기요양기관에 설치된 CCTV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질의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의 건강관리’ 기능을 명시하는 개정 추진 계획 여부에 대한 질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을 통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실질적인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 계획에 대한 질의

○ 장기요양시설 내 간호인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과 이행 계획에 대한 질의

○ 요양시설 간호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사방 전 의료비 집중구조 완화 등 재정절감 효과 분석 계획에 대한 질의

○ 장기요양기관에서 전문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문재활실 설치기준 마련 및 시범사업을 통한 별도 수가 제도화에 대한 질의

○ 입소자 정원 100인 이상 장기요양시설 치과 촉탁의 선임 의무화에 대한 질의

○ 장기요양시설 계약치과의사 기본수가 외에 치석제거, 불소도포 등 기타 추가적 수가 신설에 대한 질의

○ 재가급여에만 치과위생사 배치기준이 있고 시설급여에는 배제된 불균형 해소에 대한 질의

○ 일본과 같이 구강관리 전담 수가와 요양시설 내 치과위생사 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관련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 등 보완책 마련에 대한 질의

사회서비스정책관

○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공공돌봄 등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강화 필요성 질의

○ 서울 사회서비스원 폐원 절차의 보조금법 제24조 위반 관련 질의

○ 통폐합된 사회서비스원의 분리·독립을 검토할 필요

○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에서 삭제된 직접서비스 내용의 복구를 위한 개정 추진 관련 질의

○ 돌봄기본법 제정안 발의에 따른 입법 논의 적극 협조 필요

○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예방 등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 강화 필요성 질의

○ 학교 잔식의 사회복지기관 기부와 관련하여 계약, 이용자 동의 여부 등에 대한 조사 및 세부계획·가인드라인 마련 계획에 대한 질의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지방이양 철회 필요

○ 노란봉투법 관련 시설 유형별 업무연속성 계획(BCP) 수립 및 취약시설 긴급보호 매뉴얼 제정에 대한 질의

○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련,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기준(안)」 등 사용자 책임 조항 질의

○ 주거복지센터 근무 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관 근무 경력 인정 관련 질의

○ 대규모 학대사건이 발생한 사회복지시설 및 운영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강화하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령 제·개정 추진 질의

○ 사회복지시설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질의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대체인력 지원 활성화 등 종사자 처우개선 필요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시 통상임금에 명절휴가비 반영 필요

○ 사회복지시설 의료직 직군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선 필요

○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보건복지분야 서비스 공백 대비 대체인력 확보 및 예비인력풀 운영체계 구축 필요

장애인정책국

《 장애인정책 일반 》

○ 장애인 노인복지서비스 연령기준 조정 필요

○ 장애인복지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지역별 격차 문제 개선 필요

○ 경계선지능인 보호·지원 필요

○ 장애인 개인예산제 관련, 신규 급여 편성 및 부처 간 칸막이 제거 방안 마련을 검토 필요

○ 장애인권리보장법 내 탈시설 권리를 규정할 필요

○ 호흡기 착용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포함 또는 보완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

○ 시청각장애인은 별도 장애유형으로 구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시청각 장애인 지원 관련 법안 제정안에 대한 관심 필요

○ 뇌병변장애인 지원 정책 수립 및 컨트롤타워 설치 등에 관한 질의

《 장애인등록 》

○ 만성장부전으로 인해 TPN 치료가 필수적인 상태에 대한 장애인정 기준 마련 필요

○ HIV 감염인에 대한 장애인정에 대한 견해 질의

《 장애인지역사회자립 지원 》

○ 장애인거주시설 외에 다른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도 지역사회 자립 지원 필요

○ 장애인거주시설 환경개선과 돌봄여건을 고려한 균형있는 장애인 자립 지원 정책 추진 필요

○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표준 인력 배치 모델 개발 등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보완 필요

○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등도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을 통해 자립지원 필요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시설의 예산 지원 확대 필요

《 장애인단체 관련 》

○ 한국농아인협회를 철저히 조사할 수 있는 TF 필요

○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해 추가 감사 필요

○ 전 농아인협회 사무총장에 대한 철저한 감사 필요

○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대표이사의 거주시설 내 학대 및 사망사건에 대한,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 필요

《 장애인학대 대응 》

○ 온라인기반 장애인학대 대응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체계 강화 및 온라인 기반 학대 법적 정의 등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필요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감시·시정권고가 핵심이나 사회서비스원은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회서비스원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시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방안 필요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신속한 현장조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실태조사와 연구용역 실시 필요

《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 》

○ 장벽 없는 키오스크 정책 관련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내용 재검토와 장애계 간담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필요

○ 장벽 없는 키오스크 정책 관련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장애인의 접근성을 후퇴시키고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이유로 장애인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것으로 복지부가 장애인의 기본권을 스스로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 제시 필요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협력 》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관련, 연도별 이행목표나 핵심추진과제 등 단계적 협약 이행 로드맵 마련 필요

○ 2025년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GITC) 관련, 복지부 장관 또는 차관 참석 필요

《 장애인 편의증진 》

○ 장애인 화장실 설치 기준에 이용자 욕구 반영 필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서점을 포함하여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설치 필요

○ 장애인편의시설 관리체계 공백으로 인한 사후관리 부재하므로 대책 마련 필요

○ 스포츠 경기장의 장애인석 설치 법적 기준 미달 지적,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포함한 종합대책 필요

《 장애인거주시설 관련 》

○ 장애인 학대 처벌 강화 및 장애인인권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사회복지시설의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 필요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시설 종사자 대상 불합리한 제도 개선 필요

○ 사회복지시설 내 장애인 재생산권에 관한 전수조사 및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배상 등 필요

○ 장애인거주시설 내 학대 및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

○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 달성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우선구매제도 실효성 강화 필요

《 장애인 일자리 지원 》

○ 훈련장애인 훈련지원을 위한 훈련수당 인상 및 사업체 지원금 신설 필요

○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법안 입법을 위한 정부 노력 필요

○ 복지일자리 15시간 확대 및 배치기관 적절성 검토 필요

○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참여자 급여 인상 및 수당 신설 필요

○ 시각장애인 노인 대상 맞춤형 고용대책 필요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장애인 생활지원 거점으로 기능 전환할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 필요

○ 보조기기 품목 분류 오류로 인한 본인부담금 발생이 재발하지 않도록 분류체계 정비 필요

○ 보조기기 분야의 신기술 발전을 반영한 장애인보조기기법 전면 개정 검토 필요

《 장애인활동지원 》

○ 반복 입원이 불가피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는 입원 일수 규정의 예외 적용 필요

○ 장애인활동지원 지침 중 실제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순 대기 시간은 서비스 제공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구 삭제 검토 필요

○ 65세 이후 시설에서 나와 자립한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삭감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 재가 장애인의 동아리, 자조모임 등을 정당한 사회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 필요

《 발달장애인 지원 》

○ 중복장애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 해소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을 위해서는 구체성 있는 실질적 대책 필요

○ 발달장애인 부모 고령화에 따른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인력 및 재정 확보 대책 마련 필요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AI 기반 돌봄 시스템 도입 방안 검토 필요

○ 발달장애인 형사·사법절차 지원에 대한 통계자료 관리 및 권리구제 전담인력 확충 필요

○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공신탁 사업의 종합적인 관리 강화 대책 마련 필요

○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가입대상에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활동 종료 후 긴급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의 제도적 정비 필요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및 후견인 활동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 마련 필요

○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광고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기반으로 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과 탈시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주제로 다룰 필요

○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광고는 전체국민 대상의 인식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발달장애 국민을 위한 알기 쉬운 공익광고 제작 필요

《 장애인 건강정책 》

○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조속한 수립 필요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예산지원 및 정상 운영 방안 마련 필요

○ 발달재활사 국가자격화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단가 현실화 및 바우처 확대 등 장애아동 발달치료에 대한 공적 보장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가능 소득기준 완화 및 장애 유형 등에 적정한 서비스 이용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물리치료사 등 국가자격 소지자에 대한 제공인력 인정 등 제공인력 기준 개선 필요

○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지역별 격차 해소 및 모자의료센터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단계적 전환 등 확대 방안 검토 필요

○ 장애여성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접근성 개선 및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에 대한 장애여성 의견 수렴 필요

○ 장애인 건강검진 당연지정 기관에 대한 시설·장비·인력 기준 충족 계획마련 필요

○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검진센터 장애인이용확대 필요성 및 방안 마련 필요

《 기　타 》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관련하여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 구축 및 전문기관 지원 필요

보건의료정책관

《 비대면진료 관련 》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 전체 외래진료 대비 비대면진료 비율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의 타당성과 근거, 준수 여부 관리·감독 방안 질의

○ 환자 동의 없이 비대면진료 후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한 방지 대책 질의

○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의 기능, 기존 비대면진료 중개 매체와의 차별성 및 연동 계획 질의

○ 비대면진료 지역 제한 시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방 거주자가 비대면진료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 마련 여부 및 지역 제한 관리·감독 방안 질의

○ 기존 비대면진료 중개 매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여부와 신규 제도 설계시 민간 의견 수렴 계획 여부 질의

○ 비대면진료 중개 매체 활용 및 관리·감독 방안 질의

○ 비대면진료 후 약 배송 허용 범위 질의

○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시 의료데이터 표준화를 고려하여 추진 필요

《 의료인력·간호정책 》

○ 전남 국립의대 설립 일정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질의

○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전공의법 이행 관련 현장 실태 등 전공의 수련환경 관련 질의

○ 향후 의사 국가고시 및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 질의

○ 지역의대 졸업생들의 수도권 유출 현상에 대한 원인, 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질의

○ 의사인력수급추계위의 수급 추계 로드맵 수립에 관한 질의

○ 전공의 복귀에도 수도권 쏠림 현상 원인과 대책, 필수과목 의료인력 부족 문제 질의

○ 의대생 집단휴학 복귀에 따른 교육 공백 및 의학교육 시스템 보완대책 필요성 질의

○ 의료법상 전문의 근무시간·근로기준법 예외 구조 개선에 대한 검토 내역 및 제도개선 논의 현황에 대한 질의

○ 채용이 감소한 신규 간호사 취업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채용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취업난 해소를 위한 대책 보고 필요

○ 요양병원의 간호사 정원기준 준수 여부 관리·점검 방법 질의

○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기준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추진 상황 및 추진 방향, 향후 일정 질의

○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에 따라 간병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간병 인력 교육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평가인증제와 요양병원 인증·적정성 평가의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업무 관련 위탁근거 마련 및 보수교육·취업정보·직무역량과 연계된 자격관리체계로 정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계획 질의

○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한 시범적 “휴가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추진 여부 및 검토 현황 질의

○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 대한 교육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이론 및 실습 교육 과정을 제대로 이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는 방안 질의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출산 환경을 위해 저위험 분만을 담당하고, 임신부터 출산, 산후까지 돌봄 연속성을 제공할 수 있는 조산사 양성 확대 관련 질의

○ 중증장애인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환자 선별 방지를 위한 해결책 마련 필요

○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의 조속한 확대 필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전담병실 운영 개선 및 공공병원 참여 확대 확대 필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인력 산정배수(4.8) 상향 필요

○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단계별 목표와 이행 계획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

○ 야간간호 가이드라인 제도 실효성 강화 필요

○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에 수술기록, 약물 처방 초안 작성 등 의사 고유 업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할 필요

○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관련 직역 갈등을 넘어 국민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책임 강화 필요

○ 진료지원 전담 간호사 근무안정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전공의 복구 이후 진료지원인력 보호 대책 필요

○ 진료지원 간호사의 안정적 정착 대책 마련에 대해 질의

○ 지역사회 내 의료-요양-돌봄 연계형 재택간호센터 도입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

○ 간병인과 중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도화에 관한 입장 질의

○ 간병인력을 포괄적으로 통합하는 국가공인자격 도입 및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보건의료정책 일반 》

○ 비만치료제 주사제(위고비) 무분별한 처방, 남용에 대한 관리 필요

○ 의약품 장기처방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 무연고 장애인의 보호자의 치료 동의 관련 제도 정비 필요

○ 메디스테프 사례와 같이 SNS상 비방 등을 통해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방지 필요

○ 실손보험 의료광고 금지 구체적 법제화 필요

○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 피해 실태조사 필요

○ 성별 차이를 고려한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필요

○ 중증 신장장애인을 위한 TBPE 검사 대체 방식 검토 및 제도 개선 계획 질의

○ 의료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및 재발 방지 필요

○ 신의료기술평가 선진입 제도 중복활용 등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영상검사를 분리하는 등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 강화 필요

○ 의료기사의 면허관리체계 정비 필요

○ 의료기사 면허신고제 실효성 및 법적 제재 집행의 투명성 확보 필요

○ MRI, CT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무분별한 MRI, CT 설치 관리 필요

○ 의료기관 평가인증 시 항생제 사용량 지표를 필수 항목으로 개선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상급종합병원 불법 촬영 대응체계 개선방안 검토 필요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지역센터 확대, 조직력 강화 및 정보화 인프라 강화 대책 마련 필요

○ 정신의료기관 내 환자 사망사건 관련,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대한 복지부 책임 강화방안 검토 필요

○ 의료법령상 요양병원 입원 대상에 의료 필요도 반영 등 강화 필요

○ 요양병원 개소수 및 병상수 감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견해 질의

○ 산부인과 의료진(분만 취약지 등)의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불안 해소를 위해 의료사고 배상 지원, 국가보상 강화, 형사 특례 도입 필요

○ 의료분쟁 조정절차의 자동개시 대상 사건 전면 확대 필요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대상 관련, 산모의 중증장애까지 확대 필요

○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의 과잉 범죄화 방지 등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 필요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의 지방 참여 유인대책 필요성에 대한 질의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역별 목표병상 재검토 필요에 관한 질의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적응증 확대 및 입원종료일 기준 개선 대한 질의

○ 재활의료기관 지정이 없는 지역의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나 기준 완화 필요에 대한 질의

○ 국민의 의료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종합병원 내 사회복지사 배치기준 준수 필요성 대한 질의

○ 병원 수질 관리 부실에 따른 국민 건강 위협에 대한 질의

○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 폐기하는 처리 방법에 관한 질의

○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해 추진 중인 건보공단 특별사업경찰 권한 부여 법안과 불법개설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을 강화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 추진일정에 관한 질의

○ 불법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미환수액 끝까지 환수 필요

○ 의원급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 전문의·일반의 자격을 표시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

○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에 노인복지시설 및 디지털헬스 서비스 관련 사업 중 일부를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입장 관련 질의

○ 병원 회계 기준의 부동산과 의료기기 임차비용은 세분화하고, 같은 의료법인 병원인 경우에는 병상 기준과 상관없이 회계 보고 대상 기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약사-한약사 간 면허범위 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하며, 한약사 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규제 필요

○ 창고형 약국 관련 동네약국 상생 및 의약품 오남용 우려 문제 해결 방안 마련 필요

○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및 판매 등록 기준(24시간 연중무휴) 완화 등 제도 개선 필요

○ 약물 운전 위험성 및 처벌사항 등 경고 문구 안내 필요

○ 수급불안 의약품에 한하여 성분명 처방 의무화 등 법제화 필요하며, 성분명 처방 의무화와 함께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 동시 시행 필요

○ 자가주사제 무분별한 원내처방 문제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간납업체 및 대형병원에 독점 공급하는 의약품·의료기기 도매상에 대한 조사 필요

○ 리베이트 근절 위한 사전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마련 필요

○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대란 대응 등에 대해 백서 작성 필요

○ 응급·분만 등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병원의 규모와 기능을 병상 수급 계획에 반영할 필요

○ 비장애인 운영 불법안마소 단속 관련 질의

공공보건정책관

《 질병 정책(암) 》

○ 국립암센터 공공의료 품질 제고를 위한 노후장비·필수의료인력 운영체계 개선 필요

○ 유방암 캠페인 행사 관련 유관기관 관리·감독 강화 및 유방암 환자 지원 필요

○ 국가건강검진에 유방초음파 도입 계획에 대한 입장 질의

○ 자궁경부암 검진방법으로 자궁경부세포검사를 HPV DNA 검사로 전환할 의지가 있는지 질의

○ PSA 검사의 국가암검진 도입에 대한 검토 결과 및 방안 필요

○ AI 기반 유방암검진 판독 시범사업과 성과평가를 통해 확대를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

○ 지역암센터에 대해 국가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질의

○ 여성암 예방을 위한 국가검진항목 확대와 암 수술의 수도권 집중현상에 대한 정책적 대안에 대해 질의

○ 말기 위암환자 맞춤형 정밀검사 강화와 지방환자의 치료 접근성 개선에 대한 입장 질의

《 질병 정책 (기타) 》

○ 중증 뇌전증 환자의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 지방 거점병원 지정 및 4차 뇌전증센터로의 육성 지원 필요

○ 만성콩팥병 환자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종합계획 및 원인질환과 연계한 통합관리체계 등이 부재하므로 국가 차원의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소록도에 대한 행정관리 기능을 고흥군으로 이관하고 소록도의 자연경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한센인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고흥군의 소록도 관광지 개발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며, 소록도의 역사 및 공동체를 보존하고 한센인의 복지·의료 등 인프라를 보강하며 생활·인권대책을 검토할 필요

○ 질병이나 건강통계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 산하에 질병건강통계센터 신설 필요

○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면담 필요

《 지역거점 공공병원 》

○ 지역거점 공공병원(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운영정상화를 위한 국가 지원책 강화 필요

○ 지방의료원 신설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 필요

○ 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 검토에 대한 답변 필요

○ 공공병원 확충 지원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대책 필요

○ 재정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적십자병원의 경영 안정화 대책 필요

○ 지역거점병원 육성 및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 필요

○ 지방의료원은 재택의료와 연계하여 평상시 재택의료, 응급 시 응급처치 시술 등 역할 구분 필요

《 공공보건의료 》

○ 대한적십자사에 대하여 유공 포상기준, 인사운영 지침 등을 포함하여 감사를 실시할 필요

○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시간외근무수당 예산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의료취약지 및 인구감소지역이 겹치는 지역은 의료취약지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적극 지원할 필요

○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의 적정공사비 확보,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국립중앙의료원 위탁 사업을 위한 공간 확보 필요

○ 응급의료취약지·분만취약지 등 의료취약지 지정방식을 시·군·구 단위에서 중진료권 단위로 전환 필요

○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 인프라의 지역별 격차 해소와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분만취약지 등 현장 및 지역 중심의 안전한 분만 대책 마련 필요

○ 미등록 외국인아동의 의료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개선 필요

○ 공공의료 인프라 및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치 필요

○ 권역책임의료기관 기능 보강 사업에 있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국비 지원 차등화 등 지원 강화 필요

○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과 관련하여 복지부 차원의 명확한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 실행 계획과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

○ 필수의료·취약계층 진료 등 공공의료 기능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병원의 적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

《 응급의료체계 (응급실 미수용) 》

○ 지역별 「수용곤란 고지 지침」에 ‘우선 수용 병원 지정’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시·도의 경우 지침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하며, 응급실 미수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

○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와 관련하여, 현행의 병원 자율신고제는 별도의 검증·제재가 미흡하므로 소방청과 협력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할 필요

○ 응급실 미수용 해소를 위해 광역상황실 중심의 통합체계 마련 및 1차 수용병원 지정 등 종합적 응급의료체계 개편 필요

《 응급의료체계 (응급실 이송체계 개선) 》

○ 광역상황실의 환자 이송권한 강화와 더불어 소방청의 병원 전단계 교육이 미흡한 점 고려, 복지부 및 중앙응급의료센터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응급의료체계 (소아 응급의료) 》

○ 소아전문상담센터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온라인 플랫폼(아이안심톡)의 상담 접근성·효과성 등이 미흡하므로, 서비스 종료 및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의료인 상담 연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이 비수도권 지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고, 심야・새벽 시간대 운영 연장 검토 필요

○ 소아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되지 않고 소아 응급진료 공백이 발생하는 지역이 없도록 응급의료체계를 보완할 필요

《 응급의료체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인구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취약지 응급영상판독 사업 인건비 증액 필요

《 응급의료체계 (기타) 》

○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사업의 연례적인 예산부족으로 인한 의료기관에 대한 미지급금 발생과 외국인 환자의 미수금 대지급 사용액 증가·낮은 상환율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

○ 119 구급대에서 사용하는 응급의료기금 사업 예산 편성확대 검토 필요

○ 서울시 경증응급환자 긴급치료센터 관련 제도적 지원방안 검토 필요

《 권역외상센터 》

○ 권역외상센터별 중증외상 사망률 격차에 따라 지역별 의료체계를 고려한 거점외상센터 집중육성 필요

《 응급이송 》

○ 절단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한 이송 중 진통제 투여 방안 마련 필요

○ 닥터헬기 추가도입 및 인계점 확충 필요

○ 소방청이 추진 중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직역 간 협의를 통한 합리적 대안 마련 필요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119 구급대원의 업무범위 정비 필요

○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이기 위해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 필요

《 생명윤리 및 연명의료 》

○ 국외 소재 유전체분석기업의 유전정보 국외 이전 관련 조사 필요

○ 유전정보 보호를 위하여 국외 이전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신생아 선별 유전자 검사 관련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공공정자은행 제도화에 대한 검토 필요

○ 요양병원 대상 연명의료결정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필요

○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발생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서식 대리 서명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유사 사례 재발 방지 필요

《 혈액관리 》

○ 대한적십자사에 대하여 유공 포상기준을 포함하여 감사를 실시할 필요

○ 헌혈 공가 확대 방안 및 안정적인 혈액 수급 방안을 수립하여 보고할 필요

○ 헌혈환급적립금 누적액(588억)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헌혈 유공패 수여 기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ALT 검사는 NAT 검사 도입 이후에도 지속되어 ALT 검사 기준으로 인한 혈액폐기 문제가 발생하므로 폐지 필요

○ 혈장보관센터의 냉동창고는 원료혈장과 혈액보관검체를 보관하는 중요 시설로 노후화와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용 냉동창고 신설 예산 지원 필요

《 장기 · 인체조직 이식 》

○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변경의 형평성, 기증자 유전정보 등 이식대상자 선정 절차상 정보의 SNS 공유문제 및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의 등급 상향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

○ 대중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생명나눔문화 확산 필요성 및 연명의료 중단과 연계한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도입, 지방의료기관의 장기이식 역량 강화, 이식기관 지정요건 완화 등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

○ 뇌사 장기기증 관련 의료질 평가 시범지표인 ‘의료기관 뇌사추정자 신고율’ 지표의 본지표 전환 필요

한의약정책관

○ 대한한의사협회장의 대통령 주치의 수행이 정책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지적

○ 한의사 노인주치의 제도 도입에 관한 입장과 직역간 갈등방지 방안, 한의계 역할과 참여방안 등에 대한 질의

○ 공중보건의사 숫자가 감소하면서 한의사의 참여와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복지부 입장이 무엇인지 질의

○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 관련 질의

○ 원외탕전실 인력, 관리감독, 품질관리 미흡 등 제도개선에 대한 질의

○ 한방 다이어트한약(젤리) 유통 문제 개선 관련 질의

○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제재 관련 질의

○ 원외탕전실 관련 조사 및 한의약분업 관련 질의

○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신청자격에 한의사를 포함시킬 필요

○ 한약사 제도개선 관련 질의

○ 한약조제지침서 개정 관련 질의

○ 한약학과 6년제 전환 관련 질의

○ 지역 거점대학 한약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 관련 질의

○ 한의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관련 질의

○ 한의사 천연물신약 처방 및 급여 인정 관련 질의

○ 수급조절한약재 배정특혜 의혹(씨케이)에 관한 복지부 감사 필요

○ 국산수매실적 인증기준, 한방제약회사 배정신청 권한 부여 등 수급조절 제도 개선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한약재 배정 필요

○ 수급조절 품목 한약재 중 표준화 기준에 적합한 한약재 확보 시, 제조회사 대량 확보를 위한 예외 적용 등 제도개선 필요

○ 식약처 GMP 안전 및 품질관리와의 중복성, 한약재 원가상승 우려 등에 따라 한약재 정보제공 시범사업 제고 필요

○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 필요

○ 의료관광 및 k-culture와 연계한 외국인 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질의

○ 한의학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의지, 한의학 세계화 플랫폼 운영 계획 및 WHO 전통의약 분야 투자 계획이 있는지 질의

○ 외국에서 ‘한의사’가 의료인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추진계획 관련 질의

○ 재난 사태에서의 한의학의 기여 가능성, 재난 대응 참여 근거 마련 등 질의

건강보험정책국

○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관련 대책 제출 필요

○ 국고지원 일몰 규정 폐지와 관련한 추진계획과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관한 질의

○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 균형 달성을 위한 연도별 목표치와 시나리오, 적자 전환 이전 수준 유지를 위한 구체적 지출 개선 목표에 대한 질의

○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법정 상한으로 유지하는 법령 개정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 및 정부지원 확대가 국민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에 대한 질의

○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증가 요인과 지원금 구조의 재정기여도 변화 분석 및 연도별·회계별 세부 현황 제출 필요

○ 건강보험 재정이 정부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자립도 제고 및 재정 건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 외 지출 효율화 또는 구조개혁 방안 마련 필요

○ 건강보험 외국인 진료비 부담 및 정부지원금 관리 분리 방안 검토에 관한 질의

○ 의료 이용구조 개선, 과다 진료 억제 및 중복 청구 방지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내·외국인 진료비 재정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항목별 사용내역을 공개할 계획에 대한 질의

○ 비상진료 지원사업이 건강보험 재정의 본래 목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복지부의 정책적·법적 해석과 향후 동일 사유로 추가 지출이 불가피할 경우 적용할 재정투입 기준에 관한 질의

○ 건강보험 재정 관련 예정처가 제시한 '28년 준비금 소진 전망에 대한 입장과 대응전략 및 재정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 관한 질의

○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 인상 없이 재정 효율화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중심의 재정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질의

○ 약제비 증가와 수가 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 상쇄를 위해 지출 구조조정, 비급여 관리 강화, 약제비 절감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는지 질의

○ 필수의약품 및 필수의료 지원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재정관리 로드맵 수립 계획 및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수분야 지원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방안 질의

○ 건강보험 수가협상 시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분리 계약에 대한 입장 및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에 있어서 무균·멸균 약침액을 자생한방병원에 몰아준 특혜 의혹에 대해 조사·감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할 필요

○ 제대로 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하여 침례병원을 지자체 소유와 건보공단 위탁 운영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 필요

○ 감사원 감사 결과 금융위와 협의 여부, 금융감독원 및 경찰청과 업무협약 후 성과 여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청구·심사 정보 연계방안 등에 대한 질의

○ 심평원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 사전조제 대상으로 부당이익금 환수 및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개정안을 발의할 경우 복지부의 입장에 대한 질의

○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열람 근절을 위한 건보공단 내부통제 대책과 공단 내 징계위원회의 독립성과 처벌 수위 상향 계획에 대한 질의

○ 한의사가 한약을 처방하고 한약사가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조제한 것에 자동차보험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악성 의료기관에서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경우 관련 민관 합동 현장점검 계획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노력에 대한 질의

○ 외국인환자의 진료비 허위청구 기관 모니터링 등 관리에 대한 질의

○ 시도별 진료비 증가현황과 지역별 고령화율에 따른 진료비에 대한 질의

○ 고액 환자 증가가 필수의료 및 예방의료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정 배분의 균형을 유지하고 예방 조기진단 중심으로 의료비 구조를 전환할 필요

○ 인기 과목 중심의 진료비 급증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필수의료 과목의 진료건수 감소 주요 원인에 대한 질의

○ 성별·연령대별 진료비 추이 관련 질의 및 여성건강 지원체계를 통해 여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

○ 중복 검사·과잉 처방으로 인한 외래비 낭비 개선을 위해 복지부와 심평원이 협력하여 중복 진료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증가 추이에 대한 연령별·질환별·진료유형별 정밀 분석 필요 및 고령층 의료비 절감을 위한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 강화 필요

○ 정부지원금을 내·외국인 분리하여 관리하고 항목별 사용 내역을 공개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

○ 외국인 진료비 증가세가 건보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여부, 외국인 진료비 예측모델과 통계 관리 시스템 운영 여부에 대해 질의

○ 외국인 보험료 부과체계, 체류기간 기준, 진료비 부담 조정 등에 대한 정책 검토 진행 여부 질의

○ 법무부, 관세청,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외국인 체납자 자산을 파악하고 압류절차를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

○ 단기 체류 외국인의 체납 방지를 위해 출국 전 정산 또는 보증금 납부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 중인지에 대해 질의

○ 외국인의 체납 정보를 법무부의 체류 연장 심사와 연계하는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 구축 계획과 외국인 체류자격별 맞춤형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 외국인 체납액 374억 원 중 회수가 불가능한 장기 체납액에 대해 복지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

○ 외국인 체납·결손 정보를 법무부·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실시간으로 연계·관리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및 체납 외국인에 대한 자산 추적과 행정제재 강화 방안 검토 여부에 대해 질의

○ 외국인 건강보험료 결손 증가가 건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및 결손규모가 급증한 원인과 재정적 손실 추정액을 포함한 내역을 의원실에 제출할 필요

○ 체납외국인 출국 전 건강보험료 및 진료비 정산 의무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

○ 외국인 출입국 정보-체류자격-건강보험 자격관리 시스템의 실시간 연동 추진 여부, 현행 전산 통보가 하루 이상 지연되는 구조 개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

○ 외국인 상습 부당수급자 및 국가별 고위험군에 대한 재가입 제한 제도 도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

○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퇴사 후 자격상실 및 부정수급 발생 원인 및 사업장 신고 지연 외의 고의적 이용·부정청구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 질의

○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내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

○ 국가별 위험등급제, 출입국 정보 실시간 연동, 부정수급자 재가입 제한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 특히 중국 등 부정수급 집중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가별 맞춤형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

○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라고 발표한 근거가 어떤 통계 기준(연도, 수치, 집계 방식)에 따른 것인지와 단기적 재정 개선만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

○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에서 상호주의 원칙, 출입국 정보 실시간 연동, 고액진료 출국자 전산의무제, 부정수급자 재가입 제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

○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국적별 수입·지출 구조와 부정수급 현황의 공개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

○ 최근 2년간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급증의 원인을 국적·가입유형(직장, 지역, 피부양자)별로 분석하고, 특히 외국인 비중 확대가 건강보험 재정과 급여비 지출 구조에 미친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의원실로 제출할 필요

○ 내·외국인의 보험료 부과기준, 급여 이용률, 재정기여도의 형평성 관리 방안 및 내국인 대비 현재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의 역차별 요소 검토 여부에 대한 질의

○ 외국인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을 강화하고 급여 이용 실태 점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

○ 법무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체류자격·근로정보·보험 자격을 연계 관리하는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할 필요

○ 내국인 피부양자 기준 강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고령층의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재산 기준 완화 또는 고령층 경감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

○ 외국인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국적·체류자격별 보험료 부과 및 급여비 구조를 정례적으로 평가·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

○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완화된 체납 급여제한 규정이 체납액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체납 방지를 위한 보완 입법 또는 관리제도 강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

○ 외국인 가입자의 반복적 외래 이용과 과잉진료로 인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국적·체류형태별 진료이용 패턴 분석과 부당청구 점검 강화를 추진할 것인지 여부, 심평원과 공단 간 데이터 연계로 부당 이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 외국인 체납액 회수를 위해 법무부·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출국 전 건강보험 정산 의무화할 것인지와 체류 연장 시 납부 확인 연계 제도 등 관계부처 간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현황에 대해 질의

○ 외국인 전용 건강보험 체계(보험료율·급여한도 차등화)를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

○ 체납 외국인에 대한 급여 이용 실태(입원·외래·약국별 이용 현황) 정기적 점검 여부에 대한 질의 및 고액 진료비 수혜자 중 체납 이력이 있는 가입자에 대한 부당급여 환수 및 재발방지 조치 필요

○ 최근 5년간 사회보험료 체납 압류 건수 증가 원인을 경기요인, 제도요인(보험료 부과 기준, 분납제도 등), 사업장 규모별로 분석하고 체납 증가의 주요 요인을 구체적으로 진단한 분석자료를 의원실로 제출할 필요

○ 영세사업장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분납·유예제도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및 현재 시행 중인 분납제도의 이용률, 승인기준, 실효성 평가 결과를 보고할 필요

○ 체납 방지를 위해 체납 예방 컨설팅, 사전 알림, 경고제도 등의 운영 여부 및 사업장별 납부 이력 기반의 위험 예측 시스템 구축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

○ 체납 사업장에 대한 재기 지원 및 경영 컨설팅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와 지방 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험 체납 예방 및 재정 지원 시범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질의

○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과정에서 체납자 정보의 통합 관리 및 부처 간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국세청·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등과의 체납자 통합데이터 공유체계 구축 현황에 대해 질의

○ 체류·고용·보험 정보 통합 기반 실시간 자격검증 시스템의 구축 일정과 관계부처(법무부·고용부·행안부 등) 간 정보 연계 현황 파악 여부 및 시스템 완성 시점과 시범운영 계획을 의원실로 제출할 필요

○ 외국인의 자격상실 후 급여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자동 급여 제한 절차 및 행정적 근거 규정 마련 여부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 상 정보연계에 대한 법적 기반이 충분한지 검토 결과를 보고할 필요

○ 공단이 추진 중인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교육 제도화의 법적 근거와 현재 논의 중인 교육 내용, 대상, 주관 기관, 시행 시기,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질의

○ 외국인 근로자 교육에 건강보험 과목을 포함하기 위한 고용노동부·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협의체 구성 여부에 대한 질의 및 고용허가제(EPS) 근로자 및 유학생 방문취업자 등 체류유형별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보고할 필요

○ 실시간 자격검증과 의무교육 제도 도입 이후에도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적발·환수·형사고발 등 사후관리 절차 개선방안과 체류기간 만료 전 출국자의 환수율 제고 방안에 대해 질의

○ 공단의 교육 관련 추진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연계 예산, IT 인프라 고도화, 교육 예산 및 법령 개정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로드맵 수립 여부와 구체적 예산 계획 및 추진 일정이 있다면 보고할 필요

○ 현행 직장-지역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체계에 따른 불균형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3단계 개편 계획 추진 여부와 추진 일정, 주요 개선 내용에 대해 질의

○ 상위 10% 고소득 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의 급격한 증가와 관련하여 고소득층의 보험료 부담 상한제 도입 또는 완화 기준 검토 여부와 현행 제도에서 보험료 인상에 따른 재정 효과 및 형평성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제출할 필요

○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관련 혈세 먹튀가 이뤄지고 있다고 연일 혐중 정서를 자극 중인데, 매년 흑자 중인 건강보험 재정수지에 대해 국민의 오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

○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개선 지적은 혐중 정서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중국인 가입자의 부정적 이용 행태에 기인한 지적이므로 건보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에 지속 힘쓸 필요

○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와 관련해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있는 측면과 통계 오류가 있었던 측면에 대하여 복지부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오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릴 필요

○ 건강보험 상호주의 도입 주장은 혐중이 아니며,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 국가별 위험등급제와 보건안전사전 평가제 도입계획을 검토하고 보고할 필요

○ 과도하게 높은 외래이용률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이용 합리화 정책을 검토할 필요

○ 과다의료이용 예방 관련 예산 증액을 통한 합리적인 의료이용환경 적극 조성 필요

○ 안저검사, 척수성근위축증(SMA) 등 신생아 국가 선별검사 항목 확대 필요

○ 검체검사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현황 질의

○ 치료 가능한 희귀질환 조기진단을 위한 신생아 선별검사 필요

○ 복막투석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수가 개선 등 정책적 변화 필요

○ CT, Mammography 등 특수의료장비의 노후도와 영상 품질 등 성능을 기준으로 수가차등제 도입 필요

○ MRI · CT 신규 장비 도입 이후 검사 건수가 급증하는 기관에 대해 별도 관리, 현지조사 실시 및 청구현황 모니터링 필요

○ 희귀질환 가임부부 유전자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필요

○ 낙태죄 효력상실 이후 건강보험 급여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

○ 위암 표적치료제 맞춤형 처방을 위한 정밀진단 검사 등 수가 제도개선 필요

○ 약물 난치성 뇌전증 로봇 수술비 비급여에 대한 해결 필요

○ 섭식장애 급여 항목의 확대 적용 필요

○ 암 환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제 선정에 필요한 동반진단 및 치료제 동시 제도 도입 필요

○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시술의 급여기준 개선 및 급여 재평가에 대한 검토 필요

○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연내 종료 예정된 일차의료 의과 시범사업의 연장 또는 확대 필요

○ 방문진료의 지역별 요구도 및 의료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의료취약지 수가 인상 고려 필요

○ 통합돌봄 시행 관련 방문진료 횟수 확대 및 의료기관 유인 대책 등 사업 활성화 대책 필요

○ 건강검진 후 폐기능 질환자의 치료 연계 및 약물 관리 실효성 등을 위해 교육·상담료 신설 필요

○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시, 한방 약품 처방 및 한약제제 건강보험제도 개선 필요

○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시, 의료법상 정원기준 준수 여부를 반영할 계획 여부 등에 관한 질의

○ 이분척추증 등 배뇨가 어려운 환자들의 카테터 사용량이 부족하여 개선 필요

○ 중증 호산구성 천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과도한 치료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산정특례 지정 검토 필요

○ SYNGAP1 등 극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유연화 등 산정특례제도 개선 필요

○ 중증 IGA 신병증 환자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 필요

○ 중증 2형 당뇨환자의 질환 관리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등 검토 필요

○ 1형 당뇨병 혈당 관리를 위한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필수의료기기의 사용 활성화 필요

○ 1형 당뇨병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인슐린이 필수적인 중증 2형 당뇨병 환자들도 포함 필요

○ 1형 당뇨환자에 대한 연속혈당검사 관련 실효성 있는 교육 방안 필요

○ 병원 식대 실태조사, 수가 현실화 및 기초영양관리료 수가 신설 등 제도개선 필요

○ 보청기의 텔레코일 기능 활성화 및 사용자 교육 의무화 필요

○ 수동·전동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신장장애인에 대한 이동보조기기 지원 필요

○ 의과-한의과 동일(유사) 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국민 의료 접근성 및 선택권 강화 필요

○ 흉부외과 필수 치료재료 수가 현실화 필요

○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쏠림 완화를 위한 기능 재정립 방안 및 중소병원 등으로 환자를 분산시키기 위한 연계 대책에 대해 질의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수가 인상이 전체 수가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개별 수가 항목별로 원가보상률 공개 및 저수가 인상 필요성에 대해 질의

○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의 알코올(중독) 분야 포함 필요성에 대해 질의

○ 간병비 지원과 관련하여, 건강보험 이외의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간병비 지원 본격화하기 앞서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 체계 확립할 필요

○ 중증장애인 및 희귀질환자 등 중증환자 중심 간병 급여화 우선지원과 간병 급여화 대상 병원 부족 및 장기집중 간병 등 실질적 대책 마련에 대해 검토 필요

○ 의료진의 처치 정도와 간병의 강도가 높은 루게릭 환자 전문요양병원에 대한 별도 수가 적용 및 중증근육성 희귀질환 연구('24)에 따른 추진방안 검토 필요

○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가 전면 시행되는 2030년이 되면 건보 재정확보 문제는 없을지와 재정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간병지원 필요성이 낮은 경증 환자들의 사회적 입원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할 필요

○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하나로 요양병원 퇴원환자 방문진료사업 시행에 대해 검토할 필요

○ 간병 급여화 실효성 확보 방안 관련, 재정관리·허위청구 방지 등 세부 관리방안 마련 필요

○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전 공정 자동 의무화,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화 등 제도화 방안 마련 및 제재 기준 개선 필요

○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관련, 분리 지급·질 관리·재수탁 등 위수탁 문제 해결을 추진하되, 제도 개선 시 진료 공백과 행정 부담을 키우지 않도록 설계될 필요

○ 녹십자의료재단에 대해 공정하고 적합하게 심사하여 인증취소 1개월 여부 최종 결정 및 제재 양정기준 상향 검토 등 제도개선 필요

○ 희귀질환 신약에 대한 신속 등재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행과정에서 중증·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접근성 개선 필요

○ 국내 제약산업 보호를 위해 국산 제네릭 약가 일률적 인하 추진 재검토 필요

○ 항생제 내성관리 및 CRE 등 슈퍼박테리아 다제내성균 신규 항생제 도입 확대 필요

○ 고위험 산모 지원 확대를 위해 자궁수축억제제 최대 4회 투여 이상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 필요

○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퇴장방지의약품 관련 공급 중단 모니터링, 주기적인 상한금액 재평가, 원가산정 기준 현실화 등 제도운영 전반 재검토 필요

○ 퇴장방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 관리 제도의 통합적 관리 방안 검토 필요

○ 혁신신약의 안정적 국내 공급을 위해, 해외 국가의 약가 참조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구체적 방안 마련 필요

○ 환자 접근성 향상, 약가 투명성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등 3대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급형 RSA 적용 약제가 계약 종료나 특허 만료 이후에도 실제가 대신 표시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이중약가제 대상을 기등재 약제, 수입의약품 및 철수위기 의약품으로 확대할 필요

○ 위험분담제를 항암제뿐 아니라 면역질환, 만성질환, 극희귀질환 등 혁신신약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고, ‘환급형’ 위험분담제를 신약의 일반 등재 트랙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

○ 위험분담제 적용 약제의 계약 종료 문제와 관련, 동일 제제 등재 시 기존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현행 구조 개선 및 재정영향 분석, 사후 환급관리 강화, 가격 투명성 확보 등 종합적 관리대책을 함께 마련할 필요성에 대한 질의

○ 혁신 의약품 가치 평가와 약가체계 개선을 위한 RSA 확대, 국내 투자 기여도에 따른 ICER 기준 탄력 적용, 혁신 신약의 지속적 개발 유도를 위한 선진국형 적응증별 약가제 도입 등의 제도개선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추진할 필요

○ 감기약 처방 시 위장약의 불필요한 동반처방 관행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경우에 의약품 처방이 이루어지기 위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모니터링 강화와 다양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환자의 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암 치료제(담도암・대장암・전립선암・방광암・간암・위암·비소세포폐암・전이성 요로상피암 등 소외 암종)의 급여화 검토 필요

○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025년도 시행계획’ 관련, 조기 유방암 단계에서도 재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진행 상황 질의

○ 국내 개발 신약의 국내 우선 출시와 글로벌 시장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리적인 약가 산정체계 마련 필요

○ 기존 혈전용해제보다 빠른 일시 투여 및 의료진의 치료 부담을 낮춘 3세대 혈전용해제의 국내 빠른 보험급여 적용과 필수의약품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질의

○ 간질성 폐질환(ILD), 특발성폐섬유증(IPF)에 대한 항섬유화제 및 폐동맥고혈압(PAH), 만성 혈전색전성 폐고혈압(CTEPH) 치료제의 건강보험 신속 등재와 급여 범위 확대를 통한 환자들의 약제 접근성 강화 필요

○ CRM 기반 만성질환 치료제의 통합 급여체계 마련 및 SGLT-2 치료제의 조기 치료 등 급여기준 확대에 대한 질의

○ 혁신신약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임상가치 중심 급여심사 제도개선에 대한 질의

○ 2022년 급여 인정 이후 간암 공개심의 사례 중 ‘티쎈트릭+아바스틴 요법’ 청구가 상당수 불인정된 사례와 관련하여, 환자 치료 지연 및 생존률 저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결과가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

○ 국내 많은 희귀치료제가 허가는 되었으나 급여 등재가 안 돼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와 급여기준이 식약처 허가기준과 달리 적용되어 치료가 진전되지 못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

○ 국민 건강권 보장과 형평성 강화를 위한 재정절감형 혁신신약 신속 심사 필요성에 대한 질의

○ 최근 혈액암 2차 치료에 사용가능한 CAR-T 치료제가 등장함에 따라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치료의 강화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급여 등재를 통해 환자들의 부담 해소방안 마련 필요

○ 백혈병 환자의 치료기회 증진을 위해 CAR-T 치료제를 비롯한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제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 필요성에 대한 질의

○ 약가 재평가 정책 추진에 대한 국내 제약기업들의 우려에 대한 입장과 연구개발을 통해 신약을 개발한 국내기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약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질의

○ 외국약가 재평가 도입에 따른 제약산업 위축 가능성 고려, 외국약가 재평가 도입에 대한 신중하고 세밀한 접근 필요성과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등 국내 제약사 R&D 투자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질의

○ 현재 건강보험 급여를 검토 중인 약제의 목록 및 약제별 향후 검토 계획에 대한 질의

○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을 희귀·중증질환 신약을 중심으로 우선순위화 하는 등 조속하고도 전향적인 제도개선 필요

○ 동일암종이라도 말기 환자일수록 몇 개월의 생존기간 연장이나 미미한 수준의 삶의 질 개선효과도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급여 평가 과정에서 치료 차수 등을 고려하고 시급성과 의료공백, 미충족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연한 평가체계를 마련할 필요

○ 희귀질환인 X-염색체 연관 저인산혈증(XLH) 치료제에 대해, 성인도 소아와 같이 자료 생성이 어려운 것은 동일하므로 성인에 대해서도 경제성평가 면제 트랙을 적용해 급여기준을 완화할 필요

○ 마운자로의 2형 당뇨병 환자 대상 급여 적용 진행상황과 국제 약가와 급여사례를 반영한 신속등재 제도 활용 계획 및 당뇨병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위해 급여 적용 시기를 앞당길 방안에 대한 질의

○ 바이오시밀러 사용 확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국민의 약제비 부담 경감, 치료 접근성 향상을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바이오시밀러 확대를 위한 구체적 추진 전략과 향후 5년간 단계별 목표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

○ 약가 인상 품목 확대의 주요 원인과 향후 예상되는 연간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하여, 약가 인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전심의 절차를 개선할 필요

○ 최근 5년간 약가 협상 결렬이 집중된 신약, 항암제, 희귀의약품 분야에 대한 협상 구조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급여가 지연되고 있는 약제에 대해 중재 또는 조정기능을 강화하며, 협상 결렬 후에도 선급여·후평가 제도 등을 검토할 필요

○ 난임치료제에 대한 사용량-약가 연동 재검토 필요

○ 약가 협상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제약사와 공단 간 협상 결과, 재정 절감 효과, 사회적 환류 방안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

○ 보험등재 제한 조치 등 리베이트 반복 위반 제약사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필요

○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치매 치료제 급여 적용 검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고가약의 위험분담제(RSA) 또는 조건부 급여제도(선급여·후평가) 도입 등에 대한 질의

○ 저혈당증 치료제인 글루카곤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검토 필요

○ 폰히펠린다우 증후군을 포함하여 급여적용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 등 희귀질환 환자들의 필수 치료에 대해서 개별 질환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신속한 급여적용 검토 필요

○ 결절성 양진의 중증 환자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검토 필요

○ 국산 원료의약품 사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공급안정성이 중요한 필수의약품에 대한 약가관리 방안에 대한 질의

○ 최근 5년간 국내 건강보험 급여 신약 사용 비율 및 경제성평가 평균 소요기간 관련 공식 통계 구체적 수치에 대한 질의

○ 당뇨병 용제 급여기준 일반원칙에 대한 전면 개정 진행 상황과 병용 급여 확대에 따른 사후 재정 영향 분석 관련 질의

○ 당뇨 환자들의 가장 큰 고통인 ‘합병증 및 사망의 공포’를 해소할 수 있도록, 혈당 관리를 넘어 당뇨병을 관리 가능한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 검토 필요

○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NMOSD) 환자가 재발 이전에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련 치료제의 급여기준 개선 필요

○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들을 위해 신약의 조속한 급여 필요성 및 급여 적용 진행 현황에 대한 질의

○ 미 정부의 MFN 조치 등 글로벌 통상 급변 속에서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관련 질의

○ 허가-급여 병행심사 패스트트랙 제도화 시점, 필수약제 도입 절차, 심사 기간 단축 방안 및 해외에서 시행 중인 3제 병용요법 도입에 대한 질의

○ 진료비 확인 제도 관련, 일정 횟수 이상 비급여 진료비 부당 청구 비율이 높은 기관에 대하여 심평원이 직권 심사하는 기능을 제도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건강보험 반복 부당청구에 대한 제재조치 및 감시체계 구축 필요

○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원활한 집행과 의료기관 참여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2027년 상병수당 본사업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

○ 상병수당 시범사업에서 제기된 적용대상, 보장수준 등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필요

○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대기기간 및 지급액 산정 근거, 법정 유급병가 관련 고용노동부와의 논의 필요

필수의료지원관

○ 지역·필수·공공의료 문제해결을 위해 진료권 기반 실태조사 실시 및 담당조직 설치 필요

○ 비급여 의약품 등 관리 강화 필요

○ '25.3월 발표한 비급여·실손 개선대책을 주요 과제로 다루어 계속 추진 필요

○ 재난적의료비와 관련하여 저소득층 뿐아니라 중산층까지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선 필요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사후정산 TF 운영 및 향후 계획 수립 필요

○ 지역불균형에 따른 소아청소년과 부재에 대한 실효적 지원 대책 마련 필요

○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 지역완결형 중증 소아심장 진료체계 도입 필요

○ 비급여 관리를 위해 비급여 의약품 목록화 추진, 비급여 표준 명칭·코드 사용 의무화, 비급여 보고 대상 확대, 비급여 의약품 관리 강화 필요

○ 관리급여 제도 도입 및 체계적·통합적 비급여 관리를 위한 비급여 관리법 등 도입 필요

○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현황 및 확대 계획 수립 필요

○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구조적 지원책 등 구체적 추진계획 검토 필요

○ 선별급여 항목인 NGS 검사 중 일부 암종에 대한 본인부담률 완화 등 검토 필요

○ 최근 5년간 MRI 신규 설치 의료기관의 설치 전후 청구량 변화 추이 통계 및 사용량 관리 방안 마련 필요

건강정책국

《 건강정책 일반 》

○ 보건지소의 건강증진 기능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전남 지역 진료 공백 해소 위해 공보의 우선 배치, 도서·벽지 지역 순회진료 인력 확충, 지방 근무 의사 유인 강화 및 응급원격협진 실적을 응급의료기관 배치 최상위 기준으로 설정 등 대책 마련 필요

○ 업무활동장려금(진료장려금) 인상 등 공중보건의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

○ 공중보건의사 제도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퇴직연금수급권자가 지역보건의료기관 의사로 채용 시 퇴직연금 지급 정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보건진료소의 방문진료 근거 명문화 및 돌봄통합법 수행기관으로 지정 필요

○ 보건진료소를 돌봄통합법 일차의료 핵심기관으로 법제화하고, 전문직 위화 및 승진체계 개선 필요

○ 보건소 수질검사 주기와 항목 관리 방법 및 향후 실시간 수질관리 시스템 도입 계획 여부에 관한 질의

○ 공중보건의사 자원 감소에 따른 의료취약지역 보건소 의사 충원 계획에 대한 질의

○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의 조치에 대한 질의 및 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도입 검토 필요

○ 식품사막과 관련하여, 국민영양관리법 개정에 협조할 필요

《 숙박업 》

○ 외국인 관광객과 장기체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도입된 생활숙박시설의 합법 사용지원을 위한 숙박업 신고기준 완화 필요

《 만성질환 관리 》

○ 소아당뇨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의지, 정부 목표에 대한 질의

○ 30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급증 원인을 분석하고 취약계층 및 장애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서 케어코디네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모색이 필요

○ 야간혈압 측정 결과 반영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

○ 당뇨발 조기검진, 예방관리, 교육지원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포함하는 등 예방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

○ 청년층에서 급증하는 당뇨환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및 조기검진 사업 확대가 필요

《 문신 제도화 》

○ 문신사법 시행 유예기간 중,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고 대법원 판례변경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

《 금연정책 》

○ 액상전자담배 무인점포 현황 파악 필요

○ 변화하는 흡연 행태에 맞춰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고도화 필요

○ 정부 차원의 통합적 금연정책 목표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한 금연종합관리계획과 관련 정책위원회 설치 법 개정 검토 필요

○ 금연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약국 활용 방안 검토

《 건강검진 》

○ 한국건강관리협회 건물의 입주 기업인 노보진코리아에 검진데이터 유출 우려에 관한 질의

○ 건강검진기본법에 성별 차이를 고려한 내용 포함 필요

○ 영유아검진에 안과 정밀검사 포함 필요

○ 국가건강검진 폐결핵 검사 항목의 효과성이 낮으므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인력기준) 관련 의료기관 규모와 상관없이 임상병리사를 필수 인력으로 지정 필요

○ 여성질환(골다공증, 폐경기 질환 등)에 대한 국가검진 확대 및 성별 차이를 고려한 종합계획 수립 필요

○ 한국건강관리협회 개소한 메디오픈랩 입주 기업 선정 및 운영 절차의 공공성 확보 필요 및 데이터 안보 상황 확인 필요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건강검진 항목 확대 필요

○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에 대한 공공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개편 필요 및 정기적 검진성과 평가체계 구축, 유소견자 사후관리 강화 등 건강검진 운영 개선 필요

○ 영유아발달정밀검사 이용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안저검사 도입 필요

○ 영유아구강검진 문항에 ‘치아조기탈락 여부’ 포함 필요

○ 국가건강검진 중 간염검사 대상자 확대 필요

○ 국가건강검진을 통한 치매 조기예방체계 강화 필요

《 비만예방 》

○ 만성질환의 원인인 비만예방 및 관리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비만기본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

《 음주폐해예방사업 》

○ 콜라보 주류 및 법을 반복해서 위반하는 주류에 대한 실질적 제재방안 마련 필요

○ 주류마케팅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민건강증진 차원의 예방교육과 홍보, 조사연구, 주류광고 규제 강화 등에 대한 예산과 인력 확대 필요

《 구강건강 》

○ 노인 방문구강관리 시범사업 예산이 부족한데, 본 사업화를 위한 중장기 재정계획에 대한 질의

○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지역선정 공모계획 등 세부 추진계획과 추진 일정 및 예산 등에 대한 질의

정신건강정책관

《 정신건강정책 거버넌스 》

○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향후 운영방안 등 점검 필요

《 심리상담 서비스 》

○ 심리상담서비스 관련 법제화 필요

《 정신건강 일반 》

○ 청년·여성·아동 정신질환 급증에 따른 대책 및 섭식장애 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AI 기반 정신건강 상담 관리·보호 대책 필요

《 정신응급대응체계구축 및 운영》

○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 시 병원 참여 적극 유도 필요

○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 시 응급입원을 위한 24시간 당직의 배치 필요

《 정신의료기관 치료환경 개선 》

○ 격리·강박 실태조사 이후 별도의 행정처분과 의료기관평가 인증이 이뤄지도록 방안 마련 필요

《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개선》

○ 국가책임 강화를 위하여 사법입원제 등 검토 필요

○ 보호의무자 자격 요건에서의 ‘소송’에 형사소송을 포함시킬 필요

○ 보호입원제 폐지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정리 필요

○ 정신건강정책 영역에서 당사자 참여 필요

《 동료지원쉼터 》

○ 동료지원쉼터 관련 시행규칙에 주간형 쉼터의 삭제에 대한 검토 및 쉼터 인력기준 강화 등 필요

○ 일시적 정신과적 위기 상황 시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공간과 동료상담 등을 제공하는 동료지원쉼터 개소수 및 단가 등 확대 필요

《 정신질환자 주간활동 》

○ 정신질환자 주간활동 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조기 추진 가능성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

《 정신건강 주거지원 시범사업 》

○ 정신건강 주거지원 시범사업 시행 현황, 관련 기관 소통 현황, 특화형 임대주택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질의 및 주거지원 시범사업 확대 필요

○ 정신요양시설이나 정신의료기관에 장기간 입소(원)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및 미등록 정신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 대책 마련 필요

《 동료지원 제도 》

○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한 경험을 토대로 정신질환자에게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하는 동료지원인 발굴, 취업, 고용안정, 제도 홍보 등 제도 활성화 필요

《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

○ 전반적인 복지 지원 제도에 있어 제공자를 위한 돌봄 경감이 아니라, 당사자 중심의 지원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시행 계획 필요

《 중독자 지원 》

○ 중독치료회복지원법이 조속히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청소년 중독 관리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 지속 가능하도록 관계부처 간 연계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

○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 관련해서 본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필요

《 재난 트라우마 심리지원 》

○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의 12·29 여객기참사 관련 부적절한 대응,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로의 연구용역 몰아주기 등과 관련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에 대한 감사 필요

○ 대규모 사회적 참사 트라우마 심리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참사 피해자·유가족 상황을 감안한 맞춤형 심리지원 및 중장기 지속 추적 관리 체계 구축 필요

- 이를 위해 심리지원 DB 구축, 취약계층(소아·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고위험군 전문 치료 및 연계 등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정보시스템 연계 등 개선방안 검토 필요

○ 대규모 사회적 참사 트라우마 심리지원의 컨트롤 타워인 국가트라우마센터의 대응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며,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치료 연계, 심리지원 중장기 모니터링, 실적 관리 등을 위한 인적·조직적 개편 방안 검토 필요

○ 소방·경찰공무원 등 재난 대응인력의 증가하는 트라우마 극복, PTSD 치료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로서 소관 부처와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이태원참사 유가족 항의 서한 사례(9.18.)가 반복되지 않도록 참사 피해자·유가족 상황을 감안한 맞춤형 심리지원 등 섬세한 지원 필요

○ 재난이나 사고상황에서 언론취재 등에 참여했던 사람에 대한 심리지원 또한 필요

《 안산마음건강센터 》

○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을 위해 안산마음건강센터 심리지원시 유가족, 미성년 피해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운영하고, 재난트라우마 대국민 인식개선 강화 등 필요

○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체계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확인 필요

《 자살예방서비스 》

○ 실질적인 자살예방대책 마련 필요

○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활동 부실 지적

○ 자살예방 상담전화 간 자동연계 시스템 구축, 사후관리 필요

○ 자살사망자 수가 급증한 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리시스템 마련 필요

○ 자살예방사업이 지역과 중앙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자살예방정책 컨트롤 타워의 개편 필요

○ 국가자살예방전략 내 장애인 자살예방 방안 마련 필요

○ 심리부검 제도에서 청소년이 소외되지 않도록 확대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인력 등 강화 필요

○ 정신건강 비전문가도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자살위험 선별도구 개발·보급 및 장애인 대상 수어 영상 상담 체계 도입 필요

○ 청소년 자살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자살 예방 상담전화 인력 확충 및 지원 대책 필요

○ 지역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한 경증 자살시도자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성별에 따른 자살예방정책 마련 필요

○ 자살률이 높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연구 필요

○ 자살예방정책연구소·교육전담기관 신설, 자살예방기금 설치 및 법제화 계획, 자살예방 필수인력 확보 계획 마련 필요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김제시 부정 결제 사건 재조사 필요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방거주자 및 중장년층 참여 확대 방안, 상담 품질 및 성과 모니터링 방안 마련 필요

○ 예산 부족으로 신청이 중단되는 사례 발생에 대한 방지 대책 필요

보건산업정책국

○ 한의사의 의사과학자(MD-Ph.D) 양성사업 참여 필요성 검토 필요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의 환자 치료 및 산업화 성과 검토 필요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의 PM 지원인력 및 조직 확대, PM 채용 및 과제 선정·관리의 공정성 확보, 추진단 상설조직 전환 필요

○ 해외우수기관과의 보건의료기술 분야 공동연구 지원 강화 필요

○ 글로벌 R&D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원료의약품 자급화를 위한 산업 육성 방안 마련 필요

○ 합성의약품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필요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재설계 방안 검토 필요

○ 원료의약품 자급율 제고 및 수급불안정의약품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계획 마련 필요

○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일몰기한 연장 협의 필요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간단보험대리점(여행자보험) 병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첨단의료지원관

○ ‘복막투석 재택관리시범사업’과 관련 복막투석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

○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공공성 확보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에 대한 질의

○ 진료정보교류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에 대한 질의

○ 보건의료정보화 사업에서 한의과, 치과가 제외된 이유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

○ 제약 바이오 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민관협력 시범사업 필요

○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의 안전한 관리 필요

○ 디지털 병리 산업을 국가전략 산업과제 포함 여부 검토 필요

○ 우리나라 첨단재생의료 규제완화와 규제개혁 검토 필요

○ 전북이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성장거점이 될 수 있는지 검토 필요

○ 생체내 유전자치료 임상연구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 마련 필요

○ 세포처리시설이 유전물질을 취급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검토 필요

○ 환자중심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필요

○ (재생의료분야) 다학제 협력에 의한 R&D 필요

의료개혁추진단 (의료혁신추진단)

○ 지역 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지난 정부와 차별화된 계획 필요성에 대해 질의

○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지역의료 격차 해결을 위한 국민 중심 의료혁신 필요성에 대해 질의

○ 2025년 의료전달체계 개편 추진 과정에서 의사단체·환자단체 등과 공식 거버넌스 구성 내역에 관한 질의

○ 국민참여의료개혁위원회 및 의료혁신위원회에 대한한약사회가 포함되지 않은 사유와 향후 위원회 운영 시 한약계 참여 검토에 대한 질의

2)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급여 》

○ 과잉의료이용 방지 등을 위해 실손보험으로 본인부담금을 보상받은 가입자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도록 제도개선 필요

○ 비급여 증가 및 실손보험으로 인한 과잉진료 등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므로 비급여 과다이용 관리 및 실손보험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2형 당뇨 환자에 대한 연속혈당측정기 급여화 추진 중단 사유에 대한 설명과 당뇨 질환관리를 위해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당뇨관리체계 정착 방안 마련 필요

○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연계심사를 위하여 비급여 코드 표준화 방안 마련 필요

○ 평생 관리가 필요한 심장질환에 산정특례 30일 적용은 불합리하며, 지원기간 조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므로 복지부의 기준 마련을 위해 공단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

○ 재난적의료비 관련, 일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및 제도남용을 막고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약제비 및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성분명 처방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

○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강화 및 모바일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지역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임신·출산 바우처 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실손보험금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 이중지급 관련 대책 및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낮은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평점과 앱에 접속이 안 되거나 끊기는 현상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

○ 인공임신중절수술 건강보험 적용범위 명확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할 필요

○ 남성 난임 지원과 포용적 임신출산(공공정자은행 제도화) 지원 및 난임 지원 사업 대상(결혼 여부 불문)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레이저 채혈기 소모품(일회용 캡)의 요양비 급여확대 필요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운영 관련 저소득층에 지급 안내를 강화하고, 고액·장기체납자 체납액과 상계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지급 지연을 개선할 필요

○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방식은 사전·사후방식 모두 환급이 늦어 의료비 부담 즉시 완화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개선할 필요

○ 탈모, 임플란트 등이 재난적의료비로 지원되어 실손보험처럼 운영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므로 제도개선 필요

○ 장애인 전동휠체어 배터리의 건강보험급여 정률제 적용 및 내구연한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보건의료인력 인권지원센터 인지도 제고와 이용률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미지정으로 희귀질환자의 과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정특례 제도개선 필요

○ 중증 호산구성 천식 약제 급여화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지정 필요

○ 성분명 처방제도 도입을 통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및 약제비 절감 문제 해결 필요

○ 공단·제약사 간 별도 계약 제도 적용대상 약제와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관련 간병인 확보 문제에 대해 공단이 대책을 검토하고, 운동·예방접종 등 건강관리 사업을 통한 재정지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

○ 제약사 환급 중단에 따른 위험분담제 계약(환급형)의 표준화 및 투명성 확보 필요

○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이중약가제 확대를 논의하고 및 재정건전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검토 필요

○ 본인부담상한제 신청제도를 개선하고 미환급금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성장호르몬 주사’ 비급여 처방 등 관리부재에 따른 부작용 급증과 오남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

○ 외국인 부정수급 및 자격도용 방지를 위해 부정수급률이 높은 국가에 대해 별도 관리체계 및 진입 제한을 검토할 필요

○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다학제 기반 건강관리를 도입하고, 수가체계를 개편하며, 전국민 주치의 제도와 연계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희귀질환 치료제 사전심사 제도 관련, 선치료·후심사 도입과 희귀질환 치료제 심의체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및 추진일정을 제시할 필요

○ 고가항암제 등에 대한 실사용량 기준 청구제도 도입 필요

○ 자가도뇨카테터 요양비 확대(지원 개수 상향 등)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안정적 의약품 공급을 위해 제약사 공급의무 강화 제도화 추진 필요

○ 제약바이오산업의 예측가능성 향상을 위해 복지부-공단-심평원 간 협의를 거쳐 약가 사후관리 제도를 개선할 필요

○ 의원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약가 인하 효과가 크지 않고 환자의 안전을 우선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함께 고려할 필요

○ 혈액검사 과다 시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과잉진료 관련 한방진료 모니터링 등 개선을 추진할 필요

○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첩약 급여화보다 희귀·난치·중증질환자에 대한 급여 확대 필요

○ CT 등 특수장비 제조 연한 공개 관련, 제조 연한 공개보다 임상영상 검사 시 선량표기나 개인 피폭량 추적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

○ 현재 시행중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의 재정 절감효과가 미약하므로 연간 365회보다 강화할 필요

《 건강검진 및 증진, 시범사업 》

○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기간 중 대기기간, 지급수준 산정근거 및 유급병가와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요양기관이 중증환자를 배제하고 경증환자를 선별해 입원시킨다는 논란이 있으므로 제도개선 필요

○ 국가 암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진료연계율을 높이고 사후관리 대상자 기준을 마련할 필요

○ 검진항목 주기적 타당성 재평가를 제도화하고, 항목 조정 기준을 마련하여 신규 항목(COPD, 안저검사 인공지능 유방암 판독기술 등)을 도입할 필요

○ 여성 건강권 확대를 위해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검진항목(자궁・유방초음파 등)을 늘리고 조기 골밀도 검사를 지원할 필요

○ 초고령사회 진료비 증가와 관련하여 파크골프 등 시니어 스포츠를 국민 건강증진 정책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이 저조하므로 검진기관 접근성을 제고하고, 사전 홍보를 강화하며, 정밀검사 등 검진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폐기능검사 건강검진 도입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교육상담료 신설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감축한 인원의 79%가 2년 내 복구된 부분 관련, 공단의 효율성을 높인 바람직한 정책이었는지 검토할 필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환자 배제 문제에 대해 인센티브 제도보다 강력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다문화가정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폐암검진 관련 흉부엑스레이에 AI기반 폐암 판독 보조시스템을 접목할 필요

○ 흡연·음주로 인한 급여비 지출이 최근 5년간 약 28조원에 달해 예방중심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요양기관 》

○ 요양기관 부당청구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요양급여 부당청구 적발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네트워크병원과 간납 문제를 해결하고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회계 경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추진할 필요

○ 사무장병원 개설에 관여한 중복 가담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건보재정이 누수되고 있으므로 공단 특사경 도입을 추진할 필요

○ 환자 제보에 의존하는 부당청구 감시시스템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의료기관이 진료받지 않은 항목을 부당청구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이용자의 수정신청을 받지 않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

○ 부천 이룸병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청구 관련, 공단이 지난 9월 11일 결론을 내리고 복지부에 현지조사 의뢰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실시할 필요

○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므로 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

○ 특정 약국체인(30여곳) 행정조사 과정에서의 행정권 남용 지적에 대한 공단의 입장을 제시할 필요

《 자격부과 및 징수 》

○ 외국인 부당수급 문제 관련,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 시 사업주가 신고의무를 준수하지 못해서 부당수급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공단의 소득 조사가 국세청 세무조사와 중복되는 문제에 대하여 국세청 세무조사로 일원화할 필요

○ KT EDI 서비스 종료로 1인 세무사의 보험사무 업무대행에 불편이 발생하므로 조치방안을 마련할 필요

○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경우 매년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과 공단에 중복하여 소득신고를 하고 있어 불필요한 업무부담이 발생하므로,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 소득신고를 국세청 연계자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특정 국가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보다 전체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관리기준을 개선할 필요

○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건강보험료 재산 비중을 축소하고,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단일부과체계로 전환하도록 노력할 필요

○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무차별적 예금압류 조치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한 보험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 필요

○ 사업자등록 소득은 1만 원만 발생해도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불공정하므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개선할 필요

○ 보수총액통보서 수기 업무 처리 시 착오출금 등 오류 발생에 대한 통제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탈락자(소득・재산 초과)에 대한 유예기간 설정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체계(등급별 점수제)의 역진성과 상한제의 불공정성을 해소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외국인 건강보험료 체납 및 결손 증가에 대하여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체납 정보를 체류연장 심사와 연계하고, 출국 전 건강보험료 정산의무제를 도입하며, 국적별・체류자격별・체납 규모 중심의 맞춤형 관리체계 방안을 마련하고, 압류 등 징수 강화를 위한 체납자 정보를 확보토록 노력할 필요

○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외국인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의무 교육을 제도화하고, 실시간 자격검증시스템을 보완(출입국 체류자격과 건강보험 자격관리 시스템 실시간 연동)하며, 부정수급자 재가입 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별 위험등급제·보건안전 사전평가제(HIA) 도입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외국인 자격상실 후 수급과 관련하여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장에 적기 신고를 독려하고,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선별제외 기준 및 심의위원회 투명성 확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재산 보유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 부과체계를 검토할 필요

○ 결손처분 및 체납세대의 절반 이상이 사회적 취약 및 소액체납으로, 이러한 소액체납자(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납부를 유도하고 복지 연계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장기요양 》

○ 장기요양기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환수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서울요양원 비정규직 위주 채용문제에 대하여 정규직 위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기관의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요양보호사의 장기 근속장려금 근속기간 산정 기준 완화 등 전향적인 제도 개선 필요

○ 국공립 데이케어센터 확충 및 프로그램 다양화 필요

○ 장기요양 위생원의 업무범위 불명확으로 인한 환수처분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

○ 온요양원 부당청구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치하고, 장기요양 부당이득금 악성채권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

○ 장기요양시설 내 직종 간 장기근속장려금 불균형을 해소하고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대상에 고령친화식품이 포함될 필요

○ 온요양원 업무정지 개시 이후 전산상계 중지 및 채권·동산 압류 등 징수 현황을 보고할 필요

○ 현행 공단과 지자체의 장기요양기관 현장점검 체계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조사방식 및 점검항목 세분화·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특사경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학대 발생기관 등급평가·설치기준을 강화하고 허위 홍보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할 필요

《 기관운영, 재정 》

○ 의료대란으로 인한 건보재정 2조 원 지출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 육아목적 단축·단시간근로자 공백 관련, 대체인력뱅크 운영 등을 점검할 필요

○ 최근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원활한 노사관계를 위해 사측이 책임있는 역할을 할 필요

○ 개인정보 관리 부실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의료대란에 건보재정 투입으로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고, 건보재정에 대한 법상 국고지원은 20%이나 지원율이 점점 하락중이므로 법정 정부지원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상임감사 공모 절차 신속 추진 필요

○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불법유출 근절 방안과 개인정보 사고 관련 일벌백계를 위한 공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담배소송과 관련하여 공단의 적극적 대응 필요

○ 의료대란에 건보재정 투입 등 정부 정책 결정 관련 건정심에서 공단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필요

○ 공단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 지적에 따른 대책방안을 마련할 필요

○ 공단은 국세청에서 소득자료를 제공받아 건보료를 산정하는데, 건보료 산출근거에 대해 공단이 국세청으로 민원을 전가하는 태도를 점검하여 조치할 필요

○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및 국회 심의 구조 강화 방안 검토 필요

○ 건강보험 적립금 운용수익률 개선을 위해 운용담당자 순환보직 최소화 및 전문트랙 도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공단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위해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를 포함한 독립적 통제기구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접근 로그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 강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

○ 개인정보 유출·노출 사고에도 소홀한 정보보안에 대하여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개인정보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며, 전문인력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

○ AI 고객상담 플랫폼 도입 관련 일자리 감소 및 상담 효율성 저하 우려, 시스템 오류 등에 대한 대책 수립 방안 검토할 필요

○ 개인정보 유출 문제 관련 솜방망이 수준의 징계수위를 강화하기 위해 보통징계위원회(4급 이하)에 외부위원 30% 이상, 여성 30% 이상 포함할 필요

○ 직원 자녀학자금 지원 관련 시정 조치 필요

○ 임직원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하여 징계양정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무선백도어 해킹 위협 증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보안 기본지침」내 무선백도어 규정을 포함할 필요

○ 장기요양 서버 과부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시간외 및 조기퇴근 정산근무 허위 확인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3) 국민연금공단

○ ESG 평가 하위등급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투자제한 지침 마련 필요

○ 국민연금의 KT 前 대표이사 연임 반대 관련 감사 필요

○ 국민연금기금의 사모펀드 투자방식 점검 및 개선 필요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종합조사의 신뢰성·타당성을 제고하고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조사인력 역량·윤리의식 강화 및 사전고지제도 도입 필요

○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서비스 본사업 활성화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개선 필요

○ 사모펀드의 차입매수(Leveraged Buyout; LBO) 방식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투자제한 필요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20·30세대의 불신과 세대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자동조정장치 등 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검토 필요

○ 장애등급 폐지를 반영한 장애인연금 수급요건 개선 필요

○ 중증장애인 평균수명을 고려한 노령연금 조기수급 허용 필요

○ 노령연금 급여액의 성별 간 격차 대응방안 연구 필요

○ 기금운용직 운용성과 개선을 위한 처우개선 필요

○ 최근의 「상법」 개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관련 지침 개정 필요

○ 연구결과물의 발간·공개 등 국민연금연구원의 독립성 보장 필요

○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재원 조기소진 방지 및 이자부담 경감 필요

○ 가습기살균제사건 가해기업 대상 적정 수준의 구상금 청구 및 투자제한 필요

○ 국민연금기금의 적자 전환시점 등을 고려한 적정 포트폴리오 구성 필요

○ 향후 연기금 국면별(기금 성숙기 및 기금 고갈기) 기금운용 전략 및 대응방안에 관한 체계적 연구 필요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주식보유비율 등을 고려한 적정 손해배상액 산정 및 관련 소송 적극 대응 필요

○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 유지를 위하여 정책펀드 출자에 대한 신중검토 필요

○ 노인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소득활동 연계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 필요

○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지원 확대 필요

○ 국민연금공단 비위 임직원 징계처분 등 임직원 윤리점검 시스템 강화 필요

○ 외국 입법례를 고려한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악용 가능성 방지 방안 마련 필요

○ 국민연금공단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안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국민연금 분할연금 소급청구에 따른 미환수금 징수 지연 방지 방안 마련 필요

○ 국민연금기금 해외투자 증가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재조정 필요

○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소득요건 상향 필요

○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고의 선제적 투입 필요

○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지침(스튜어드십코드) 절차 준수 등 실효성 강화 필요

○ 국민연금공단 웹(Web)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 등 장애인 접근성 제고 필요

○ 인적자본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투자사업 자문단 설치 필요

○ 일산대교 매각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손실 발생 가능성 차단 필요

○ 이재명 정부가 국내주식 투자 비중 등 연기금 운용에 개입한다는 사회적 우려 커지고 있으므로, 기금 운용의 독립성 원칙을 강화하고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신뢰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기금운용 전문가 중심의 국민연금기금운용 위원회 구성 및 포트폴리오 설계의 독립성 보장 방안 검토 필요

○ 영세사업자의 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근로자 보호 방안 실효성 제고 필요

○ 특별재난지역 주민의 국민연금 보험료 감면 등 직접적 지원방안 검토 필요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장기화 방지 및 납부재개 유도 방안 마련 필요

○ 노무제공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장가입자 편입 방안 검토 필요

○ 국민연금 과오납금 자동 환급제도 도입 및 과오급금 사전 방지 방안 검토 필요

○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금융부문으로부터의 전용 방지 방안 검토 필요

○ 청년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개혁 필요

○ 자립준비청년 재무상담서비스 참여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투자 확대 방안 검토 필요

○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국고 투입 논의 시 증세 등 재원 마련 방안 검토 병행 필요

○ 청년 세대가 동의하는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입장 표명 필요

○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세대별 수익비가 낮은 청년 세대의 부담 해소 및 세대 간 형평성 확보 방안 제시 필요

○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입장 제시 필요

○ 청년 세대 불신 해소를 위한 교육·홍보 및 연금개혁 과정에서 청년들과의 소통 공간 마련 필요

○ 기금운용직 인력 이탈에 대한 원인 및 방안을 분석하고,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대체투자 등에 대한 책임투자(ESG) 강화 및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국민연금기금의 홈플러스 투자금 회수 방안 구체적 제시 필요

○ 지역균형발전 실천을 위한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지역 개최 필요

○ 국민연금기금의 MBK 투자 잔여금액 회수 가능성을 확인하고 사모펀드 투자원칙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2015년 공단 내부 투자위험보고서에 담긴 홈플러스 인수 위험성 인식 여부 및 투자 경위 해명 필요

○ 투자대상 회사의 기업가치 제고에 중점을 두는 위탁 운용사 선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단의 입장과 향후 계획 제시 필요

○ 고령층의 근로 유인을 저해하는 노령연금 감액제도에 대한 공단의 입장 및 합리적 개선 방안 제시 필요

○ 35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 대한 조기연금 감액 완화 또는 전액 수급 허용 제도 정책적 검토 필요

○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 감액 제도 개선에 대한 공단의 입장 제시 필요

○ 중증장애인의 노령연금 조기 지급 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 및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나설 의지 표명 필요

○ 평균수명이 짧은 장애인에게 63세 이후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의 실질적 소득보장 제도인지 및 장애유형별 수급기간 격차 분석 결과 제시 필요

○ 사별 후 재혼 시 유족연금을 전면 소멸시키는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로드맵 마련 필요

○ 유족연금 이중수급 제한 완화나 합리적 제도 보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나 계획 상세 보고 필요

○ 청년층의 연금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직업훈련 크레딧의 구체적 도입 방안 조속 검토 필요

○ 크레딧 제도 사전지원 방식으로의 변경에 관한 공단의 입장 제시 필요

○ 생애 최초 청년 연금보험료 지원 도입 시 공단이 추정하는 금액 및 지원사업 정착을 위한 비용 추산 필요

○ 저소득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방안 및 고소득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 극대화 등에 대한 공단의 입장 제시 필요

○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관련 외부 회계감사 및 모니터링 제도화 추진 필요

○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이용자 확충, 전담인력 및 예산 적정성, 지원 내용 및 대상 확대 방안 제시 필요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시 재산관리지원서비스와 연계 의무화 방안에 대한 복지부 협의 의향 표명 필요

○ 반복적인 비위행위와 관련 재발방지 대책 및 조직문화 개선 방안 구체적 제시 필요

○ 외부위원을 대폭 확대하고 노동조합원 등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징계 시스템 마련 필요

○ 해외파견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위반 규정, 적용 징계기준 및 징계기한을 명확히 할 필요

○ 과오지급·미환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연금 관리 체계 마련 필요

○ 기초연금 부정수급 관련 AI·데이터를 활용한 사후관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 필요

○ 연금 과오지급 방지를 위한 필요한 법률 개정사항과 제도 개선 방안 제시 필요

○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 관련 취약계층에 대한 감액 예외나 면제 등에 대한 보완책 검토 여부 확인 필요

○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동시수급으로 인한 생계급여 삭감 문제에 대한 공단의 입장 제시 필요

○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대상 포함 등 개선 필요성에 대한 검토 의견 제시 필요

○ 지역별 가입기간 및 수급액에서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 분석 및 불균형 해소 대책 마련 필요

○ 저임금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차별 해소 및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평균 임금의 85% 수준 상향 계획 제시 필요

○ 비연고자 숙소 확충, 노후 숙소 개선, 숙소 미사용 비연고자에 대한 교통비 등 수당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전북권역 지사의 과밀화 문제에 대한 공단의 입장 및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향후 계획 제시 필요

○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관련 인력 증원, 공정성 및 맞춤형 지원 보장 방안, 인권침해 예방 노력, 사전 설명 보완 필요

○ '26년 장애인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공단의 역할/수행 업무 및 본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예산 확보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대책 제시 필요

○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의 가입률 제고 방안 및 기초 통계자료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제외 시 문제점 및 보험료 면제 협정 체결에 대한 입장 제시 필요

○ 외국인 추납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단의 입장 제시 필요

○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의 웹 접근성 품질인증 및 향후 기획 단계부터 접근성을 고려할 절차·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노인과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서비스를 위해 별도의 접근성 전담 조직 운영 검토 필요

○ 해킹 건수 관련 의원실 자료요구 답변 제출에 대한 공단의 입장 및 해킹 시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 방법 및 계획 제시 필요

○ 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해 국고지원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가평상담센터 폐쇄 중지 및 지역상담센터 활성화 방안 제시 필요

○ 공단의 퇴직연금 수탁운용에 대한 입장 제시 필요

○ 초고령사회, 노인 빈곤 및 국가채무 증가 대비를 위한 8대 사회보험 통합 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공단의 입장 제시 필요

○ KT 대표 선임 과정에서 공단이 인사개입을 한 것 아닌지 해명 필요

○ 영구 비공개보고서에 대한 자체 감사 실시계획 제시 필요

○ 기금운용에 전문성이 없는 상근전문위원)이 계속 근무하는 것에 대한 공단 이사장의 견해 표명 필요

○ 가습기 살균제 가해자에 대한 강제집행, 손해배상소송 등 실질적 조치 이행 여부 및 실질적 징수 대책 마련 필요

○ 수급자 안부 우편 서비스 수도권, 대도시 지역 확대 및 타 기관 서비스와의 중복 여부에 대한 공단의 입장 제시 필요

○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대출 상한선 조정 필요성 관련 공단 입장 제시 필요

○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추진 필요

○ 2023년 국민연금의 외환 시장 영향 보고서에 따른 환율 변동률 기여도 상승에 대한 대책 및 국내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외투자와 국내투자의 비율 재조정 필요

○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 서비스의 신뢰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독립적 회계감사 및 모니터링 제도화 추진 필요

○ 기초연금 부정수급 및 오류 감소를 위한 AI 및 데이터 활용 생존·거주실태 검증 시스템 구축 의향 확인 필요

○ 연금 과오지급 예방을 위한 지급 전 자동검증시스템 도입의 구체적 일정과 예산 확보 계획 제시 필요

○ 소멸시효 만료 환수 불가능 처리된 환수금에 대한 특별 관리 대책 및 법적 허점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 계획 마련 필요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지연으로 인한 시효완성' 문제에 대한 공단의 책임 표명 요구

○ 고의·상습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부정수급 전담 조사팀 신설 또는 검찰·경찰 공조체계 강화 추진 검토

○ 수급권 변동 검증 체계 및 환수시효 문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및 연금관리 체계 복원 방안 보고 요구

○ 공직기강 해이 반복에 대한 감사 후속 조치의 재발 방지 실효성 및 사후관리 체계 작동 방식 보고 필요

○ 크레딧 사전지원 전환 시 재정 부담의 주체별 분담 구조 검토 및 청년 세대 지원 철학에 대한 공감 여부 확인 필요

○ 환율 상승 원인으로 지목되는 해외투자 대신 국내투자 비율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공단의 입장 표명 필요

○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대면심사 강화, 심사 투명성 및 소통 강화 등 장애등록심사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KT 헬스케어 매각 관련 대주주로서 기업가치 평가 및 공단의 입장 확인 필요

○ KT를 대상으로 한 비공개 서한 발신, 면담, 중점관리사안 지정 등 주주 활동 수행 여부 확인 필요

○ KT의 반복적 기업 리스크(소액결제 해킹 등)에 대한 국민연금의 관리 기준 제시 필요

○ 이재명 정부 목표 대비 국민연금 탈석탄 이행 시점의 시기적 부적절성 여부 해명 필요

○ 전환금융, 선제적 투자전략 등을 통한 탈석탄 로드맵 가속화 및 공약 이행 가능성 여부 검토

○ ‘2030년 이전 단계적 석탄투자 감축 계획 수립’ 및 ‘국내 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한 입장 표명 필요

○ 거래증권사 선정 시 ‘책임투자 보고서 발간 건수’ 중심 평가의 형식적 ESG 평가 우려 해소 및 실행 지표 반영에 대한 입장 표명 필요

○ 거래증권사 선정・탈락 사유의 투명한 공개 필요

○ ESG 경영을 저해하는 거래증권사에 대한 사후 평가 및 제재체계 마련에 대한 입장 표명 필요

○ 무선백도어 해킹 대비를 위한 규정 보안 계획 및 사전 예방적 대응 방안 마련 필요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경피적 승모판막 성형술(TEER) 시술 관련 행위 및 치료재료 급여 결정신청의 심사와 검토가 지연되는 구체적 사유에 대한 질의

○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관련, 시범사업에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는 평가 방식과 심사 기준 등을 적용할 필요

○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관련하여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 약제의 선정 기준과 절차, 폐동맥고혈압 치료제의 급여 검토 진행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

○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관련 비식별화 조치의 안정성 검증의 방식 및 재식별 위험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모의해킹 테스트 결과 3년 연속 동일 취약점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개선방안과 근본적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관련, 의원급에서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통계 체계 강화 필요

○ 한약사의 자동차보험 청구 배제 문제에 대해 제도개선 필요

○ 2002년 여대생 청부살인사건 연루된 모 심사위원에 대한 인사조치 필요 및 임명 관련 감사원 감사 필요

○ 금품수수, 이해충돌 심사, 무허가 겸직 등 공정성 및 투명성 훼손 및 직원 기강해이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기강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주요 요직 및 의사결정 위원회에 특정 대학 인맥 알박기 의혹에 대해 조사할 필요

○ 퇴직 후 대형 로펌행, 이해충돌과 전관예우 관행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 혈액검사 급증에 대해 선별집중심사 항목 포함 등의 대책 마련할 필요

○ 암 환자의 삶의 질 제고와 존엄성을 위한 통증치료 보험급여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젊은 중증 강직척추염 환자의 치료에서 생물학적 제제와 JAK억제제의 효과가 동등하고 후자의 약가가 더 저렴함에도 생물학적 제제 치료 실패 이후에만 급여를 인정하고 있는데, 두 약제를 동일선상에서 급여 인정하여 환자별 최적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최근 5년간 의료기관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5배 급증한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장애인 건강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 수행 및 물리치료사·재활치료사·사회복지사 등을 포함한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며, 매년 수행하는 연구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 건강 관련 연구로 배정하고, 연구 및 심사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 또는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노인학대 요양병원에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평가 체계를 개편하도록 계획을 마련할 필요

○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난임시술 유형별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기관의 범위, 평가기준 지표, 정보 공개 범위를 개선하고, 시술 건수가 적은 기관에 대한 별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며, 자료 미제출 기관에 대해 별도 조치를 하고, 난임시술 의사 보수교육 이수율을 향상시킬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약물 오남용, 중복처방 등 국민 약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DUR 의무화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정신과의원 원내 처방 후 직접조제 하는 경우 조제단계에서 DUR 점검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심사와의 연계 필요

○ 국민 알권리를 위해 병원 표준화 사망비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필요

○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임신중지에 대한 항목 추가 방안 검토 필요

○ 중증의 결절성 양진 환자에 한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치료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

○ 콜린 의약품의 급여기준 및 허가사항을 준수한 적정처방으로 관리할 필요

○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 치료제의 경우 신속한 급여 등재가 핵심으로, DLBCL 2차 치료에서의 CAR-T 치료제 급여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할 필요

○ 상임감사, 기획상임이사 공모절차를 서두를 필요

○ 기획상임이사 알박기 인사에 대한 지적

○ 비급여 진료비 부당 청구 비율이 높은 기관에 대한 직권 심사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환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료비 확인 제도를 적극 홍보할 필요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상모형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

○ 발달지연이나 발달장애 치료의 경우 R코드와 F코드 등 상병코드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발달지연·장애 아동 진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세밀한 상병코드를 마련할 필요

○ 자동차보험 세트처방 심사기준 마련 및 평가업무 수행 등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필요

○ 대리수술·유령수술과 관련된 건강보험 부당청구행위 개선 및 적발기관에 대해 실효성 있는 현장조사와 환수 등 행정조치 필요

○ 공적 마일리지가 상당수 단순 유효기간 만료 또는 퇴직직원에게 귀속되어 소멸되는 것으로 확인된 바, 공직복무관리업무 취약분야(국외출장) 자체점검 이행과 함께 권익위의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활용한 사회 공헌 활동 의무화, 효율적 사용을 위한 항공사 협업 노력에 대한 권고 사항을 지키는 등 사용 현황 관리할 필요

○ 비급여 국소마취제 등을 사용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이중부당청구 의심 행위에 대해 이중청구 의심 기관 현지 조사와 부당 청구액 환수 필요

○ NGS검사 장기·전주기 비용-효과성 평가 체계 도입과 해외 연구·임상근거를 포함한 비용-효과성 평가를 통한 보장성 확대에 대해 검토할 필요

○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과 환자 삶의 질을 높여주는 신경성형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 필요

○ 조기 유방암 재발률 감소를 위한 국가적 대책으로 조기 유방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 급여화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조기 유방암 치료제 급여 검토 시 주요 평가요소에 재발 방지 효과성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

○ 담도암 치료제 임핀지주 급여 등재에 대한 입장 질의 및 추진 계획과 탄력적 ICER 적용 계획 검토 필요

○ 국민동의청원 1호 안건인 VHL 폰히펠-린다우증후군 치료제, 웰리렉정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요구도에 대한 의견, 두 차례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논의에서 급여 기준 미설정으로 결정한 이유, 질환의 특수성을 반영한 검토 방식과 현재 진행상황, 해당 치료제 급여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 질의 및 검토 계획을 제시할 필요

○ 상근심사위원장의 인사관리, 서울에서 회의 및 심사가 이루지는 것에 대한 입장 질의 및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혁신적 양성 위암 표적치료제의 급여 적용 추진 의의, 국가암관리 정책 반영 방향에 대해 질의

○ 시신경척수염 치료제는 1·2·3·4차로 나누어져 있고, 재발 후에야 신약을 투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적기에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없으므로 급여기준을 개선할 필요

○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중 주사제·경구제 교차투여 및 운동기능 평가 등 환자 상태를 고려한 급여기준 개선을 검토할 필요

○ 당뇨병 신약의 급여화에 대한 입장 및 최근 5년간 경제성평가를 통해 평가된 당뇨병 치료제 리스트 관련 질의

○ 비만 치료제 급여화에 대해 일본처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 요로상피암 치료제 급여화에 대한 입장 및 향후 계획, 위암 말기 표적치료제 급여화 진행 현황과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의 사전 심사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 관련 질의

○ 중증호흡기질환 적정성 평가 관련 흡입제 처방률 하락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안, 낮은 흡입기 처방률의 질 개선을 위한 심평원의 견해에 대해 질의

○ 최근 개정된 약평위 운영규정에 따른 위원장 선출방법, 소위원회 구성 및 결정권과 환자단체 추천 인원 수 축소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국민청원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리브리반트주의 검토 진행상황, 리브리반트주 급여화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암질심 심의 반영 여부, 급여화 필요성 및 경제성평가 방향,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

○ 비급여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의 비상식적인 가격 책정으로 인한 국민 의료비 지출 영향과 관련하여, 의료질 평가 지표에 '뇌사 추정자 신고율'을 본지표로 반영할 필요

○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 TAVI) 관련 적용 연령에 대한 급여기준 완화 필요

○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관련, 국내에 등록된 희귀질환의 치료제 허가·급여 등재 현황, 급여 미등재 및 허가-급여기준 상이 등에 대해 검토하고, 희귀질환 사각지대 실태를 파악하여 축소 방안을 마련하며, 폐기능 건강검진 이후 관련 질환자의 치료 연계 실효성과 적정성 평가에서 일차의료기관의 낮은 흡입약제 사용률을 고려하여 교육 상담료를 신설할 필요

○ 행정기준에 의한 과도한 진료비 삭감에 대한 심평원의 입장을 밝히고, 심사 강화를 위한 임상 근거 중심의 전문심사체계로의 전환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항생제 오남용과 내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소아청소년에서 항생제 사용이 급증하고 있어 유·소아 급성 중이염 모니터링, 처방일수 등 지표를 세분화하여 관리할 필요

○ AI 기반으로 개발한 부당청구 감지시스템 현안을 통해 AI 기반 사업 설계 시 충분한 예산, 인력 및 기술 검토를 선행한 뒤 사업기획을 추진할 필요

○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관련, 서류제출 행정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성장호르몬 주사 부작용 급증 및 오남용 대책방안을 마련할 필요

○ VHL 폰히펠-린다우증후군, 한랭응집소병 등 희귀질환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신약 등재 소요기간을 단축할 필요

○ 방문진료 참여율 제고를 위해 중소병원 부담을 완화할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

○ 의과-한의과 동일(유사) 행위인 한의과의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관련 건강보험 급여적용에 대한 결정행위 조정 신청 중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한 지체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

○ 임신·육아를 위한 단축·단시간 제도의 정착을 위해 퇴직자를 활용해 대체 인력을 추가 배치할 필요

○ 건강보험 임시등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AI 의료기술에 대해 미국이나 영국처럼 국내 AI기반 의료기기의 새로운 수가 모델을 도입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

○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에 Pola-R-CHP 병용요법을 도입할 필요

○ 항암제 병용요법 급여 개선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급여를 확대할 필요

○ 중증화농성한선염 환자들의 치료옵션 확대를 위해 신약의 급여화를 신속히 검토할 필요

○ 신경섬유종증 치료제 코셀루고의 급여기준 확대 필요

○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약제성과평가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

○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특혜 의혹 진상 파악을 위해 감사원이 감사할 필요가 있고, 자동차보험 심사에 있어 경상환자의 약침술·첩약 등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할 필요

○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개선 검토 필요

○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급증과 과잉진료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특수의료장비 노후화에 대한 정보(제조연한 등) 공개 시 영상 품질, 장비 적정 관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공개할 필요

○ 자동차보험 합의금 수령 후 2년 이내에 동일 병명으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는 등 건강보험 누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타이바소흡입액 비급여 결정 사유에 대해 질의

○ 작년 국정감사 시 제기된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 관련, 심평원의 자생한방병원 밀어주기로 수백억 원의 수익을 거둔 것에 대해 철저한 조사 필요

○ DUR의 중복 금기 처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험도별 경고 구분과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실시간 연계 등 개선 필요

○ 인공지능, 디지털 치료기기 임시등재 제도에서 과도한 청구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을 하고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전문심사 항목 선정기준과 퇴출기준이 불명확하며, 전문심사 비율은 줄었지만 심사항목은 늘어나고 있어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 하에 전문심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

○ 간암 치료제 임핀지-이뮤도 병용요법 관련, 투약비용비교 기준의 재설계 검토 진행 상황, 전문가 검토 범위・방법, 향후 비용효과성 평가 반영 시점과 절차와 급여 등재에 대한 구체적 추진 계획 질의

○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관련 응급환자 수용률, 중증환자 진료비율과 같은 핵심지표 강화 및 지역별 진료권 세분화를 고려할 필요

○ 무선백도어 해킹 등 신종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실거래 약가 조사 약가 인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등의 시행 시기가 달라 통합할 필요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 추진단 운영 체계화 및 PM 등 소속 직원의 해외출장 관리 철저 필요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의 사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PM 블라인드 채용방식 및 절차 개선 필요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 관련 우주의학 분야 과제평가단 전문성 제고 필요

○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의 수도권 편중 현상 완화 필요

○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상생 협력을 고려한 지역의료연구역량 강화사업(R&D) 추진 필요

○ 의료기관 특화 서비스 로봇 연구개발(R&D) 사업 추진과 병원현장 적용을 위한 맞춤형 지원 필요

○ 장애인·노인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기기 실용화 연구개발(R&D) 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등 관리 강화 필요

○ 장애인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확대 필요

○ 수요자 중심 연구개발(R&SD) 시범사업 확대 필요

○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및 제약기업 연계 강화 필요

○ 바이오헬스 융복합 인재양성사업에 한의사 참여 허용 필요

○ 의정갈등으로 붕괴된 의사과학자 양성체계 복원 필요

○ 공공의료에 대한 철학을 바탕으로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변경 타당성 재평가 필요

○ 의료해외진출 신규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국제의료사업 전문위원(GHKOL) 심화컨설팅 지원사업의 적정 추진 여부 조사 필요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등 임직원의 불요불급한 국외출장 자제 필요

○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임직원 복무기강 확립 필요

○ 보건의료분야 연구 부정행위 적극 적발 필요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임직원의 항공 공적마일리지 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

○ 스마트병원 기술 및 로봇 분야 연구개발(R&D) 필요

○ 의료기관 회계기준사업 인력증원 및 시스템 고도화 필요

○ 보건의료분야 연구비 관리감독체계 개선 필요

○ 중소화장품 해외진출 지원사업 실효성 검토 및 개선 필요

○ 외국인환자 급증에 따른 관리 강화 및 불법유치행위 예방 필요

6)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노인일자리 지원 》

○ 공익활동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노인역량 활용사업은 40%까지 확대할 필요

○ 노인일자리 수요충족률이 부족하므로 지속적으로 노인일자리를 확충할 필요

○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노인공익활동(공익활동) 활동비 인상 필요

○ 취업지원 사업(취업알선형)과 고령자친화기업에 대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 취업 지원과 고령자친화기업의 중도포기자 통계를 관리할 필요

○ 취업 지원 사업과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에 장기 취업 유지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경로당 급식 지원의 노동 강도 등을 고려하여 노인역량활용(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확대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할 필요

○ 참여자 대비 부정수급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 감독 및 점검 체계를 강화할 방안 마련 필요

○ 부정수급 환수 이행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 마련 필요

○ 노인일자리로 연계된 폐지수집 노인이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으므로, 정책 대상자의 욕구 분석을 통하여 일자리 연계 방안 마련 필요

○ 노인일자리 사업 전문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전담인력의 저임금, 짧은 근속 기간, 비정규직 처우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 필요

○ 2020년부터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829명으로 집계되었는데, 보행·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면접 심사 등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참여노인 선발기준·절차를 재검토할 필요

○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검토할 필요

○ 2026년 지침 내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경력인정 범위, 기준을 마련할 필요

○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제수당 예산항목을 인건비로 편성할 필요

○ 노인일자리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필요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인력 및 전문가 확충 필요

○ 민간형 노인일자리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체사업단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할 필요

《 노인일자리 참여자 보호 》

○ 노인일자리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으므로 예방대책을 마련할 필요

○ 안전사고 다발 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조치와 함께 안전전담인력을 배치할 필요

○ 수행기관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취약하므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맞는 위험성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

○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로 2020년 대비 2024년 안전사고가 2배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관리강화 대책 마련 필요

○ 수행기관은 인적 특성상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조치 필요

○ 노인일자리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위험성 평가 도구와 매뉴얼 마련 필요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발기준의 활동역량 비중 상향 검토 필요

○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상해보험·산재보험 등 보상 체계 마련 필요

《 기 타 》

○ 홈페이지 도용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 의뢰 계획을 수립하고 보안 침해 사례 대응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노인일자리 관련 허위 AI 콘텐츠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 필요

○ 육아기 단축 근로 우수기관에 대한 격려 필요

○ 공적 마일리지 관리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

○ 기관 업무보고 자료에 직급별, 성별 임직원 현황 및 장애인 고용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할 필요

7)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

○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 발급대상 아동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복지멤버십의 전반적인 목표를 현실화하고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

○ 복지멤버십-서민금융 연계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승인여부 확인불능 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

○ 복지멤버십 전국민 가입을 위한 단계별 목표 관리제 도입 검토 필요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 정보를 민간 개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및 서비스 확대 노력 필요

○ 국가 정보시스템 사업에 기술력 있는 기업이 참여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다각도적인 노력 필요

《 사회서비스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활동미감지시 대응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에서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 매뉴얼을 검토해서 보고할 필요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기자 수요 급증 및 응급관리요원 업무부담 과부하 상황을 고려하여, 응급관리요원 증원 및 대기자 적체 해소방안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정보연계와 활용을 위한 노력 필요

○ 장애인건강검진기관 및 건강주치의제도 등 보건의료기관과의 정보연계 계획 마련 필요

○ 위기청년지원시스템 적기에 구축하고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바우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부정수급 현장조사시 지침을 숙지하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장애 유형과 제도적 상황을 고려하여 사례별 판단을 할 수 있는 내부 조사 원칙 및 지침을 마련할 필요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연말정산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추진 관련하여, 차질없이 진행하고 홍보를 강화하며, 현재까지의 진행현황을 보고할 필요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자바우처시스템 장애기간 중 바우처 잔량 초과결제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부당함이 없도록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중단으로 이용자, 지자체 공무원 등의 불편이 매우 컸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

《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아동 》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아동의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읍·면·동 복지 인력 확충과 아동학대 사례관리대상자를 포함한 보호체계 전환을 위해 시스템 기능 개선 필요

○ AI를 통한 복지 대상자 욕구 파악 기능개선 및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복지위기알림앱과 129콜센터간 제공되는 서비스가 중복되고 있어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고독사 예방을 위해 기술적 역량과 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구체적 정책설계와 실행방안 마련 필요

《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

○ 민간의료기관 보안관제 가입을 지원하는 방안 및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구체적 방안 마련 필요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디지털돌봄시스템 복구지연으로 독거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등 실시간 모니터링 혼란 야기, 향후 정보시스템 등급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 반복되는 해킹 위협으로부터 실시간 정보보호 대책 마련 필요

○ 보건복지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통합 및 AI인퍼런스 클라우드 센터 구축 노력 필요

《 기 타 》

○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률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장기 수탁사업의 고유사업 전환 필요

○ 공적 마일리지 관리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

○ 기관 업무보고 자료에 직급별, 성별 임직원 현황 및 장애인 고용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할 필요

8)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기관장 관련 내부 징계규정 마련 필요

○ 내부 교수진 확충 방안 마련과 강사 활용 절차 등의 점검 필요

○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종사자 대상 보수교육 체계화 및 확대 노력 필요

○ 인재원 조직문화 진단결과 재발 방지 계획 마련 필요

○ 임원 징계 종류 등 내부규정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

○ 청년 WHO 진출을 위한 교육·멘토링 프로그램 확대 필요

○ 공적 마일리지 사용 규정 재정비 필요

9)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기관 운영 》

○ 보건교육사 자격심의위원회 대면 회의 관련 회의비용 과다 지출 및 증빙 미비에 따른 회계처리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정건전성 악화 관련 중장기 대책 마련 및 흡연예방이나 금연정책이 아닌 목적 외 지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장치 등 검토 필요

《 건강증진사업 》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단가의 현실화 필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24년 농어촌특별회계에서 지특회계 자율계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이므로, 농어촌특별회계로의 복원에 대한 논의 필요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 앱 '채움건강', '오늘건강', '금연길라잡이' 등 개발원 운영 앱의 장애인 접근성 인증 필요

○ 개발원 연구과제 결과 평가 및 발표 지연 문제 관련, 내부통제와 관리 개선 필요

○ 보건소 만성질환관리서비스와 타 사업 간 중복이 없는지 검토하여, 유사 사업 간의 통합 검토 필요

○ 핵심 사업(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미래 건강 시스템,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성과부진 및 실효성에 대한 개선 노력 필요

○ 건강수명 연장,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해소 필요

○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관련 시스템 노후화 대책 마련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채움건강(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오늘건강(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확대 필요

○ 연구 부정행위 적발 체계 마련 필요

《 담배규제정책 및 금연사업 》

○ OTT를 통한 청소년 흡연 조장 문제 개선을 위한 유관부처 협력 및 대책 마련 필요

○ 액상형 전자담배 무인 점포 실태 파악 및 모니터링 확대 필요

○ 담배사업법 상 담배 정의 확대를 위해 노력 필요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한 광고·판촉,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등 규제 방안 마련 필요

○ 지역금연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운영자에 유리한 공모구조와 평가지표 개선 및 사업 실적에 대한 정확한 평가, 지원 사업 참여기관 관리부실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보건소 금연상담클리닉 사업의 검토 및 금연 성공률 제고 필요

《 음주폐해예방사업 》

○ 게임, 음료와 콜라보로 음주를 조장하는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와 주류 광고 상습 위반 기업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주류 광고 및 마케팅 모니터링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 음주폐해예방사업의 예산·인력 확충 방안 마련 필요

10) 국립암센터

○ 국가암데이터센터 분석 인프라 확충 및 국가 암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필요

○ 장애인건강검진 필수장비 구비 계획 수립 필요

○ 호스피스 이용률 제고를 위해 호스피스전문기관 인프라 확충 노력 필요

○ 국립암센터 노후 의료장비 개선 필요

○ 전문의 중심 필수의료인력 확충 필요

○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의 고령암・청년암 사각지대 해소 필요

○ 폐암 검진사업의 농어촌 확장 위한 순회 검진 사업 검토 필요

○ 공적 마일리지 사용 현황 관리 필요

11) 대한적십자사

○ 이산가족 상봉・교류 재개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제안 필요

○ 신천지예수교(개인 및 단체) 헌혈 유공 표창에 대한 질의

○ 영주기독병원 산모 사망 사건 관련 혈액 모니터링 구축 및 공급관리 필요

○ 항응고제 오투입 관련 헌혈자 안전사고 예방 필요

○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F-RBC) 및 성분채혈혈소판(A-PLT)의 보급률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할 필요

○ 혈장분획센터 혈장 냉동창고 신설 사업 자구책 마련 필요

○ 부산혈액원 이전 신축의 차질 없는 추진 필요

○ 헌혈기념품(영화관람권) 입찰 시 유찰 사유 보고 필요

○ 적십자병원의 임금 지연 및 적자구조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적십자병원의 의료인력 구인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헌혈 시 승진심사 가점 부여와 같은 직원 인센티브 개선 필요

○ 내부 직원 인권 보호 및 청렴성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필요

○ 징계부가금의 기금화를 통한 윤리교육 강화 등 활용 방안 검토 필요

○ 공적 항공 마일리지의 활용 현황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적십자 표장 사용 관련 홍보 및 계도 방안 마련 필요

○ 연휴 기간 등 혈액 보유량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

1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25년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 감소에 따른 예산 부족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의 필요

○ 의료윤리 문항 출제 확대가 필요해 보이며, 외국 윤리문항 출제비율 사례 조사 후 보고 필요

○ 공적 마일리지 사용 현황 관리 필요

13) 한국장애인개발원

《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 》

○ 공공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업무인력 기준 준수와 변호사 인력 배치 필요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및 관리체계 정비 필요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서비스 향상 필요

○ 장애인 학대 지원체계 정비 필요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접근성 개선 필요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자질검증 및 직위 악용 방지 필요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추진 계획 점검 및 지속적인 공유 필요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 '이주 장애아동'을 포함한 사업운영 필요

○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 현황 파악 필요

○ 형사사법절차 지원 및 수사재판과정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필요, 권리구제 업무인력 기준 준수필요

《 정책지원 》

○ 연구성과 관리 및 인력운영 등 재정비 필요

○ 장애인 개인예산제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발원의 역할수행 필요

○ 장애인 개인예산제 허들은 높이고 자율성 강화 필요

○ 장애인 재난 대응, 안전가이드 제작에 그처선 안되며 면밀한 분석과 제도 개선 필요

○ 장애인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써의 역할 수행을 위한 인력과 예산확보 필요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속방안 필요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마련 계획 보고 필요

《 직업재활(일자리)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필요

○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을 통해 포용적 일자리 제공 가능성 검토 필요

○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재택근무 및 디지털 직무 개발 필요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실효성 제고 및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직업재활 훈련수당 및 사업체 지원금 격차 개선 필요

《 편의증진 및 BF인증 》

○ BF인증 심의위원회 운영시 장애인 위원 참여 필요

○ BF인증운영기관 역할 확대 필요

○ BF인증 심의위원 교육 인정기준의 사후 변경 등 행정편의주의 개선 및 탈락 장애인위원 구제방안 마련 필요

○ BF인증 심의위원 중증·경증 현황 관리 및 장애인위원 역량강화교육 등 BF인증 관련 정비 필요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셀프주유소 및 전기차 충전소 포함 필요

○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면적 기준 폐지와 준공 연도 예외에 대한 단계적 개선 필요

《기관운영》

○ 공적마일리지 사용 현황 관리 필요

○ 국제장애인협력사업 재개 필요

○ 기관 업무보고 현황자료에 직급별, 성별, 구분하고 장애인고용 현황을 포함할 필요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기관의 공식 입장 필요

○ 여성 고위직 및 관리자 임용 확대 필요

○ 회계 및 보안관련 비위 재발 방지 계획 보고 필요

14)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해외사무소 관련 》

○ 해외사무소 법적 지위 확보 및 파견직원 보호·안전관리·위기대응 강화 필요

○ 해외사무소 사업 회계 투명성, 감사 및 평가 통일성 강화 필요

《 인도주의 사업 등 관련 》

○ 북한 보건의료 지원을 위한 인도적 지원 질의

○ 기부금품 수집 및 별도 의료물자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공적 마일리지 사용 현황 관리 필요

15)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기부식품등제공사업 》

○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격차, 현장 중심의 제도 보완 필요

○ 푸드뱅크 배분 지역불균형 및 종사자 인력부족 해소 필요

《 개인정보 및 전산 운영 》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 개인정보유출(2024) 사고대응 및 조치사항에 대한 질의

○ 정보자원 이전계획 추진에 대한 질의

《 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 》

○ 케어뱅크 미래 수급불균형과 봉사자 보상 등에 대한 질의

○ 케어뱅크 전국단위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필요

《 사회복지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갑질 예방 및 관련 직능위원회 회의에 대한 질의

《 기관운영 등 》

○ 육아휴직 중 영리활동 등 관리·감독 미흡에 대한 질의

○ 국외출장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관련 지침 개정에 대한 질의

○ 업무보고현황 직급별·성별 구분 명시 필요

○ 공적마일리지 사용 현황 관리 필요

16) 국립중앙의료원

《 신축 이전 및 부지 활용 》

○ 신축이전 공사비가 낮게 책정되어 사업 지연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비 현실화 필요

○ 국립중앙의료원의 정부 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공간 확보 필요

○ 현 을지로 부지를 공공의료 거점이나 산업허브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공공의료 확충 》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국립중앙의료원의 정책지원 역할 강화 필요

○ 제3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완결형·중앙-지역 협력체계 강화 전략, 정책수가 도입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필요

○ 대학병원의 복지부 이관이 지역의료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필요

○ 이송병원 선정 권한에 대한 문제는 환자 전원·이송을 더 원활하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

《 기관 운영 》

○ 자체 유휴공간을 활용한 어린이집 신설·운영 검토 필요

○ 시니어 의사 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체계 구축사업의 수요 대비 매칭률 저조, 특정 진료과목 및 지역별 편중 현상 개선 필요

○ 장애인 의무고용율 증대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장애인예술단 시범사업 도입은 긍정적이나, 고용 안정성 및 지속성 보장을 위한 노력 필요

○ 장애인건강검진 당연지정기관으로서 상세한 검진 데이터를 파악하기 어려운 제한점을 개선하고, 장애인 검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 2018년 당시 겸직 허가 여부 확인 없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을 임용하는 등 인사관리 상 미비사항이 확인되어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 필요

○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관련하여, 사업수행기관을 확대하고 있으나 지원사업 지정이 취소되거나 신규 공모에 대한 참여율이 저조하여 개선 필요

○ 치매 관련 공식 국가통계가 조사기관 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치매환자 의료기관 이용 건수가 특정 연도에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등 전반적인 통계 신뢰성 문제 개선 필요

○ 국가 치매정책에서 구강돌봄(치과진료, 구강질환 예방, 생활교육 등 포함) 항목이 빠져 있어, 제5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에 관련사항 포함 필요

○ 중앙치매센터 전산실 UPS 배터리 사용연한 경과로 교체 필요

○ 응급실 미수용 해결 위해 소방청과 실시간 정보공유 및 전원 조정 체계 구축 필요

○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보건의료 위기경보 해제 이후에도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 지속 운영 필요

○ 취약지 의료격차 해소 위해, 취약지 응급영상판독 지원사업의 인력 및 인건비 부족 문제 해결 필요

○ 의료기기 내구연한 초과 따른 환자 안전관리 강화 필요

○ 공적 항공 마일리지 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

○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다루는 개인정보의 양이 방대하여 철저히 관리할 필요

○ 전공의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진행 상황 검토 필요

17)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신의료기술평가 》

○ 선진입 의료기술 트랙으로 진입한 일부 기술들이 비급여 상태로 사용이 지속되고 있어 남용 가능성 방지를 위한 개선안 마련 필요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 위원 선정 및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계획 질의

○ 신의료기술평가 시 외부 전문가, 산업계, 환자단체의 참여 계획 및 개선 방안 질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혁신의료기술조차 NECA 평가 지연과 절차로 시장 진입이 늦어진다는 의견, 규제기관이 아닌 혁신지원(촉진) 기관으로 전환할 필요

《 의료기술재평가 》

○ 의료기술재평가 권고등급의 법적 효력 질의 및 의료기술재평가 결과가 ‘권고하지 않음’인 의료기술에 대하여 급여 조정, 고시 삭제 등의 사후 조치가 미흡한 부분에 관한 지적

○ 의료기술재평가 대상 선정과 평가과정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필요성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산하 편입 이후 이러한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질의

○ 의료기술재평가와 관련하여 일부 제약사들이 제기한 ‘연구결과 발표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 및 민사소송에 대한 견해와 소송 전망 질의

○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TAVI)의 급여기준 조정 여부에 대한 검토 내용 및 추가 검토 계획에 대한 질의

《 기관운영 등 》

○ 제보로만 이루어지는 연구부정행위 적발 프로토콜에 대한 보완 필요

○ 기관 업무보고 자료 내 직급별·성별·장애인 고용 현황 기재 필요

○ 기관 내 여성 고위직 및 관리자 비율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필요

○ 공적 항공 마일리지 사용 현황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

18)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에 조산, 저체중아 등 고위험군이 제외되지 않도록 개선 필요성에 대한 질의

○ 환자대변인 일부가 의료기관 측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할 필요

○ 진료과목별, 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율 편차가 있으므로, 개시율이 저조한 의료기관에 대한 대책 필요

○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을 당부

○ 비급여 의료기관 등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징수 및 대불재원 관리에 대한 질의

○ 손해배상금 대불금 구상률 제고 필요

○ 조정 결과의 강제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공적 마일리지 사용 현황 관리 필요

19) 한국장기조직기증원

○ 장기기증 관련 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 필요

○ 장기기증 동의율이 감소한 상황에서 기증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DCD 관련 인식 제고 방안과 뇌사추정자 신고율 제고 등 기증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선 순위자의 서면동의 불가능한 사유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보완 필요

○ 기증자 보상 확대 및 기증자 유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사후관리 서비스 등 예우를 확대할 필요

○ 지자체 간 장기기증 제도 운영 편차 보완을 통한 보편적 예우 서비스 확대 필요

○ 공적 항공 마일리지 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

20) 한국한의약진흥원

《 한의약 육성 전략 전환 》

○ 조제한약 중심이 아닌 한약제제산업 중심으로 육성전략 전환 필요

《 한약재 정보제공 》

○ 한약재 정보제공 사업의 목적과 대상의 명확화와 관련 단체와의 소통 필요

《 한약제제 표준화》

○ 한약제제 제약사들의 제품 개발 및 산업 발전을 유도하고 국외에서도 의약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할 필요

《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

○ 한약재 수급조절 관련 특정기업 특혜의혹에 대해 검토 필요

○ 국산한약재 수매실적 증빙자료 인정 기준 개선 필요

《 한의약사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

○ 품목허가 등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기준 개선 필요

《 한약소비실태조사 》

○ 한약소비실태조사에 조제전담인력 배치 항목 복구 및 전수조사 필요

《 약침약제 제도화 》

○ 약침약제에 대한 제약화 및 허가제 전환 적극 검토할 필요

《 공적 항공 마일리지》

○ 공적 항공 마일리지 사용 현황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

2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의료기관 인증 》

○ 정신의료기관 인증 조사위원 구성 및 항목 개선 필요

○ 중소의료기관의 인증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진료지원 간호사 관련 의료기관 인증기준 신설 필요

○ 환자안전사고 개선을 위해 약사 조사위원 확대 필요

○ 항생제 사용 관리에 대한 의료기관 인증기준을 확대하고 항생제 사용량을 의료기관 평가항목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요양병원 CRE 감염 환자 증가에 따른 요양병원 인증기준 내 감염 관리 강화 대책 마련 필요

○ 기관 이사회가 폐쇄적으로 구성 및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

○ 공적 마일리지 사용 현황 관리 필요

《 환자 안전 》

○ 지역환자안전센터 확대 지정 및 운영 필요

○ 2차 환자안전종합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 확충 필요

○ 환자안전 예산을 전용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

○ 환자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환자안전 전담인력 기준 확대 필요

22) 한국공공조직은행

○ 인체조직의 미용성형 목적 활용에 대한 바람직한 관리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복지부 및 식약처와 협의 필요

○ 공적 항공 마일리지 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

23) 아동권리보장원

《 입양 관련 》

○ 입양기록물 임시서고 선정 및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의 적절성, 국가기록원과의 MOU 체결에 따른 입양기록물 재이관 계획 및 향후 임시서고 활용 방안의 적정성에 대한 질의

○ 입양기록물, 아동카드 등 중요 자료의 검수, 관리체계 부실 등 반복적인 지적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등 조치 필요

○ 전산화 사업 결과물(외장하드) 관리 미흡상황에 대한 조치 계획 마련 필요

○ 국가기록원으로의 입양기록물 이관에 대해 입양인의 의견 청취 진행여부와 재소독에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 질의

○ 국가기록원 위탁 보존 관련하여, 이관시기, 이관 후 기록원 보관 기간, 업무협약 후 구체적 로드맵 마련 필요

○ 25만권 입양 기록물 전수 스캔을 위한 연차별 계획 수립 및 우선순위 등을 토대로 실행 필요

○ 개편된 공적입양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력 및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정보공개청구제도 담당인력 현실화, 처리 절차 단축 및 경찰과의 공조 등 구조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해외입양 과정의 인권침해 문제, 해외입양 중단 선언 필요성에 대한 견해 질의

○ 친생부모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일률적으로 비공개처리하는 것은 입양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위헌 소지가 제기된 만큼 의료상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입양정보공개 가능하도록 법 개정 필요

○ 임시서고와 관련한 문제사항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과 입양기록물의 안전한 보장을 위한 철저한 데이터 관리 및 기록관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국회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는 등 노력 필요

○ 입양기록물 전수조사 및 이관·보존 계획 등 질의

○ 입양기록물이 임시서고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시 소독·탈취 및 보존처리 등 절차로 시간이 지연되어 입양정보공개 열람이 중단되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적 지원 병행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국가기록원과의 협의 완료 여부에 대한 질의

○ 입양기록 불완전 시 고아호적 조작, 신원 바꿔치기 등으로 입양기록이 불완전하거나 정보제공이 어려운 경우의 가족찾기 사업 추진 필요 및 입양인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입양기록 검토, 실태 연구 추진 필요

○ 입양정보공개청구 친생부모 동의여부 확인을 우편발송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 이에 대해 입양정보공개사이트 개선 및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 필요

○ 해외입양인 2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 검토 필요성에 대한 견해 질의

○ 2025년 입양정보공개청구 매뉴얼 내용 중 입양정보공개 청구 횟수 제한 내용 즉각 삭제 필요

○ 가족찾기 성공률 제고 위해 경찰관서 협조 적극 활용 방안 마련 필요

○ 입양기록관 건립 계획 지연과 임시서고 안정성 보완적 마련, 신속한 입양기록관 건립 추진 필요

○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정보공개청구 웹사이트 개편안에 장애인 접근성 보장에 대한 부분 포함여부와 웹접근성 보장 및 웹접근성 품질인증 계획에 대한 질의

○ 장애인·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방문예약을 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임시서고 및 보장원 본원 방문 시 이동과 기록물 열람·해석 등을 지원할 직원 매뉴얼을 수립할 필요

○ 국가기록원과 협력하여 국가기록원의 자료에 장애인 접근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및 구체적인 추진 계획 마련 필요

○ 작년 입양기록물 부실 관리에 대한 질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 부족하며, 보건복지부 특정감사 결과(명령)로서 관련 직원 경징계 명령이 있었으나, 보장원은 외부인 포함 징계위원회 자체 구성 후 대상자에 대한 불문경고에만 그친 것에 대해 질의

○ 아동권리보장원 입양기록물 전산화 작업 감사결과에 따른 용역사업자 입찰참가 제한 이행 필요

《 아동권리 및 보호체계 관련 》

○ 보호시설 내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과 후견 감독권 충돌이 있어,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증명하는 법률 개정 필요

○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운영 등 위기임신보호출산제도 홍보 다각화를 통한 접근성 제고 노력 필요

○ 친부모가 가정위탁지원센터나 행정기관 중재 없이 위탁가정이나 위탁아동을 직접 찾아가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위탁아동과 위탁가정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런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복지부와 협의하여 제도개선 방안 수립 필요

○ 수용자 자녀와 같은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보호종료아동 등 자립지원 관련 》

○ 자립준비청년의 정신건강 문제 개선이 필요하며, 퇴소 전부터 심도 깊은 조사와 상담 즉 지속적인 정신건강 관리 필요

○ 아동발달지원계좌 만기 이후 장기 미인출 및 사후관리 미흡 문제 개선을 위해 사후관리 절차 강화와 지급 프로세스 간소화 등 제도 개편, 자동 지급체계 도입 및 소유권 인식 교육 강화 필요

《 아동학대 관련 》

○ 아동학대와 장애아동학대 사건 간 상호 공유 및 대응 보완을 위한 연계 체계 마련 필요

○ 다문화가정의 아동 학대는 언어 소통의 한계, 가치관 차이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학대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국어 버전의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 발간 필요

○ 최근 한국인 부부 입양 후 해외 거주, 교민 아동학대 신고 사건 관련 보장원 및 복지부 지속 관리감독 필요

○ 경찰청의 가정 내 아동 사망사건 통보지침 마련으로 인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보고되는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아동학대 중대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분석 필요성 및 적정 인력 규모와 인력 확충 계획 필요

○ 아동학대 사망통계의 누락에 따른 개선책 마련 필요

○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과 견해 질의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 전담 인력 지속적 확충 필요에 대한 견해 질의

○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가족기능의 회복과 부족한 가족기능의 지원 필요성 질의

○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 보호자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례관리 참여하지 않거나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되는데 사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협조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하고 있는지 질의

○ 중대한 아동학대 사망사건(부산 남구 16세 아동 사망사건 등)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의 필요성에 대한 기관의 견해

○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을 인권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도록 노력 필요

○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상담원 신설 및 상담원 직위 세분화되었다가 다시 재개정으로 인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근무 경력 관련 피해 사례 전수조사 필요

《 실종아동 관련 》

○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의 형제, 자매가 같은 시설에 보호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별도의 규정 및 실태조사 필요

○ 오기되거나 임의 작성된 기아 호적을 가진 사람들의 가족찾기에 보장원 적극 협력 필요

○ 해외사례 대비 국내 실종아동 홍보 정책의 한계를 개선하여 해외 실종 대응 사례 수준으로 계획 실행 필요

○ 실종아동 등에 대한 유전자 검사의 이원화(경찰청-보장원-국과수)로 인한 실종아동 유전자 검사 절차 소요기간 등 행정 비효율 문제 해결 필요

○ 2020년 실종아동에 대한 전산화 기록물을 분실했다가 되찾은 사건 관련 기록물을 되찾게 된 구체적 정황과 분실 데이터와 되찾은 데이터의 교차검증 완료여부 및 해당 데이터 활용목적 질의

《 기관운영 등 》

○ 자립준비청년 채용 확대 필요

○ 일·가정양립에 앞장서야 하는 복지부 산하기관들의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 활성화 필요

○ '20~'21년 입양기록물 및 아동(입소)카드 전산화 사업 부당지급 인건비 환수 필요

○ 기관장이 대외활동보다는 내실있는 기관을 만드는 데 주력할 필요

○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충분한 추가 인력 확충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 및 웹접근성 품질인증 계획 질의

○ 업무보고 시 성별·직급별 인력 현황과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 필요

○ 여성 고위직 및 관리자 임용 확대 위한 노력 필요

○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을 위한 자체 관리 규정을 재정비하고, 마일리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정원 대비 현원은 부족하고 상위직(1·2·3급) 비중이 너무 높으므로 조직 직제를 개편할 필요

24)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조건부 수급자 맞춤형 자립지원 》

○ 기준중위소득 상향에 따라 자활 조건부수급자(근로가능 조건부 수급자) 증가 상황에, 해당 수급자에게 맞춤형 자립 지원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자활사업 일반 》

○ 자립 성과 중심의 자활사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사업분석을 실시하고 성과향상을 위한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취약계층 자활기회 확대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층 참여자 수가 감소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맞춤형 자활프로그램 확대 방안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고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강화 위한 목표 및 세부계획을 보고할 필요

○ 자활대상자 특성별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재설정 필요

《 자활역량평가 운영 》

○ 시군구 자활역량평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 필요

○ 개발원에서 자활역량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질의

《 자활성공률 감소 및 성공률 기준 》

○ 자활성공률 감소 이유와 취·창업률만 자활성공률로 보는 것이 현 상황에서 맞는지에 대한 질의

《 탈수급 이후 지원, 참여율·중도해지, 자활급여 특례·유인책 》

○ 탈수급 이후 수급자 지원 중단에 대한 우려로 자활사업 참여율이 감소하고, 희망저축계좌의 경우, 참여가구는 감소하고 중도해지율은 증가하는 추세의 원인에 대한 질의

○ 자활급여 특례로 의료급여 중단을 최대 5년 유예하고 있는 제도와 같이,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하여 참여가구 확대방안이 필요

《 제3차 자활급여 기본계획·사회통합지표》

○ 제3차 자활급여 기본계획 추진에서 개발원의 역할 수행 및 '사회통합지표 마련'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사회통합지표 마련 필요 요구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

25) 한국보건의료정보원

《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

○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통한 국가 AI 연구 인프라 발전을 위해 GPU 등 데이터 분석 환경 및 데이터 질을 개선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

《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나의건강기록 앱) 》

○ ‘나의건강기록’ 앱과 관련해 고령의 부모, 발달장애인, 치매 환자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가족 열람 기능 확대와 앱 접근성 완화 노력 필요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나의건강기록앱’ 서비스 중단 개선 계획 및 재난상황 대비 안정적 운영체계 필요

○ ‘나의건강기록앱’ 저조한 설치율 관련 적극적 홍보 필요

○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이 이원화되어있는 상황으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의료데이터 서비스로 발전시키기 위한 추진 필요

《 EMR 인증 사업 》

○ 의료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절차 간소화,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한 표준(KR CDI, KR Core) 필수 적용 등 EMR 인증 개선방안 마련 필요

○ EMR인증 관련 사용인증 확대보다 제품인증 확대 필요

○ 일부 의료기관에서 실제 진료없이 EMR을 작성하거나 사후 수정하는 사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개선 필요

《 기관 운영 등 》

○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국민 보건의료데이터 사업의 핵심 기관이나, 법률상 설립 근거 부재로, 법적 설립 근거 마련 필요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요 데이터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기간제 근로자 비율이 높은 상황으로 정규직 전환, 무기계약직 확대, 처우 개선 등 인력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 수립 필요

○ 공적 항공 마일리지 사용 현황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

26) 중앙사회서비스원

○ 종합재가센터 운영현황 점검, 보고 체계 정비, 민간곤란 분야 유지 대책 마련 필요

○ 대체인력 현장 종사자에게 인센티브 등 보상책 마련과 임금 가이드라인 설정 등 처우개선 노력 필요

○ 사회서비스원의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수탁 재검토 필요

○ 중앙사회서비스원 육아기 단축 근로 사용 촉진 필요

○ 기관장 공석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필요

○ 서울·경북 사회서비스원 미설치 지역 설립 노력 필요

○ 종합재가센터 관련 표준운영지침 등 개정 필요

○ 통합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관련 질의

○ 공적 마일리지 관리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

○ 사회복지시설 평가 후 사후조치 체계의 개선 필요

○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고도화 및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 제정 필요

27)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성별 특성에 기반한 자살예방 연구와 정책 개발 관련 질의 및 추진 필요

○ 청년소외계층 온라인돌봄 시범사업에 대한 진행률, 사업 기간에 대한 질의와 고립·은둔 청년 특성을 반영한 홍보방안 모색 필요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의 연계율(서비스 동의율) 제고 및 사후관리 지속 관리 위한 보완 노력과 대책 필요

○ 자살상담전화 급증에 따른 대응을 위해 민·관 전화상담 협의체 구성, 자동연계시스템 구축, 연계율과 사후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

○ 자살예방 위한 상담 인력 확대 및 상담인력 대상 심리지원 등 정신건강 관리 필요

○ 공적 항공 마일리지 사용 현황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

○ 직급별·성별 임직원 현황 분류하고 장애인 고용현황까지 기재할 필요

28)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 기관별 업무보고시 직급별, 성별로 임직원 현황 분류, 장애인 고용현황 추가 필요

○ 의료기기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환자안전 관리 강화 필요

○ 공적마일리지 사용 현황 관리 필요에 대한 질의

○ 공공의료원의 공통적인 어려움에 대한 질의

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1)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 산하기관 조직 운영 관련 》

○ 식약처 산하기관의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

《 수범사례 제안 직원 표창 및 격려 관련 》

○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한 직원을 표창·격려하고, 앞으로도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

《 행정소송 및 행정처분 관련 》

○ 지방식약청별로 행정집행 과정에서 해석·판단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처분 기준 표준화 방안과 기관 차원의 관리·점검 체계 강화 계획을 마련하고, 행정처분 확정 전 사전조정 절차 마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

○ 소송 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 전용을 최소화하고, 패소율 급증 원인을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

《 식약관 파견 관련 》

○ 일본 식약관 파견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소비자위해예방국

《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관련 》

○ 해외직구 문신용 염료의 유해물질 차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문신용 염료 수입신고 실적이 저조하므로, 미신고 업체 실태조사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미세플라스틱 관련 》

○ 식품 용기·포장재에서 기인하는 5㎛ 이하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표준화된 시험법·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노출 최소화를 위해 노력 필요

《 담배유해성관리 관련 》

○ 유사니코틴 등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대비할 필요

○ 담배 유해성분 시험법과 성분 범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반영할 필요

식품안전정책국

《 표시·광고 관련 》

○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약사를 활용한 온라인 부당광고를 차단하고, 처분 실적을 관리할 필요

○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약사 활용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통계와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건강기능식품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기사형 광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언론사, 관계부처, 업계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일반식품이 명칭, 형태로 인해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되지 않도록 정제·캡슐 형태 제형 제한, 표시문구 의무화, 기능성표시식품 제도개선 등 근본적인 관리 대책 마련 필요

○ 의약품의 명칭과 유사한 제품명을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

○ 일반식품 제품명에 양약 처방명, 성분명과 유사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의약품 명칭, 모양 등을 흉내내어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일반식품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

○ 영업정지 기간 중 품절된 것처럼 홍보하는 편법 판매와 의약품 명칭이나 모양이 유사한 과장광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

○ 두뇌 기능 향상 보조식품처럼 인식되도록 과장하여 홍보하고 있는 서울대 기술지주 자회사인 밥스누(BOBSNU)의 수능시즌 일반식품 과장 광고를 제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우리나라는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경우 디카페인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미국, EU 등 국제 기준과 차이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아이스크림은 유통과정 중 부분 해동 및 재냉동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 필요

○ 설탕 제로 등 무당을 강조 표시한 당알코올(말티톨 등) 함유 제품이 혈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표시를 개선할 필요

○ GMO 완전표시제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산업계가 우려하는 원료 확보, 단계적 시행 방안을 잘 협의하여 철저한 준비 필요

○ GMO 완전표시제 도입에 대한 공청회 등 공식 절차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의견수렴과 신속한 조정을 추진할 필요

《 위생·안전관리 관련 》

○ 일반・휴게음식점으로 등록・운영 중인 메이드카페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성상품화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시정조치 필요

○ 기내식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적합 기내식이 어느 항공사에 납품되는지 대국민 알림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배달앱 이물 통보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배달앱 플랫폼의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배달플랫폼의 사전관리 의무와 식약처의 감독·관리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므로 협조 필요

○ 주류제조업체의 법 위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처분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수준이므로 위반업체에 대한 처분을 강화할 필요

○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 허용을 신속히 법제화하고, 영업자들이 위생과 안전기준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필요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변화에 맞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점검주기, 기관별 역할분담, 위반 시 제재방안 등을 명확히 해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관리체계부터 마련할 필요

《 푸드QR 도입 관련 》

○ 타임바코드나 푸드QR 도입시 식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제도 확대 과정에서 식품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문제 해결 과정을 거친 후 비용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등 기업이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

○ 푸드QR 표시 위치가 가이드라인에 맞게 표시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푸드QR 적용 확대 추진, 인센티브 도입 검토 및 소비자 대상 홍보방안을 마련할 필요

《 음식점 위생등급제 관련 》

○ 모범업소 제도 폐지에 따른 영업자 대상 위생등급제 전환 비용 지원과 변경된 제도 홍보를 추진하고 중기부의 백년가게 등 유사 음식점 인증제의 통합도 추진할 필요

○ 백화점 입점 업체의 농약 검출 우롱차 판매 건과 관련하여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식품안심구역 지정 시, 시설 내 위생등급 지정업소 대상으로 식품위생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배달플랫폼 입점 업체가 철저히 위생관리할 수 있도록 위생등급 표출 등 위생등급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기 타 》

○ 중소 수출업체에 대한 통관 부적합 예방 및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 전 품질검사, 기술지원, 국가별 맞춤형 정보제공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

○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식품진흥기금의 사업 범위에 영업자의 업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을 포함하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

○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및 용도 확대를 위해 생계형 자영업자의 영업장 운영을 위한 용도 지원근거 신설 계획을 보고할 필요

○ 식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후보자 모집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훼손 여부 등에 대해 식약처 차원에서 조사하여 시정조치하는 등 지도·감독할 필요

○ 식품위생교육 전문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법적·제도적으로 이의가 없도록 투명하게 시행할 필요

식품기준기획관

《 인공소초를 함유한 벌집꿀 판별법 마련 및 수입 점검 관련 》

○ 수입 벌집꿀 일부에서 파라핀이나 천연 벌집을 녹여 만든 인공소초가 검출되어 국내 양봉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나, 아직 구별법조차 없는 실정이므로, 천연벌집꿀과 천연벌집으로 만든 인공소초 함유 벌집꿀을 구별할 수 있는 시험법을 만들어 수입검사 시 활용 필요

《 유산균 함유 일반식품의 관리 관련 》

○ 건강기능식품은 유산균 수를 100억 CFU까지 허가하는 보장균수·허가 체계로 관리되고 있는 반면, 일반식품은 유산균 수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간 유산균 관리상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할 필요

《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성분 안전성 재평가 검토 필요 관련 》

○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이상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성 재평가를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

《 식품공전 분류체계 개편안 관련 》

○ 연구 중에 있는 장류 통합 등 식품공전 개편안을 전통 식문화의 가치를 고려하여 K-푸드 세계화 노력에 역행하지 않도록 전면 수정할 필요

○ 장류 통폐합 관련 식품공전 개편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 계획을 제출할 필요

《 특수의료용도식품 임상자료 제출 의무화 도입 관련 》

○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포장 및 광고가 질환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므로 소비자 신뢰 저하 방지를 위해 임상시험 결과 제출 등 추가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교육·홍보할 필요

《 과불화화합물 선제적 기준 마련 관련》

○ 식품 중 과불화화합물(PFAS) 기준 마련을 위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

수입식품안전정책국

《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

○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관련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객관성을 토대로 국민께 알릴 건 알리고 검증할 건 검증하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필요

《 수입식품 안전관리 》

○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를 확대하고 비협조 업체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

○ 건강기능식품 원료인 쏘팔메토(Saw palmetto) 열매추출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강화한 기준·규격을 수입검사 시 적용할 필요

○ 중국산 식재료 등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폐기 대상이 된 수입식품의 대부분이 회수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회수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필요

○ 미국산 참깨에서 글리포세이트(glyphosate)가 국내 기준 대비 19배 초과 검출되었다고 언론 보도됨에 따라 해당 농산물에 대한 글리포세이트 검사를 강화할 필요

○ 수입식품 무작위표본 검사 시 검사항목 누락 방지를 위한 검사관 교육 강화,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영업자에 대한 주기적 위생 평가 이행 및 디지털 혁신과제 실질적 구축 계획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

《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

○ 해외직구 식품 구매검사를 통해 의약품이나 마약성분이 검출된 제품 반입을 차단하고 있는데 의약 성분 전체를 두고 반입 여부를 결정하는 등 안전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해외직구 식품 검사에서 지속적으로 위해물질이 검출되고 있어 해외직구 식품 구매검사 강화와 자체적인 판매사이트 차단 권한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

○ LMO 감자와 관련하여 식약처의 입장과 안전성 검사 추진계획을 보고할 필요

식품소비안전국

《 급식 안전관리 관련 》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단 120곳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 간 편차가 큰바, 해당 사업의 확대를 위한 식약처의 계획과 추진방향, 재원조달 방안 등에 관한 의견 개진 필요

○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개선을 위해 면허수당 예산 반영 계획 및 고용 안정화 방안을 수립 필요

○ 스마트 급식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중단에 따른 어린이집 등 급식 현장의 위생·영양관리 공백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농산물 안전 관련 》

○ 국민적 우려가 있는 낙동강 인근 재배 농산물에 대한 녹조 독소 전수조사 필요성을 검토 필요

○ 농·축·수산물 새벽배송 확대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도 신속검사센터를 확대 설치 필요

《 건강기능식품 관련 》

○ 건강기능식품 및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제도의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 필요

○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관리 개선 계획을 마련할 필요

○ 인과성이 높은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할 필요

○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함유 건강기능식품의 이상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안전성 관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할 필요

《 영유아식 안전관리 관련 》

○ 영유아식에 대해 미생물·중금속 등 관리 기준과 회수·공개 절차의 실효성 확보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

의약품안전국

《 의약품 허가 관련 》

○ 임신중지 의약품에 대한 조속한 허가를 검토할 필요

○ 의약품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할 필요

○ 해외에서 허가된 희귀질환 치료제 등을 신속하게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신속허가 필요

《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

○ 식약처에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식약처 소관 물품에 대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이용을 촉진하는 법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고, 동물대체시험 국제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관련 》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조사를 확대하고 제도 인지도 제고 방안 마련과 홍보 다각화를 추진할 필요

《 면역증강제 관련 》

○ 의약품 재평가 시 최신의 과학 수준에 근거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한다면 면역증강제 관련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평가 결과에 근거해 의약품 재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문헌 재평가를 통해 신속하게 판단할 필요

○ 면역증강제 관련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평가 결과와 의약품 재평가의 연관 여부와 비스쿰알붐과 이뮤노시아닌이 현재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에 맞는지 재검토할 필요

《 의약품 안정공급 관련 》

○ 원료의약품 자급률 높이기 위한 국산화 지원 방안을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

○ 필수의약품의 공급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통합 대응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

○ 수급 불안정 의약품과 품절 의약품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심평원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활용할 필요

○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과 관련하여 복지부와 상의하여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의약품 선택권을 약국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약국·제약사가 시장을 좌우할 경우 환자에게 의약품 품질과 공급에 대한 불안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 의약품을 최저가로 공급하는 것보다는 환자 안전과 책임이 우선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분명 처방 관련 사항을 검토할 필요

○ 자가치료용 의약품의 부작용 발생 현황 정기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

○ 해외의존도가 높아 공급 불안정이 상시화되는 어린이·희귀 질환용 필수의약품의 공급중단 위험예방을 위해 공적 공급지원을 확대할 필요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예산·인력 운영체계를 강화할 필요

《 기 타 》

○ ‘OD 환각놀이’ 등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한미 의약품 관세 협상에 따른 수급 불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 장애인을 위한 점자 등 표시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시행일 지연 관련, 법률 시행일을 미루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

○ 아세트아미노펜 사례와 같이 장애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 제약사 리베이트 적발 시, 실효성이 떨어지는 판매업무정지 처분 대신 실절적인 행정처분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할 필요

○ 품목허가 이전에 제조한 제품을 허가받은 내용과 동일한 공정으로 생산하여 허가사항에 적합한 경우 허가 후 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

○ 의약품 GMP 적합판정 취소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문신사법 시행 이전, 불법 마취크림 유통을 단속하고 관리할 필요

○ ‘ICH S9 가이드라인(항암제 비임상 평가)’의 특정 조항(내부 연구/학회지 자료 활용 관련)과 관련하여 국제기준과 조화시켜 운영할 필요

○ 오래된 의약품 중심으로 금기정보를 재검토하고 허가사항과 DUR 시스템이 일관되도록 재점검할 필요

○ 제약사에 레티노이드 제제의 위해성 관리 보고를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복지부와 협의하여 처방 단계에서부터 관리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의 경우 국민의 안전을 위해 품목허가로 관리하고, 부득이 조제실제제로 제조하는 경우가 있다면 엄격한 심사 및 실질적인 검토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필요

마약안전기획관

《 마약류 관리 제도 개선 관련 》

○ 온라인 마약 광고를 식약처가 직접 차단하는「마약류관리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필요

○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유흥업소, 텔레그램 등에서 전자담배 형태로 마약류가 불법 유통되고 있으므로, 검사·수거 등을 통해 감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임시마약류 예고기간 단축 등을 통해 지정 절차를 개선하여 빠르게 등장하는 신종 마약의 2차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필요

○ 대마 성분 필수의약품의 공급 안정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마약류대책협의회에 법원행정처를 참여시켜 약물법원 도입 필요성을 관계 부처와 논의할 필요

○ 마약류 범죄 등 대응을 위해 관계 부처 간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전담기구 신설 등 대책 마련을 검토할 필요

○ 마약류 중독예방 상담약국(마중약국)과 식약처 정책 연계 등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

《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관련 》

○ 6세 미만에 대한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규제·안전 대책이 필요하며, 통계 분석 목적과 대상 등을 고려하여 연령 추출 기준을 마련할 필요

○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로 개선하기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

○ CRPS 등 희귀질환자를 위한 적절한 처방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처방 제한을 완화하더라도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 마약류 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처방기준 정비와 모니터링 강화 등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처방 기준 및 사후 모니터링 강화, 의료기관 지도·점검 확대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의료용 마약류 사고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유통·조제 환경 조성을 위한 해결 방안을 마련 후 제출할 필요

○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와 의료쇼핑 방지 대상 성분 확대 등 오남용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대책을 보고할 필요

○ 의료기관 처방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할 필요

○ 한국형 테이크 백 데이, 퇴원 환자 연계 모델, 인근 수거 약국 정보 제공 방안 등 방치된 마약류 수거·폐기사업의 구체적 계획 수립 후 보고할 필요

○ 일부 지자체의 마약류 보관 부실 사례와 관련하여, 몰수마약류 보관 등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

○ 의료용 마약류 수요량 예측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GPU 확보와 시스템 운영비 등 인프라 구축 필요

《 마약류 예방교육 및 사회재활 관련 》

○ 마약류 예방교육 대상자의 적극적인 발굴과 더불어 실질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량 지표를 개발할 필요

○ 마약중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부처의 기능과 역할을 정비할 필요

○ 검찰청 폐지 등의 변화에도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지속가능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마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시 수사정보 연계와 관계부처 공동 사회재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

○ 마약류 사범 중 조건부 기소유예 재활교육 이수자 현황과 후속 사례관리 현황에 대해 보고할 필요

○ 긴급상황에 대한 1342 상담센터 시스템을 보완하고 전화 외에 채팅 상담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

○ 마약류 중독자와 가족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회복 경험이 있는 당사자를 ‘회복지원가’로 양성·활용하기 위한 계획 마련을 검토할 필요

바이오생약국

《 바이오의약품 관련 》

○ 국내 제약사가 해외기업을 인수하여 생산한 해외 제품을 국내 제조 품목으로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바이오의약품 CDMO법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

○ ‘바이오시밀러 허가혁신 방안’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

○ ‘바이오시밀러 허가혁신 방안’의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할 필요

○ mRNA 백신 품질시험 및 바이오의약품 원료(세포) 안전성 분석 업무 관련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미용목적 사용 인체조직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레켐비 시판 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위험 의약품 허가 시 전문가 자문을 거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비만치료제 불법유통 및 불법판매·알선광고에 대한 단속·감시를 강화하고, 사용상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 정보를 의료기관 등에 안내할 필요

○ 위고비 광고 의료기관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위고비 ‘나눠맞기’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조제 한약·약침 관련 》

○ 조제한약·약침 부작용의 경우 피해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조제한약·약침의 안전성·유효성을 국가가 책임질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

《 화장품 관련 》

○ 글로벌 기준에 맞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에 힘쓸 필요

○ 식약처가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 위조화장품 대응 기준과 관세청, 지식재산처와의 상시 공조 체계를 마련할 필요

○ 화장품 부당광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책임판매업자 중심의 온라인 단속 체계를 마련할 필요

○ 허브오일 제품의 향료 성분표시 관리 강화와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비강흡입형 허브오일 제품에 대한 관리 기준 마련을 검토할 필요

○ 중소기업이 화장품 수출 시 ‘비관세장벽’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

○ K-뷰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화장품 GMP 의무화 도입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

《 의약외품 관련 》

○ 의약품·의약외품 간 오인혼동 방지를 위한 유사 제품명 관련 기준 및 국민인식 제고 대책을 마련하고 표시광고 관리를 강화할 필요

의료기기안전국

《 필수의료기기 안정 공급 관련 》

○ 필수의료기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

○ 의료기기 공급중단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기기 국산화율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정책을 추진할 필요

○ 선진입 의료기술 사용이 환자에게 위해가 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고시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므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필요

《 기 타 》

○ 의료기기 이상사례 인과관계 조사의 적극적인 운영과 책임보험·공제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의료기기 간접납품사 폐해 개선을 위해 UDI 추적관리시스템 개선을 검토할 필요

○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기기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홍보, 인센티브 확대 등 의료기기 정보 제공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식약처에서 개인용 마약검사키트를 관리하게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관련하여 마약 검사 공백을 해소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으로 혼동되는 무허가 의료기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정부·기관·지자체 등에게 위반 사례 중심으로 더 알기 쉬운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협조 요청할 필요

○ 공급내역 보고대상에서 제외된 로봇수술기의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관련 제도로 인한 중소업체의 행정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할 필요

○ 디지털치료기기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사용자 접근성 평가, 보안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

○ 과기정통부가 발주한 특정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하여 식약처가 규제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과기정통부의 진상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

감사담당관

《 공직기강 확립 관련 》

○ 내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공직기강 해이 및 부적절한 복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징계 이후 사후관리 및 비위 재발방지 대책을 강화할 필요

《 감사 후속조치 관련 》

○ 위해 의료기기 회수 및 의료기기 품질관리(GMP) 사후관리 부실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철저한 성과관리와 행정 목표 설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산하기관 물품 구매 및 관리 부실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법정 의무교육 미이수 수입식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방치 및 민원 처리기한 미준수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갑질행정 관련 》

○ 식약처의 스마트 HACCP 제도 도입과 관련한 갑질행정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

규제과학정책추진단

○ 한국규제과학센터 예산 및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

위해사범중앙조사단

○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여비, 유류비 등 필수경비 확보에 노력할 필요

사이버조사팀

○ 온라인 불법 유통 마약류와 의약품, 의료기기 광고 판매 근절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온라인 허위 과장 광고를 막기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 및 제재조치를 실시할 필요

○ 온라인 식의약 부당광고 및 불법유통 적발과 차단을 일원화하고 식약처와 온라인 플랫폼 간 소통창구를 마련할 필요

○ AI캅스를 활용해 텔레그램 마약거래 단속 등 방안을 검토할 필요

○ 홈쇼핑을 통한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의 과장광고 관리 필요

○ 전문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차단체계를 점검하고 연구하여 보완할 필요

○ 의약품 모방 식품 광고에 대해 점검하여 조치하고, 게릴라형 광고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

운영지원과

○ 공무직 채용 절차상 불공정성, 서류 관리 부실과 관련하여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2) 식품안전정보원

○ 식품안전정보원 편법 승진 의혹과 관련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

3)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건비 등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식약처 감사 결과 채용 및 인건비 책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피해자 구제와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을 신규 임용으로 보아 임기를 3년으로 하는 것은 정관과 종전 관행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해명할 필요

라. 질병관리청 소관

1) 질병관리청

《 감염병 대응 및 넥스트 팬데믹 대비》

○ 최근 서울 지역에서 쥐(설치류) 출몰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설치류 개체 수 증가 및 관련 감염병 발생·예방관리 필요

○ '23년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 수립 이후 현재 확보된 감염병 병상은 1,210병상으로 목표 대비 34% 수준에 불과해 충분한 병상 확충 필요

○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의 최근 유행 바이러스에 대한 효능 관련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제1급 신규 지정된 니파바이러스 대비 철저히 할 필요

○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이 늘어 3년 만에 45% 급증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확립과 관리 감독이 시급하며 산후조리원 내 RSV 집단감염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필요

○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객관적 검증 및 공중보건분야 역량 측정을 통해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고자 지난 8월에 WHO 합동외부평가를 실시하여 국제보건규칙 이행을 위한 보건안보 전략 수립,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제도화 등 보강이 필요한 역량으로 평가된바 제2차 합동외부평가(JEE)의 의의와 이를 통해 제시된 핵심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 마련 필요

○ 차기 팬데믹 위협에 대비한 백신 개발 및 비축계획 등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 대책 마련 필요

○ 펜데믹에 대한 국제 연대와 국내 위기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감염병위기대응기금 설치 필요

○ 공중보건의사 축소에 따른 현장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 확보 대책 등 마련 필요

《 검역 및 해외유입 감염병 관리》

○ 항공기 내 위생을 위해 대상 노선 및 검사 구역 확대 필요

○ 선박위생증명서 발급 시 현행 관능검사 외 검사 방식 검토 필요

○ 선박 승선 위험성을 고려, 승선 검역에 대한 개선 방안 검토 필요

○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전면 시행되면서 외국인 감염병 유입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여행자 중심 감염병 정보제공,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디지털 기반 검역체계 전환, 오하수 감시 사업 등을 통해 해외 감염병 유입의 사전예방 및 조기 차단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검역 체계를 강화할 필요

○ 외국인 결핵, 매독, 에이즈 등 환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국, 태국 등 국가별 위험도 평가 및 모니터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필요

○ 외국인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별·질병별 맞춤형 캠페인 및 교육 홍보 전략을 추진하고 수도권 청년층 중심의 고위험군 관리 대책 마련 필요

○ 최근 5년간 외국인 감염병 발생 현황(A·B형 간염, 결핵, 홍역 등)을 국가별·체류 형태별로 분석하고 중국인 감염자 증가 원인과 향후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필요

○ 외국인 단체관광 무비자 입국 확대 이후와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공항만 오하수 감시 사업 등 선제적으로 검역체계 강화 필요

○ 외국인 체류자 중 고위험 감염병(간염·결핵 등) 고위험군 관리 강화를 위해 정기 건강검진 또는 자율 신고제 도입 검토 및 법령 개정 등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외국인 밀집 숙소, 음식점, 산업단지 등에서 A형·B형 간염 예방 접종률 제고와 위생 점검 강화 필요

○ 최근 홍역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및 단체 관광객 대상 입국 전 홍역 예방접종 확인제 또는 국내 예방접종 무료 지원제 검토와 그 추진 방향 확인 필요

○ 최근 5년간 외국인 감염병 발생 현황(결핵, 매독, HIV 등)을 국가별·지역별로 분석하고 역학적 평가 결과 확인 필요

○ 외국인 관광객과 단기 체류자 급증에 대비해 입국 시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공항만 오하수 감시 사업 등 선제적 검역체계 강화와 검역 현장의 인력, 예산, 시스템 보완계획 마련 필요

○ 외국인 체류자 중 감염병 고위험군(결핵, HIV, 매독 등)에 대한 정기검진 및 치료 연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와 국적별 맞춤형 예방 사업 강화 계획 점검 필요

○ 외국인 입국 후 감염병 추적 관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감염병(결핵, HIV, 매독 등) 환자 관리 과정에서 법무부, 복지부, 관세청 등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관리협력체계 구축 필요

○ 매독·HIV 등 성매개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적별 위험도를 고려한 예방 캠페인, 다국어 교육자료, 진료 접근성 개선 대책, 해외 유입 위험 국가에 대한 선별적 관리 계획 마련 필요

○ 외국인 HIV 감염자의 치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 복지부, 법무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진료 연계 관리 및 다국어 상담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체류 자격 변경·귀국 시 치료 단절 방지 방안 마련 필요

○ 국민들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검역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면 시스템 통합이 아닌 연계 방안 마련 필요

○ AI 검역관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검역업무와 관련한 향후 시스템 운영 방안 마련 필요

○ 해외 유입 매개 감염병(치쿤구니야열 등)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한 항만·공항 검역 감시 강화 및 지역 방역 인프라 확충 계획 마련 필요

《 국가예방접종(NIP) 및 백신정책 》

○ 백신은 감염병 외 영역에서도 활용되는 만큼 감염병예방법에 담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과학적·체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예방접종 별도 법률 제정 필요

○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대상 국가예방접종 지원 필요

○ 조달청 처분에만 맡기지 말고 과징금 비율 인상 등 백신 담합업체에 대한 추가적 제한 조치 필요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수준이 지역마다 상이하여 건강 불평등이 우려되므로 국가예방접종에 대상포진 포함 필요

○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미지급금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 고령층에게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현행 국가예방접종용 인플루엔자 백신 대신 고면역원성 백신 지원 필요

○ 대상포진을 국가예방접종(NIP) 대상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면역에 취약한 고령층부터 단계적 실시 추진 필요

○ 고령층 등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백신 추가 예산 및 물량 확보 필요

○ 신경 근육계 환자 등 고위험 희귀질환자에 대해 코로나19 및 호흡기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계획 마련 필요

○ 고령자에게 맞게 개량된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도입 검토 필요

○ 고령층 대상 신규 폐렴구균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도입 필요

○ HPV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와 남성 접종 확대를 통한 집단 면역 추진을 위해 남성 청소년 확대 접종 및 고품질 백신 도입 필요

○ 폐렴이 국내 사망원인 순위가 2002년 14위에서 2022년 3위로 급상승하고 60대 이상 폐렴 환자 진료비가 10년 만에 약 156% 증가하는 등 고령층 폐렴구균 백신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시급한바 65세 이상 고령층 대상 폐렴구균 백신 도입 필요

○ 연구 결과와 접종 현실에 부합하도록 HPV 예방접종사업 우선순위 재검토 및 HPV 국가예방접종사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개선책 마련 필요

○ 여성암 예방을 위해 HPV 백신 접종 확대를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 마련 필요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서 중증 여성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장애 여성의 낮은 자궁경부암 검진 수검률을 고려하여 예방접종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HPV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18~26세 저소득층 여성에서 중증 여성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고령층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감시 강화 및 국가예방접종 도입 검토를 위한 연구 진행 필요

○ 2026년 정부안에 12세 남성 청소년이 포함되었는데 점진적으로 HPV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9가 백신으로의 전환 필요

○ 미래 인구 구조 변화가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할 때 노인 예방접종 사업 확대 우선적 추진 필요

○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영유아 대상 RSV 예방 항체 접종의 NIP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적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바 RSV 예방 항체의 NIP 도입 적극적 검토 필요

○ 국가예방접종 백신 비축률이 MMR 39.2%, PPSV 37.1%, Tdap 27.8%로 목표량 대비 절반에도 미치치 못하고 있는바 국가예방접종 백신 비축률 제고를 위한 예산 확충 필요

○ ’23년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1~6위에 해당하는 백신 중 남성 청소년 HPV, 성인 Tdap, 대상포진 백신 등은 여전히 미도입 상태이고, 특히 HPV 남성 청소년 접종사업은 ’26년 정부안에 포함되었으나, 실제 사업 시행까지 3년의 시차가 발생, 국가예방접종 신규 백신 도입의 단계별 일정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

○ 올해 백신 구매 물량이 접종 수요와 근접한 상황에서 국민이 차질 없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방접종 운영 대책 마련 필요

○ 치료제 대비 백신이 비용·효율 면에서 우수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염병 관리를 치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으로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사업 추진 필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에 따라 충분한 보상 추진 및 위원회 구성 시 피해자단체 요구 수용 필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보상의 범위를 가능한 한 확대하여 폭넓게 보상할 필요

《 생물안보 및 생물테러 대비 》

○ 유효기간이 경과된 두창백신의 신속한 교체 필요

○ APEC 대비 생물테러 대응 매뉴얼과 유관기관 공조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물테러 위기 상황 등에 대비하여 충분한 물량의 탄저 백신 비축 필요

○ 비축 중인 두창백신 중 유효기간 초과 물량이 상당량 포함되어 대응의 신뢰성이 저하된 상황으로 유효기간 경과 백신의 보관·관리 기준 재검토 필요

○ 백신 사업은 막대한 시설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으로서 향후 생물테러 발생 등 유사시 신속한 백신 공급을 위하여 생산시설 운영·유지는

필수적이므로, 향후 다양한 공중 보건 위협으로부터 철저한 방어력을 갖추기 위해서 충분하고 조속한 탄저백신 비축 필요

○ 탄저백신 비축 물량을 축소한 결정 배경과 2017년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수립한 100만 명분 단계적 비축계획 대비 추진 현황 확인과 비축계획 점검 필요

○ 국산 탄저백신의 생산·품질관리·유통 체계가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의 유지·관리 계획과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25년 본예산 기준 생물테러 개인보호구 구매 예산 4억 4,300만원 중 16%만 집행되는 등 예산 집행 지연이 발생함. 감염병 대응의 핵심 인프라인 개인보호구 및 방역 장비의 예산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기후변화 및 환경보건 대응 》

○ 기후 위기에 따른 감염병 예방의 구체적 방안 마련 필요

○ 재난이 된 폭염, 장애 유형별 특성을 담은 폭염 대비 매뉴얼 지속적 발간 필요

○ 온열질환 응급실 모니터링은 현재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의 자발적 협조로 운영되고 있는데 응급실의 참여도와 감시정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온열질환 고령자 사망률 감소를 위해 데이터 기반 현장 중심형 기후보건정책으로 전환 필요

○ 기후변화가 취약계층 등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보건법과 같은 독립적인 법률 제정에 대한 검토 필요

《 항생제 내성 및 의료 감염 관리 》

○ 국내 항생제 사용량이 OECD 국가 2위로 굉장히 높은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항생제 사용량 증가가 지적되는 가운데 요양병원을 포함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및 내성균 정보를 동시에 확인할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희귀질환 관리 및 환자 지원 》

○ 만성 혈전색전성 폐고혈압(CTEPH)의 희귀질환 지정 관련 검토 필요

○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의 소득·재산 기준 단계적 폐지 필요

○ 희귀질환 전문기관의 환자지원 프로그램 적극 활성화 필요

○ 극희귀질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희귀·극희귀질환 환자 상담 및 지원센터 설립'과 '환자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 개선 필요

○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등 희귀질환의 조기진단·등록률 제고 및 치료를 위한 희귀질환 전문기관 확충 필요

○ 영유아 희귀질환 중 조기 치료가 가능한 질환(척수성 근위축증 등)에 대해 조기 진단을 위한 지원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보건 통계 및 연구 기반 확충 》

○ 보건·건강·질병 통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주체로 국가통계센터 설치 필요

○ 감염병 발생 및 예방접종 장애인 분리 통계 생산 체계 마련 필요

○ 장애인 건강연구 부재로 인해 발생한 정책 공백 해소와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건강에 관한 연구 추진 필요

○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고려한 성차 연구 활성화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가 차원의 제도화 필요

○ 신생아 대상 유전자검사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국가주도의 표준화된 검사체계 구축 필요

○ 전장유전체염기서열 기반 신생아 선별검사 시범연구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추진계획 마련 필요

《 방제정책 개선 및 친환경 전환 》

○ 40여년 가까이 화학제 중심 방제 방식이 유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정책적·행정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현행 성과지표가 GIS 활용률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생물·물리 방제 비중 등 방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할 필요

○ 방제 지침 성분 기준 변경 등 향후 지침 개정 시 전문가 자문, 기록 의무화 등 개선 필요

○ 발암 논란 성분이 포함된 화학제 사용과 관련하여 EPA 등 국제기구에서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방제 계획 마련 필요

○ 한국형 원헬스 공동실행계획에 '친환경 방제 트랙'의 구체적인 추진 현황을 제시하고 환경부와 협력하여 환경 위해 요인 관리 필요

○ 현재의 방제 관리 체계는 '단기 효과 중심의 화학 살포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 친환경·근거 기반 방제 정책 방향 마련 필요

《 기 타 》

○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이 다년간 지연되고 있는바 신속한 사업 추진 필요

○ 소득과 비만의 상관관계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통해 맞춤형 정책 마련 필요

○ 당뇨병 관련 통계 및 연구에서 소아청소년 시기에 당뇨병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소아당뇨병 실태 분석과 조기 진단 고도화를 위한 질병청의 계획 및 목표 제시 필요

○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낮은 생존율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강화 필요

○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CT 등 장비비 예산 확보 필요

○ 감염병 전문병원 의무병원 대기 병상 확보로 인한 수익성 보장 등 지원 체계 마련 필요

○ 불확실한 정보(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자폐증 연관성 발언 등)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 및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한의학 관련 수만 가지 처방을 '한약'으로만 통칭하고 간독성과 간 손상을 일으킨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올바른 정보로 수정 필요

○ 일반인이 급성심장정지 환자를 발견 및 목격할 경우 골든타임인 4분 이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현 응급처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홍보 강화 필요

○ HIV 치료는 지속적 약물 복용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치료 이탈 시 개인 건강 악화뿐 아니라 전파 위험 증가로 공중 보건상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므로, 최근의 HIV 치료 이탈률 증가 원인을 점검하고 이탈 환자 관리 및 관계기관간 개입을 위한 체계 구축 필요

○ 20~30대 HIV 고험군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조기익명검사 및 자가검사키트 보급 사업의 전국 단위 확대 및 치료 이탈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 및 동료 지원 프로그램 등의 전국 확대 필요

○ HIV 감염 예방 홍보 및 HIV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 완화를 위해 SNS 및 온라인 기반의 신규 캠페인과 언론·교육기관·시민단체와 협력한 공공 인식 개선 캠페인 실시 확대 필요

○ HIV 감염인 및 에이즈 환자 중 치료를 받지 않은 국민을 발견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국립마산병원 인근 국유지 중 민간 사용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불하 방안 검토 필요

○ 하수기반 감시 대상 하수처리장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전국적 대표성을 확보하기엔 부족한바 향후 감시 지점 추가 확대 필요

○ 하수기반 감시 자료를 감염병 대응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면밀한 검토 필요

○ 감시 지점 확대와 감시 병원체 확대 계획에 필요한 예산·인력 확보 및 민간 학계와의 협력 계획 마련 필요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하수 감시 병원체 지정 필요

○ 인수공통감염 병원체와 관련해 ‘바이러스 검출 내역 및 질병정보’를 관련 부처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수감시 정보 공유 시스템 마련 필요

2) 대한결핵협회

《 결핵 관리(예방, 진단, 치료 등) 》

○ 외국인 결핵환자가 수도권(63%)에 집중되고 이동이 활발한 젊은 층 비중(44%)이 높은 만큼 외국인 환자 관리 강화 대책 마련 필요

○ 2025년 외국인 결핵검진 목표 1만건 미달성 원인 파악과 충실한 사업 수행 계획 수립 필요

○ 외국인 결핵 관리를 위한 MOU 상시화, 협약 추진 현황, 향후 KPI 및 외국인 밀집 구역 배치 비율과 월별 가동률/차량당 생산성, 불출석·재검률 자료 제출 필요

○ 외국인 근로자 대상 입국 전 결핵검진 이중판독 사업의 유소견자 입국 차단율과 본국 치료 연계·재입국 승인율 관리 현황 및 실제 차단·치료 연계 건수 및 송출국별 편차 자료 제출 필요

○ 외국인 근로자 대상 입국 전 결핵검진 이중판독 사업의 현지 검진기관 판독 품질관리체계(위양성·위음성률 검증) 운영 현황 및 국립마산병원과 복십자의원 간 판독 불일치율, 재판독 소요시간(TAT) 통계 자료 제출 필요

○ 외국인 근로자 대상 입국 전 결핵검진 이중판독 사업의 2025년 목표 7만 건 달성을 위해 국가별 검진기관 확대, 인력 보강 계획 자료 제출 및 질병관리청과의 연계로 외국인 입국 전 결핵검진을 법정 의무화나 사전 등록제로 제도화 추진 필요

○ 결핵상담 통합콜센터의 2025년 목표 달성을 위한 인력 확충 및 야간·다국어(중국어·영어·베트남어 등) 대응 계획과 상담 후 검진·치료 연계율 자료 제출 필요

○ 노숙인 결핵관리시설 미소꿈터의 24시간 관리체계 유지를 위한 2026년 최소 운영예산 확보 필요

○ 돌봄시설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검진과 관련하여 무료검진 지원사업의 재개 또는 유사한 형태의 검진 지원 방안 계획 마련 필요

○ 정부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돌봄시설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검진 사업 중단이 현장의 결핵 관리에 미친 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돌봄시설 내 결핵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과 향후 관리 강화 계획 마련 필요

○ 결핵은 조기 치료로 사회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질환인 만큼 돌봄시설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 사업의 조속한 재개 필요

《 크리스마스 씰 모금 및 홍보 》

○ 학생 모금 사전 신청제 및 자율 참여 원칙을 안내한 것과 관련하여 교육부·시도교육청 가이드라인 준수, 교실 내 판매·강요 금지 준수 점검 결과와 디지털·비대면 모금 전환 계획 제출 필요

○ 크리스마스 씰 모금 목표 미달성에 따라 크리스마스 씰로 수행하는 결핵 사업의 차질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 방안 마련 필요

7.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가. 보건복지부 소관

1) 보건복지부

(1) 기획조정실·인사과·감사관

○ 국회 업무보고 현황에 직급별·성별현황 및 장애인 고용 현황을 기재할 수 있도록 산하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원장이 국정감사 앞둔 돌연 사퇴, 기관장에 의한 괴롭힘(갑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지방재정을 고려한 국고지원율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보건복지부 직원 대상 정신건강관리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정원 확보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보건복지부의 업무량에 적합한 수준으로 조직을 보강하고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고위·관리직군 중 여성 비율이 향상되도록 노력할 것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피해 현황 파악 및 신속한 복구가 필요하며, 정부의 책임 인정과 국민 피해 확인 시 보상을 검토할 것

○ 민간의료기관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해외사무소의 법적지위 확보를 통한 보건의료 ODA의 제도적 기반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대미 의약품 관세 협상 관련 부처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할 것

○ 최근 부내 각종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내부비위 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립부곡병원의 임상연구비 집행에 있어서의 부적절성에 대한 확인 및 임상연구 운영을 개선할 것

○ 현 정부 사회부총리제 폐지에 따른 사회부처 간 협업 대책을 마련할 것

○ 사회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서비스 관련 기관에 대한 업무 및 역량 진단을 시행하여 인력·예산 부족 정도에 대한 근거 자료를 마련할 것

(2) 복지정책관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 신청주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향후 청년, 미래세대가 짊어질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정책 전략을 마련할 것

○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설립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중증장애인의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참여를 위한 실태파악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기준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의 격차 해소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하여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것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등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기준 중위소득의 정확한 산정방식을 마련하고, 그 산정원칙 및 조정 수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위촉 시 다양한 단체 및 인사 포함 방안을 마련할 것

○ 자활사업 참여자 수를 확대하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를 개선할 것

○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창업률 제고 등 실효성 있는 자활사업을 운영할 것

○ 청소년 노숙인 실태 파악 및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 여성 노숙인 임시시보호시설 내 정신건강 전문요원 배치 기준을 마련할 것

○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할 것

○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 재검토할 것

(3) 복지행정지원관

○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지자체 인력의 효율적 운영 등 대안을 마련할 것

○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여 지자체의 고독사 위험자 발굴을 지원할 것

○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통계 수집항목으로 장애여부, 질환유무, 소득수준 등 복합 위험요인 반영할 것

○ 지자체에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고독사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표준 매뉴얼 마련할 것

○ 중장년을 포함하여 전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에 대한 실효성 검토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체계를 마련할 것

○ 성평등가족부에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접근을 보장할 것

○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정 기준으로 복합 소득기준 산정 모델 도입 검토할 것

○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정 기준으로, 소득 발생시기와 반영 시기의 시차가 있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사용한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영구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인력기준에 정신건강전문요원 별도 인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검토할 것

○ 사회복지관에 시설안전관리자 의무 배치할 것

○ 사회복지관 관장 자격 기준 상향할 것

(4) 연금정책관

○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의 복무를 철저히 관리할 것

○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목표 투자 비중을 검토할 것

○ 국민연금 크레딧 인정 시점을 앞당기고 청년세대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할 것

○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할 것

○ 자동조정장치, 국고 투입 등 국민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의 대부금 상환 시 상속 등에 따른 연체관리 효율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요건을 재검토할 것

○ 평균 기대여명을 고려하여 중증장애인의 노령연금 조기 수급을 검토할 것

○ 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공석 상태를 해소할 것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및 수도권 중심의 연금보험료 징수 불균형 완화계획을 마련할 것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및 불안정 고용계층을 위한 정책을 검토할 것

○ 여성 및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

○ 국민연금 외국인 반환일시금 수급관리를 강화할 것

○ 국민연금기금의 홈플러스 투자 손실을 점검할 것

○ 국민연금 책임투자 공시 내실화할 것

○ 노동권 침해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기금의 투자현황을 점검할 것

○ 국민연금기금의 석탄기업 투자제한 기준 조정을 검토할 것

○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국민연금 주주활동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

○ 기초연금 부정수급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기초연금 재산공제액 상향을 검토할 것

○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 대상 기초연금 지급방안을 검토할 것

○ 국민연금운용에 정치권 개입하지 않도록 기금운용 독립성의 원칙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연기금 기금운용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국민연금 기금의 70년 유지를 위한 정부안을 마련할 것

(5)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 복지사업의 유사중복 문제 해소 및 급여의 효율적 전달을 위해 사업을 통합 조정하여 단순화할 것

○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신규·변경만 조정이 가능하고 기존사업은 통폐합이 안 되어 법안 발의 시 적극 검토할 것

(6) 인구아동정책관

《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

○ 저출생 국민인식개선 사업 취지에 맞도록 단체를 선정하고, 포교활동에 정부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인구정책평가센터」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고령층 건강관리 및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를 위한 인구정책을 마련할 것

《 위기아동청년 》

○ 13세미만 가족돌봄아동 지원 위해 병원·학교를 대상으로 적극적 발굴과 홍보 강화할 것

《 자립준비청년 》

○ 아동복지시설에서 장애인 거주시설로 보호시설이 변경된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대책 마련할 것

○ 자립준비청년 경제·금융교육 및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할 것

○ 자립준비청년과 가정밖 청소년 간 자립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와 협의하여 지원 체계 일원화를 검토할 것

○ 보건복지부 자립수당과 성평등가족부 자립지원수당의 시스템 연계할 것

《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관련 》

○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대상 밖인 병원 밖 출산 시 지자체 담당자 등의 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한 출생신고 불편을 해소할 것

○ 병원 밖 출산의 경우 출생등록 간소화 및 지자체 직권등록 절차를 마련할 것

《 모자보건사업 관련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 인공수정 지원 횟수 및 사실혼 지원 확대를 검토할 것

○ 인구감소지역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있는 예산 지원할 것

○ 산후조리원 내 RSV 등 감염병 관리감독 체계 강화할 것

○ ‘크론병가족사랑회’ 등에서 건의하고 있는 크론병 환아의 특수조제분유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

○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해 노력할 것

○ 결혼 여부 불문 출산을 희망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 남성 난임 지원 등 포용력 있는 임신·출산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 인공임신중절 관련 》

○ 모자보건법 제14조 우생학적, 유전학적 사유로 장애인에 대한 인공임신중절 예외적 허용 조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19.4월) 이후 법적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속한 법 개정과 제도 정비 추진할 것

○ 여성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결정을 안전하게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과 안전한 임신중지 환경 마련 및 법·제도 개선 논의에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

○ 위기임산부에게 충분한 지원을 위해 인력, 예산 확대 필요성을 검토할 것

○ 경기남부 지역상담기관 운영 종료 관련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할 것

○ 숙려기간 연장 및 베이비박스 폐지 검토할 것

○ 지역상담기관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처우개선 필요성 검토할 것

《 아동수당 》

○ 아동수당 서울시 국고보조율을 타 지자체 비율과 동일하게 조정되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할 것

《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호 관련〉

○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생존, 건강, 보호 등을 위한 개선 방안 검토 및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할 것

《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 》

○ 입양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전문성 강화, 아동분야 전문공무원 제도 도입, 입양정보공개청구 전담인력 증원, 입양기록관 예산 편성 등에 노력할 것

○ 입양과정에서 친부모·예비양부모 개인정보 상호노출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입양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입양인 당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 장애입양인의 입양기록물 열람 접근성 보장을 위한 계획을 마련할 것

○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감사 후속 조치가 미비사항이 없는지, 관련 예산은 적정한지 점검할 것

○ 입양정보공개신청 접수 지연 등 해외입양정보공개 사이트 문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진실화해위원회의 해외입양 인권침해 조사결과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계획을 마련할 것

○ 해외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 관련, 정보공개사유, 횟수 제한 관련 개선 및 해외입양인 2세의 정보공개청구권 인정 등 제도 개선을 모색할 것

《 아동권리보장원 》

○ 공적 입양체계개편, 아동보호·지원정책 강화 등 아동권리보장원의 안정된 역할 확장을 위해 직원처우 개선 및 인력 증원 필요성을 검토할 것

《 아동복지시설 관련 》

○ 부산 덕성원 인권침해사건 관련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하여 책임있는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

○ 특수욕구 아동 증가 등 현실에 맞도록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을 개선할 것

○ 치료서비스까지 요구되는 아동보호치료시설 내 계약의사 부족 문제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적정히 조치할 것

○ 보호대상아동 관련 사업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것

《 마을돌봄 관련 》

○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전국 지자체에서 호봉제 적용, 인력 추가 배치 등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다함께돌봄센터 직영 전환 확대방안 및 운영 개선 방안 마련할 것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적용 시 지자체별 임금 격차가 크지 않도록 조정 기능 등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가정위탁 관련 》

○ 위탁부모에게 법정대리권을 부여하여 수술, 입·전학 등 일상 양육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

○ 위탁가구가 다자녀 혜택이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지원 체계 등 공공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

○ 가정형 보호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할 것

○ 보호대상아동 면접교섭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할 것

○ 위탁부모 기초생활수급 지출 증빙 관련 제도 개선할 것

○ 가정위탁 지역별 위탁부모 모집 pool 칸막이, 양육보조금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아동학대 관련 》

○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 대한 용어 등 인식개선, 생존아동 등 정확한 통계, 확실한 처벌, 체계적인 아동보호 시스템을 갖추도록 주도적 역할을 할 것

○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 모로코 교민 부부에 의해 학대 피해를 입은 입양 아동 사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

○ 출생신고가 지자체장 직권으로 처리된 아동에 대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위기아동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고 직권 처리 후 바로 상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전달할 것

○ 익산 보육원 장기 아동학대관련 철저한 진상조사, 피해아동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형제자매, 친지 및 이웃사람 등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고의무자로 명시하는 개정안 발의시 적극 협조할 것

○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통계를 정확히 관리하고 아동사망검토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선임상담원 신설과 상담원 직위 세분화 등이 이루어졌으나 다시 이 조항이 삭제되는 재개정 사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서 근무하던 상담원이 근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피해사례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요보호아동 그룹홈 등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

(7) 노인정책관

《 노인복지 》

○ 생계형 고령범죄 방지를 위한 범부처 통합지원체계 구축할 것

○ 고령화, 노인빈곤, 공적연금, 노인 일자리 등 노인문제를 다루는 컨트롤 타워로서 노인정책관 확대를 검토할 것

○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웰다잉 관련 내용 포함 등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

○ 노인맞춤돌봄사업 ‘위탁기간-근로계약기간’ 이 동일하게 설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노인생활지원사의 교통비·통신비 등 돌봄경비 지원 예산을 마련할 것

○ 케어안심주택의 전국 확산 및 대상자기준·운영방식·유형 등을 마련할 것

○ 고령층 주거정책 설계 및 노인복지주택의 서비스 지원을 활성화할 것

○ 경로당 부식비·시설개선비 예산을 지원할 것

○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 기재부 협의를 통하여 경로당 부식비 예산을 반영할 것

○ 노인복지관 급식단가 기준을 마련할 것

○ 노인을 위한 공공서비스 종합플랫폼으로서 경로당을 활성화할 방안을 검토할 것

○ 스마트경로당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현장의 정책참여 대책을 강구할 것

○ 노인여가복지시설 건강관리 목적 실현을 위하여 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상 직원배치기준 개정을 검토할 것

《 노인인권 》

○ 노인학대, 재학대 증가에 따른 예방 및 사후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

《 노인일자리 》

○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를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도록 지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고 제수당의 안정적 지급을 위한 계획을 마련할 것

○ 노인일자리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필요한 참여자 선발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충분한 안전 담당 인력을 확보할 것

○ 노인일자리 참여자 최고령자 현장을 조사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노인일자리 참여를 독려할 것

○ 경로당 급식도우미 등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처우를 개선할 것

○ 노인 아이돌보미 사업의 매칭률 저조 사례를 볼 때,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개선할 것

《 장사지원사업 》

○ 장례식장 내 같은 공간에 일반 시신용, 감염병 사망자용 안치냉장고가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안치냉장고 표준화 기준을 마련할 것

《 치매 관리 》

○ 치매선별검사는 운전능력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에 치매선별검사 활용하는 것을 재검토할 것

○ 발굴·전달·평가체계 개선, 사회전담인력 확충 등 치매 공공후견사업 및 공공신탁 시범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치매 예방을 위한 치매조기예방체계를 강화할 것

《 의료 · 요양 · 돌봄 통합지원》

○ 성공적인 통합돌봄을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전담인력·전담조직 확충, 운영가이드라인 마련, 재택의료·방문진료 확대, 운영가이드라인 구체화, 노인안심케어주택 활성화, 장애인·정신질환자 사업 개발 등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할 것

○ 통합돌봄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전담인력 확보, 통합돌봄협의체 구성, 재택의료센터 설치 등 준비상황을 점검할 것

○ 통합돌봄사업 전담조직 표준모델과 읍면동 보건소 간의 역할 기준 마련 및 지자체 준비상황을 점검할 것

○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원 기준을 재검토하고, 재택의료 확충, 인력·자원조직화 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것

○ 통합돌봄사업 예산 지원대상을 모든 기초 지자체로 확대하고, 지원규모 증액 및 국고보조율 상향, 예산지원 기준 개선(노인·장애인 인구 등)을 검토할 것

○ 지자체 통합돌봄 인력 확충을 위해 인건비 6개월 한시 지원을 확대하고, 공무원 외 민간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할 것

○ 시범사업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본사업 예산을 확대할 것

○ 퇴원환자 연계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장기요양보험 》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의 전국 시군구 확대를 추진할 것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서비스 범위 및 참여기관 확대를 위한 유인책 마련을 검토할 것

○ 모든 기초 지자체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의과의원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에 의과의원이 참여할 때까지 보건소가 한시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지방의료원의 거점 재택의료센터 역할 수행에 대해 검토할 것

○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재택의료센터 설치 방안을 마련할 것

○ 장기요양 방문간호 활성화 계획에 대해 검토할 것

○ 통합판정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유인책과 통합판정 기준의 투명성·객관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장기요양 인정조사표 및 돌봄통합지원법 종합판정 항목에 ‘구강기능·구강위생 상태’ 지표 신설을 검토할 것

○ 온요양원의 부당 이득금에 대하여 철저한 환수를 추진할 것

○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이득금 징수시효 단축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 요양기관 환수제도의 불합리성과 신고포상금 제도의 악용 사례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

○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의 부적정 가입 사례에 대한 합리적인 급여비용 환수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인 수 산정 기준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기준의 법적 모호성 및 소급 환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한 환수를 중지하고, 2025년 이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복지용구 예비급여 제도개선을 통한 신기술 복지용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고령친화식품을 복지용구 급여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 영양급여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관련 근속기간 조건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부담 완화 정책을 마련하고, 고소득층 및 직장가입자의 부담 합리화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재정개선책을 마련할 것

○ 장기요양 재정 안정화와 질 관리를 병행 추진할 것

○ 기초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국고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 수립 방안을 마련할 것

○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 강화에 따른 인건비 보전 및 고용유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방문간호 수가 관련, 방문간호 서비스의 수가 분리 필요성을 검토하고 별도 수가체계를 마련할 것

○ 요양보호사 단체가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장기요양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안과 대책을 마련할 것

○ 고령 여성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장기요양 통합관리 서비스를 강화할 것

○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건강상태 개선에 따른 보상제도 방안을 마련할 것

○ 장기요양보험 등급하향 변경에 따른 보상과 재가복귀 지원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할 것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호봉제를 도입할 것

○ 노인요양시설 위탁 급식업체 관련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외국인 인력 확대에 앞서 요양보호사 처우와 근속환경을 개선하여 자격취득자가 실제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것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임금가이드라인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핵심 메시지로 하는 사회적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할 것

○ 장기요양기관 CCTV를 전수조사하고, CCTV 운영위반과 관련하여 계도 및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노인복지법 제34조를 개정하여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의 건강관리’ 기능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할 것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을 통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요양시설 간호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사망 전 의료비 집중구조 완화 등 재정 절감 효과를 분석할 것

○ 장기요양시설 내 간호인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과 이행 계획을 마련할 것

○ 장기요양기관에서 전문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문재활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통한 별도 수가 제도화 방안을 모색할 것

○ 입소자 정원 100인 이상 장기요양시설의 치과 촉탁의 선임 의무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장기요양시설 계약치과의사에 대한 기본수가 외에 치석제거, 불소도포 등 기타 추가적 수가 신설 방안을 마련할 것

○ 재가급여에만 치과위생사 배치기준이 있고, 시설급여에는 배제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요양시설 내 구강관리 전담 수가를 마련하고 치과위생사 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관련 제도적 지원 등을 검토할 것

(8) 사회서비스정책관

○ 돌봄기본법 제정안 발의에 따른 입법 논의 적극 협조할 것

○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공공돌봄 등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강화 노력할 것

○ 서울 사회서비스원 폐원 절차의 보조금법 제24조 위반 검토할 것

○ 통폐합된 사회서비스원의 분리·독립을 검토할 것

○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에서 삭제된 직접서비스 내용의 복구를 위한 개정을 추진할 것

○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관리감독 전략을 마련할 것

○ 학교 잔식의 사회복지기관 기부와 관련하여 복지부가 계약, 이용자 동의 여부 등에 대한 조사 및 세부계획·가인드라인 마련할 것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지방이양 철회 검토할 것

○ 노란봉투법 관련 시설 유형별 업무연속성 계획(BCP) 수립 및 취약시설 긴급보호 매뉴얼 제정 검토할 것

○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련,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기준(안)」 등에 사용자 책임 조항 보완할 것

○ 주거복지센터 근무 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관 근무 경력 인정 검토할 것

○ 대규모 학대사건이 발생한 사회복지시설 및 운영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강화하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령 제·개정 검토할 것

○ 사회복지시설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강화 방안 검토할 것

○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대체인력 지원 활성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매진할 것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시 통상임금에 명절휴가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 사회복지시설 의료직 직군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보건복지분야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 확보 및 예비인력풀 운영체계 구축 등 노력할 것

(9) 장애인정책국

《 장애인정책 일반 》

○ 장애인 노인복지서비스 연령기준 조정을 검토할 것

○ 장애인복지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지역별 격차 문제 개선을 검토할 것

○ 경계선지능인 보호·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 장애인 개인예산제 관련, 신규 급여 편성 및 부처 간 칸막이 제거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 장애인권리보장법 내 탈시설 권리 규정을 검토할 것

○ 호흡기 착용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포함 또는 보완할 계획이 있는지 검토할 것

○ 뇌병변장애인 지원 위한 컨트롤타워 설립 근거 마련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센터 및 바우처 신설을 검토할 것

《 장애인등록 》

○ 만성장부전으로 인해 TPN 치료가 필수적인 상태에 대한 장애인정 기준을 마련할 것

○ HIV 감염인에 대한 장애인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

《 장애인지역사회자립 지원 》

○ 장애인거주시설 외에 다른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도 지역사회 자립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장애인거주시설 환경개선과 돌봄여건을 고려한 균형있는 장애인 자립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

○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표준 인력 배치 모델 개발 등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보완할 것

○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등도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을 통한 자립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시설의 예산 지원을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

《 장애인단체 관련 》

○ 한국농아인협회를 철저히 조사할 수 있는 TF를 구성할 것

○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해 추가 감사할 것

○ 전 농아인협회 사무총장에 대해 철저히 감사할 것

○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대표이사는 거주시설 내 학대 및 사망사건에 대해,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할 것

《 장애인학대 대응 》

○ 온라인기반 장애인학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

○ 사회서비스원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신속한 현장조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

《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 》

○ 장벽 없는 키오스크 정책 관련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내용을 재검토하고 장애계 간담회 개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

○ 장벽 없는 키오스크 정책 관련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장애인의 접근성을 후퇴시키고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이유로 장애인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것으로 복지부가 장애인의 기본권을 스스로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을 제시할 것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협력 》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관련, 연도별 이행목표나 핵심추진과제 등 단계적 협약 이행 로드맵을 보고할 것

○ 2025년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GITC) 관련, 복지부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

《 장애인 편의증진 》

○ 이용자 욕구를 반영한 장애인 화장실 설치 기준을 마련할 것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장애인편의시설 관리체계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서점을 포함하여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

○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 장애인거주시설 관련 》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관련 행정처분 강화 방안 및 전수조사 등 계획을 마련할 것

○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지킴이단을 공익신고기관으로 포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를 확대할 것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망한 입소장애인에 대한 부검 및 의료보조 행위 합법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사회복지시설 내 장애인 재생산권에 관한 전수조사 및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배상 방안을 마련할 것

○ 장애인거주시설 내 성폭력 사건 및 사회복지시설 내 대규모 학대사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및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할 것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

○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 달성률 제고를 위해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장애인 일자리 지원 》

○ 훈련장애인 훈련지원을 위한 훈련수당 인상 및 사업체 지원금 신설을 위해 노력할 것

○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법안 입법을 위해 법안 검토 등 노력할 것

○ 복지일자리 15시간 확대 및 배치기관 적절성을 검토할 것

○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참여자 급여 인상 및 수당을 신설할 것

○ 시각장애인 노인 대상 맞춤형 고용대책을 마련할 것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장애인 생활지원 거점으로 기능 전환할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 보조기기 품목 분류 오류로 인한 본인부담금 발생이 재발하지 않도록 분류체계를 정비할 것

○ 보조기기 분야의 신기술 발전을 반영한 장애인보조기기법 전면 개정을 검토할 것

《 장애인활동지원 》

○ 반복 입원이 불가피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는 입원 일수 규정의 예외 적용을 검토할 것

○ 장애인활동지원 지침 중 실제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순 대기 시간은 서비스 제공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구 삭제를 검토할 것

○ 65세 이후 시설에서 나와 자립한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삭감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재가 장애인의 동아리, 자조모임 등을 정당한 사회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

《 발달장애인 지원 》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을 위해서는 구체성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

○ 발달장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의 인력 및 재정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AI 기반 돌봄시스템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

○ 발달장애인 형사·사법절차 지원에 대한 통계자료 관리 및 권리구제 전담인력을 확충할 것

○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공신탁 사업의 종합적인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가입대상에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활동 종료 후 긴급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것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후견인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광고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기반으로 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과 탈시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주제로 다룰 것

○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광고는 전체국민 대상의 인식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발달장애 국민을 위한 알기쉬운 공익광고를 제작할 것

《 장애인 건강정책 》

○ 조속한 시일 내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마련할 것

○ 건립형 지원을 받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 발달재활사 국가자격화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할 것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단가 현실화 및 바우처 확대 등 장애아동 발달치료에 대한 공적 보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가능 소득기준 완화 및 장애 유형 등에 적정한 서비스 이용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물리치료사 등 국가자격 소지자에 대한 제공인력 인정 등 제공인력 기준을 개선할 것

○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지역별 격차 해소 및 모자의료센터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단계적 전환 등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 장애여성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접근성 개선 및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에 대한 장애여성의 의견을 수렴할 것

○ 장애인 건강검진 당연지정 기관에 대한 시설·장비·인력 기준 충족 계획을 마련할 것

○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검진센터 장애인이용확대 필요성 및 방안을 마련할 것

《 기 타 》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관련하여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구축하고 전문기관을 지원할 것

(10) 보건의료정책관

《 비대면진료 관련 》

○ 환자 동의 없이 비대면진료 후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비대면진료 지역 제한 시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방의 거주자가 비대면 진료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 및 지역 제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 기존 비대면진료 중개 매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하고 제도 설계시 민간 의견을 수렴할 것

○ 비대면진료 중개 매체 활용 및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 의료인력·간호정책》

○ 전남 의대 신속 설립을 위해 노력할 것

○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전공의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것

○ 복귀 전공의에 대한 명확한 특례기준을 마련하여 불이익 또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의대생 및 복귀 전공의에 대한 의사 국가고시와 전문의 시험 일정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

○ 전공의 복귀에도 수도권 쏠림 현상 원인과 대책, 필수과목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의대생 집단휴학 복귀에 따른 교육 공백 및 의학교육 시스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 의료법상 전문의 근무시간·근로기준법 예외 구조 개선방안 검토할 것

○ 채용이 감소한 신규 간호사 취업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채용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취업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보고할 것

○ 요양병원의 간호사 정원기준 준수 여부 관리·점검 방법을 제시할 것

○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기준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추진할 것

○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에 따라 간병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간병 인력 교육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평가인증제와 요양병원 인증·적정성 평가의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업무 관련 위탁근거 마련 및 보수교육·취업정보·직무역량과 연계된 자격관리체계로 정착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할 것

○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한 시범적 “휴가 대체인력지원사업”을 도입할 것

○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 대한 교육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이론 및 실습 교육 과정을 제대로 이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출산 환경을 위해 저위험 분만을 담당하고, 임신부터 출산, 산후까지 돌봄 연속성을 제공할 수 있는 조산사 양성을 확대할 것

○ 중증장애인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및 환자 선별 방지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

○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조속히 확대할 것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전담병실 운영을 개선하고 공공병원 참여를 확대할 것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인력 산정배수(4.8)를 상향할 것

○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단계별 목표와 이행 계획을 명확히 마련할 것

○ 야간간호 가이드라인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

○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에 수술기록, 약물 처방 초안 작성 등 의사 고유 업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할 것

○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와 관련하여 직역 갈등을 넘어 국민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할 것

○ 진료지원 전담 간호사의 근무안정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 전공의 복구 이후 진료지원인력의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

○ 진료지원 간호사의 안정적 정착 대책을 마련할 것

○ 지역사회 내 의료-요양-돌봄 연계형 재택간호센터의 도입을 검토할 것

○ 간병인과 중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도화방안을 검토할 것

○ 간병인력을 포괄적으로 통합하는 국가공인자격의 도입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보건의료정책 일반 》

○ 비만치료제 주사제(위고비)의 무분별한 처방 및 남용에 대한 현장조사와 규제 대책을 마련할 것

○ 의약품 장기처방일수를 제한하고, 분할조제나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할 것

○ 장애인복지법과 의료법상 설명의무 제도의 불일치를 정비할 것

○ 메디스테프 사례와 같이 SNS상 비방 등을 통해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할 것

○ 실손보험 의료광고 금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추진할 것

○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 피해 파악 및 재발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 표준진료지침에 성별 특성 고려를 명시하고 성차의학 전문 분야 교육 및 연구를 장려할 것

○ 중증 신장장애인을 위한 TBPE 검사 대체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의료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사후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상시 사전·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위반 이력 관리, 기관평가 반영, 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신의료기술평가 선진입 제도 중복활용 등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중 영상검사와 일반검사를 분리하는 등 품질관리검사를 강화할 것

○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보수교육 이수, 면허신고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것

○ 의료기사 등의 면허 신고 모니터링 및 법적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계획을 마련할 것

○ 무분별한 MRI, CT 도입을 방지하지 위한 장비 등록 및 평가 기준 강화 방안 및 MRI, CT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 의료기관 평가인증 시 항생제 사용량 지표를 필수 항목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상급종합병원 불법 촬영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지역센터 확대, 조직력 강화 및 정보화 인프라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정신의료기관 내 환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책임 강화방안을 검토할 것

○ 의료 필요도 등을 반영하여 의료법령상 요양병원 입원 대상 규정을 강화할 것

○ 산부인과 의료진의 법적 불안 해소를 위해 형사면책제도를 도입하고, 의료사고 배상보험, 국가보상 강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의료분쟁 조정신청 시 모든 사건이 자동개시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산모가 분만과정에서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대상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필수의료과목 의료사고의 과잉범죄화 방지 등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

○ 지방에 재활의료기관이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참여 유인대책을 마련할 것

○ 대전 등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병상의 제3기 지정 시 지역별 목표병상을 재검토할 것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의 적응증을 확대하고 입원종료일 기준을 개선할 것

○ 재활의료기관 지정이 없는 지역의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나 기준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민의 의료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병원 내 사회복지사 배치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할 것

○ 급식실 조리수 등 민간 의료기관의 수질 관리를 제도화할 것

○ 감염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

○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보건의료업종 등 실질적 피해가 있는 업종에 대한 예외 인정 또는 별도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 불법개설 가담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을 확대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할 것

○ 불법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미환수액 환수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할 것

○ 의원급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 전문의, 일반의 자격을 표시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활 것

○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에 노인복지시설 및 디지털헬스 서비스 관련 사업 중 일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병원 회계 기준의 부동산과 의료기기 임차비용을 세분화하고, 같은 의료법인 병원인 경우에는 병상 기준과 관계없이 회계 보고 대상이 되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약사-한약사 간 면허범위 문제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 창고형 약국과 관련하여 약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안전상비의약품과 관련하여 품목 확대 및 판매 등록 기준 완화 등 제도를 개선할 것

○ 복약지도 시 약물 운전 위험성 등을 안내하도록 약사법 시행규칙 등을 통해 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수급불안 의약품 대상 성분명 처방 의무화 및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

○ 자가주사제의 무분별한 원내처방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 불법 리베이트의 도구가 된 간납업체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전면 재조사할 것

○ 대형병원에 독점 공급하는 의약품·의료기기 도매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 의약품 유통, 약가 청구 데이터 등을 활용한 조기탐지 시스템 개발을 검토하는 등 사전예방 중심의 리베이트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

○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대란 대응 등에 대해 백서를 작성할 것

○ 응급·분만 등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병원의 규모와 기능을 병상 수급 계획에 반영할 것

○ 비장애인 운영 불법안마소 단속 관련 컨트롤타워를 검토할 것

(11) 공공보건정책관

《 질병 정책(암) 》

○ 국립암센터 공공의료 품질 제고를 위한 노후장비·필수의료인력 운영 체계를 개선할 것

○ 유방암 캠페인 행사 관련 유관기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유방암 환자를 지원할 것

○ 국가암검진에 유방초음파 도입에 대해 검토할 것

○ 자궁경부암 검진방법인 자궁경부세포검사의 HPV DNA 검사 전환에 대해 검토할 것

○ 전립선암 검진으로 PSA 검사의 국가암검진 도입에 대해 검토할 것

○ AI 기반 유방암검진 판독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검토할 것

○ 지역암센터가 지역 암진료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 확대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

○ 국가검진항목에 여성암 추가를 검토하고, 암 수술의 수도권 집중현상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 말기 위암환자 생존률 향상과 지방 암환자의 치료 접근성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 질병 정책(기타) 》

○ 중증 뇌전증 환자의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 지방 거점병원 지정 및 4차 뇌전증센터로의 육성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 만성콩팥병 환자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종합계획 및 원인질환과 연계한 통합관리체계 등이 부재하므로 국가 차원의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소록도에 대한 행정관리 기능을 고흥군으로 이관하고 소록도의 자연경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한센인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고흥군의 소록도 관광지 개발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며, 소록도의 역사 및 공동체를 보존하고 한센인의 복지·의료 등 인프라 보강 및 생활·인권대책을 마련할 것

○ 질병이나 건강통계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 산하에 질병건강통계센터 신설을 추진할 것

○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를 면담할 것

《 지역거점 공공병원 》

○ 지역거점 공공병원(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지방의료원 신설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에 대해 검토할 것

○ 공공병원 신축 추진 및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충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재정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적십자병원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

○ 지역거점병원 육성 및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지방의료원의 평상시 재택의료, 응급 시 응급처치 시술 등 역할 구분을 검토할 것

《 공공보건의료 》

○ 대한적십자사에 대해 유공 포상기준, 인사 운영 지침 등을 포함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

○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시간외근무수당 예산 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의료취약지 및 인구감소지역이 겹치는 지역은 의료취약지 거점병원을 지정하는 등 적극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의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국립중앙의료원 위탁 사업을 위한 공간을 확보할 것

○ 응급의료취약지·분만취약지 등 의료취약지 지정 방식을 시군구 단위에서 중진료권 단위로 전환할 필요성을 검토할 것

○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 인프라의 지역별 격차 해소와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분만취약지 등 현장 및 지역 중심의 안전한 분만 대책을 마련할 것

○ 미등록 외국인아동의 의료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을 개선할 것

○ 공공의료 인프라 및 의료인력 확충을 위하여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를 설치할 것

○ 권역책임의료기관 기능 보강 사업에 있어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한 국비 지원 차등화 등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과 관련하여 복지부 차원의 명확한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 실행 계획과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것

○ 필수의료·취약계층 진료 등 공공의료 기능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병원의 적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

《 응급의료체계(응급실 미수용) 》

○ 지역별「수용곤란 고지 지침」에 ‘우선 수용 병원 지정’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시·도의 경우 지침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하며, 응급실 미수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와 관련하여, 현행의 병원 자율신고제는 별도의 검증·제재가 미흡하므로 소방청과 협력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할 것

○ 응급실 미수용 해소를 위해 광역상황실 중심의 통합체계 마련 및 1차 수용병원 지정 등 종합적 응급의료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

《 응급의료체계(응급실 이송체계 개선) 》

○ 광역상황실의 환자 이송권한 강화와 더불어 소방청의 병원 전단계 교육이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복지부 및 중앙응급의료센터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 응급의료체계(소아 응급의료) 》

○ 소아전문상담센터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온라인 플랫폼(아이안심톡)의 상담 접근성·효과성 등이 미흡하므로, 서비스 종료 및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의료인 상담 연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이 비수도권 지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심야·새벽 시간대 시범 운영 방안을 검토할 것

○ 소아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소아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소아 진료협력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개선할 것

《 응급의료체계(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인구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신속하고 정확한 판독서비스 제공을 위해 응급 영상판독 당직비 인상을 검토할 것

《 응급의료체계(기타) 》

○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사업의 연례적인 예산부족으로 인한 의료기관에 대한 미지급금 발생과 외국인 환자의 미수금 대지급 사용액 증가·낮은 상환율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

○ 119 구급대에서 사용하는 응급의료기금 사업 예산 편성확대에 대해 검토 할 것

○ 서울시 경증응급환자 긴급치료센터 관련 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 권역외상센터 》

○ 권역외상센터별 중증외상 사망률 격차에 따라 지역별 의료체계를 고려한 거점 외상센터 집중육성 방안을 마련할 것

《 응급이송 》

○ 닥터헬기 추가도입 및 인계점 확충을 위한 예산을 반영할 것

○ 절단환자의 이송 중 통증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소방청이 추진 중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직역 간 협의를 통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119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 정비할 것

○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이기 위해 응급처치 교육을 활성화할 것

《 생명윤리 및 연명의료 》

○ 국외 소재 유전체분석기업의 유전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조사할 것

○ 유전정보 보호를 위하여 국외 이전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 신생아 선별 유전자 검사 관련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공공정자은행 제도화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요양병원 대상 연명의료결정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발생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서식의 대리 서명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유사 사례의 재발 조치를 시행할 것

《 혈액관리 》

○ 대한적십자사에 대해 유공 포상기준 등을 포함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

○ 헌혈 공가제 확대 및 안정적인 혈액 수급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헌혈환급적립금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헌혈 유공패 포상 관련 기관 간 실적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

○ ALT 검사는 NAT 검사 도입 이후에도 지속되어 ALT 검사 기준으로 인한 혈액폐기 문제가 발생하므로 폐지할 것

○ 혈장보관센터의 냉동창고는 원료혈장과 혈액보관검체를 보관하는 중요 시설로 노후화와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용 냉동창고 신설 예산을 지원할 것

《 장기 · 인체조직 이식 》

○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의 등급 상향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

○ 생명나눔 가치 확산을 위한 지상파 및 OTT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방의료기관의 장기이식 역량 강화, 이식기관 지정요건 완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단계별 로드맵, 장기이식 의료진 인센티브 등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 뇌사 장기기증 관련 의료질 평가 시범지표인 ‘의료기관 뇌사추정자 신고율’ 지표를 본지표로 전환할 것

(12) 한의약정책관

○ 대한한의사협회장의 대통령 주치의 수행이 정책 공정성 훼손 우려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노인한의주치의 도입시 한의 의료의 구체적인 역할과 참여방안, 기존 제도와의 연계, 직역간 갈등 방지를 위한 의료계와 한의계 역할과 참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 공중보건의사 숫자가 감소하면서 한의사의 참여와 역할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 관련 감사를 실시할 것

○ 원외탕전실 인력, 관리감독, 품질관리 미흡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 한방 조제한약(젤리) 유통 관련 조사 및 유사사례 차단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조제한약 성분 기재를 의무화하며, 사실상 제조에 준하는 조제행위 재제조치 마련하고, 조제한약 광고 기준을 재검토하며, 다이어트한약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을 금지할 것

○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규제를 검토할 것

○ 원외탕전실 관련 조제 전담 인력 조사항목을 복구하고 표준처방전을 도입하며, 1인 조제한도를 설정하고, 한약사 근무 신고를 개선할 것

○ 한의약분업 실시 관련 구체적 내용과 추진 계획을 제시할 것

○ 한약사 제도개선 관련 확실한 가이드라인과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 한약조제지침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한약학과 6년제 전환 논의에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 지역 거점대학 한약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 관련 추진방안을 제시할 것

○ 한의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

○ 한의사 천연물신약 처방 및 급여 인정 관련하여 검토를 할 것

○ ㈜씨케이 특혜의혹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 수급조절 한약재 배정기준·산식, 수매실적 인정품목 및 증빙서류에 대하여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 표준화 한약재 대량 수급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을 검토할 것

○ 식약처 GMP 안전 및 품질관리와의 중복성, 한약재 원가상승 우려 등에 따라 한약재 정보제공 시범사업을 중단할 것

○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 필요성에 대한 부처 의견 및 실행 계획을 마련할 것

○ 의료관광 및 k-culture와 연계한 외국인 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검토할 것

○ 외국에서 ‘한의사’가 의료인으로 인정받도록 추진계획 등을 검토할 것

○ 재난 상황에서 한의사 인력 참여·한의약의 재난대응 의료체계 포함 방안을 마련할 것

(13) 건강보험정책국

○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관련 대책을 제출할 것

○ 국고지원 일몰 규정 폐지와 관련한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회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검토할 것

○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 균형 달성을 위한 연도별 목표치와 시나리오, 적자 전환 이전 수준 유지를 위한 구체적 지출 개선 목표를 마련할 것

○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가 국민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것

○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증가 요인과 지원금 구조의 재정기여도 변화 분석 및 연도별·회계별 세부 현황을 제출할 것

○ 건강보험 재정이 정부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자립도 제고 방안과 재정 건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 외 지출 효율화나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

○ 건강보험 외국인 진료비 부담 및 정부지원금 관리 분리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의료 이용구조 개선, 과다 진료 억제 및 중복 청구 방지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내·외국인 진료비 재정 분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항목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비상진료 지원사업이 건강보험 재정의 본래 목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복지부의 정책적·법적 해석을 검토하고 향후 동일 사유로 추가 지출이 불가피할 경우 적용할 재정투입 기준을 마련할 것

○ 건강보험 재정 관련 예정처가 제시한 '28년 준비금 소진 전망에 대한 대응전략 및 재정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을 마련할 것

○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 인상을 제외한 재정 효율화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중심의 재정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할 것

○ 약제비 증가와 수가 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 상쇄를 위해 지출 구조조정, 비급여 관리 강화, 약제비 절감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것

○ 필수의약품 및 필수의료 지원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재정관리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수분야 지원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것

○ 건강보험 수가협상 시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분리 계약을 검토할 것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에 있어서 무균·멸균 약침액을 자생한방병원에 몰아준 특혜 의혹에 대해 조사·감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할 것

○ 제대로 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하여 침례병원을 지자체 소유와 건보공단 위탁 운영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

○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열람 근절을 위한 건보공단 내부통제 대책과 공단 내 징계위원회의 독립성과 처벌 수위 상향 계획을 밝혀줄 것

○ 한의사가 한약을 처방하고 한약사가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조제한 것이 자동차보험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악성 의료기관에 대한 민관 합동 현장점검 추진을 검토하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

○ 외국인 환자 진료비 허위청구 기관에 대해 청구이력 기반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리할 것

○ 고액 환자 증가가 필수의료 및 예방의료 투자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정 배분의 균형을 유지하고 예방 조기진단 중심의 의료비 구조 정책을 추진할 것

○ 여성건강 지원체계를 통해 여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할 것

○ 중복 검사·과잉 처방으로 인한 외래비 낭비를 위해 복지부와 심평원이 협력하여 중복 진료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증가 추이를 연령별·질환별·진료유형별로 정밀 분석하고, 고령층 의료비 절감을 위한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

○ 정부지원금을 내·외국인 분리하여 관리하고 항목별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검토할 것

○ 외국인 진료비 증가세가 건보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외국인 진료비 예측모델과 통계 관리 시스템 운영 등을 검토할 것

○ 외국인 보험료 부과체계, 체류기간 기준, 진료비 부담 조정 등에 대한 정책을 검토할 것

○ 법무부, 관세청,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외국인 체납자 자산 파악 및 압류절차 강화를 검토할 것

○ 단기 체류 외국인의 체납 방지를 위해 출국 전 정산 또는 보증금 납부 제도 도입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 외국인의 체납·결손 정보를 법무부·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실시간으로 연계·관리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과 외국인 체류자격별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체납 외국인에 대한 자산 추적 및 행정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

○ 외국인 건강보험료 결손 증가가 건보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결손규모가 급증한 원인과 재정적 손실 추정액을 포함한 내역을 의원실에 제출할 것

○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에서 상호주의 원칙, 출입국 정보 실시간 연동, 고액진료 출국자 또는 체납외국인에 대한 정산 의무화, 부정수급자 재가입 제한 제도 도입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국적별 수입·지출 구조와 부정수급 현황의 공개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검토할 것

○ 최근 2년간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급증의 원인을 국적·가입유형(직장, 지역, 피부양자)별로 분석하고, 특히 외국인 비중 확대가 건강보험 재정과 급여비 지출 구조에 미친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의원실로 제출할 것

○ 외국인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 강화 및 급여 이용 실태 점검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 법무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체류자격·근로정보·보험자격을 연계 관리하는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할 것

○ 내국인 피부양자 기준 강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고령층의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재산 기준 완화 또는 고령층 경감 제도를 검토할 것

○ 외국인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국적·체류자격별 보험료 부과 및 급여비 구조를 정례적으로 평가·공개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체납 방지를 위한 보완 입법 또는 관리제도 강화를 검토할 것

○ 외국인 가입자의 국적·체류형태별 진료이용 패턴 분석과 부당청구 점검 강화 및 심평원-공단 간 데이터 연계로 부당 이용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검토할 것

○ 외국인 전용 건강보험 체계(보험료율·급여한도 차등화 등)를 검토할 것

○ 체납 외국인 관련, 고액 진료비 수혜자 중 체납 이력이 있는 가입자에 대한 부당급여 환수 및 재발방지 조치를 보고할 것

○ 최근 5년간 사회보험료 체납 압류 건수 증가 원인을 경기요인, 제도요인(보험료 부과 기준, 분납제도 등), 사업장 규모별로 분석하고 체납 증가의 주요 요인을 구체적으로 진단한 분석자료를 의원실로 제출할 것

○ 영세사업장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분납·유예제도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검토하고 현재 시행 중인 분납제도의 이용률, 승인기준, 실효성 평가 결과를 보고할 것

○ 체납 방지를 위해 체납 예방 컨설팅, 사전 알림, 경고 제도 도입 및 사업장별 납부 이력 기반의 위험 예측 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것

○ 체납 사업장에 대한 재기 지원 및 경영 컨설팅 제도 도입과 지방 중소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험 체납 예방 및 재정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할 것

○ 체류·고용·보험 정보 통합 기반 실시간 자격검증 시스템의 구축 일정과 관계부처(법무부·고용부·행안부 등) 간 정보 연계 현황, 시스템 완성 시점과 시범운영 계획을 의원실로 제출할 것

○ 외국인의 자격상실 후 급여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자동 급여 제한 절차 및 행정적 근거 규정과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 상 정보연계에 대한 법적 기반이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할 것

○ 외국인 근로자 교육에 건강보험 과목을 포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고용허가제(EPS) 근로자 및 유학생 방문취업자 등 체류유형별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보고할 것

○ 실시간 자격검증과 의무교육 제도 도입 이후에도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적발·환수·형사고발 등 사후관리 절차 개선방안과 체류기간 만료 전 출국자의 환수율 제고 방안을 검토할 것

○ 공단의 교육 관련 추진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 연계 예산, IT 인프라 고도화, 교육 예산 및 법령 개정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로드맵 수립을 검토하고 구체적 예산 계획 및 추진 일정이 있다면 보고할 것

○ 현행 직장-지역가입자간 상이한 부과체계에 따른 불균형 해소를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검토할 것

○ 상위 10% 고소득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고소득층의 보험료 부담 상한제 도입 또는 완화 기준을 검토하고, 현행 제도에서 보험료 인상에 따른 재정 효과 및 형평성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제출할 것

○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관련 매년 흑자가 발생 중인 건강보험 재정수지에 대해 국민의 오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개선 지적은 혐중 정서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중국인 가입자의 부정적 이용 행태에 기인한 지적이므로 건보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에 지속 힘쓸 것

○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와 관련해 가짜뉴스와 통계적 오류 관련해서 복지부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오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릴 것

○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가별 위험등급제와 보건안전사전평가제 도입계획을 검토하고 보고할 것

○ 과도하게 높은 외래이용률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이용 합리화 정책을 검토할 것

○ 과다의료이용 예방 관련 예산 증액을 통해 합리적인 의료이용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

○ 안저검사, 척수성근위축증(SMA) 등 신생아 국가 선별검사 항목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결과를 보고할 것

○ 치료 가능한 희귀 질환 조기진단을 위한 신생아 선별검사 필요성을 검토할 것

○ 복막투석 치료환경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수가 지원을 검토할 것

○ CT, Mammography 등 특수의료장비의 노후도와 영상 품질 등 성능을 기준으로 한 수가차등제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

○ MRI · CT 신규 장비 도입 이후 검사 건수가 급증하는 기관에 대해 별도 관리·현지조사 실시 및 청구현황을 모니터링할 것

○ 희귀질환 가임부부 유전자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필요성을 검토할 것

○ 낙태죄 효력상실 이후 건강보험 급여 대상 명확화 방안을 검토할 것

○ 위암 표적치료제 맞춤형 처방을 위한 정밀진단 검사 등 수가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 약물 난치성 뇌전증 로봇 수술비 비급여에 대한 개선을 검토할 것

○ 섭식장애 급여 항목의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 암 환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제 선정에 필요한 동반진단 및 치료제 동시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

○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시술의 급여기준 개선 및 급여 재평가에 대해 재검토할 것

○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연내 종료 예정된 일차의료 의과 시범사업의 연장 또는 확대를 검토할 것

○ 방문진료의 지역별 요구도 및 의료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의료취약지 수가 인상 방안을 검토할 것

○ 통합돌봄 시행 관련 방문진료 횟수 확대 및 의료기관 유인 대책 등 사업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건강검진 이후 폐기능 질환자의 치료 연계 및 약물 관리 실효성 등을 위해 교육·상담료 신설에 대해 검토할 것

○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시, 한방 약품 처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한약제제 건강보험제도 분리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시, 의료법 상 정원기준 준수 여부 반영 계획 등을 검토할 것

○ 이분척추증 등 배뇨가 어려운 환자들의 카테터 사용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중증 호산구성 천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과도한 치료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산정특례 지정을 검토할 것

○ SYNGAP1 등 극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유연화 등 산정특례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중증 IGA 신병증 환자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

○ 중증 2형 당뇨환자의 질환 관리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등을 검토할 것

○ 1형 당뇨병 혈당 관리를 위한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필수의료기기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1형 당뇨병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인슐린이 필수적인 중증 2형 당뇨병 환자 포함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

○ 1형 당뇨환자에 대한 연속혈당검사 관련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병원 식대 실태조사, 수가 현실화 및 기초영양관리료 수가 신설 등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할 것

○ 보청기의 텔레코일 기능 활성화 및 사용자 의무교육 방안을 검토할 것

○ 수동·전동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신장장애인에 대한 이동보조기기 지원 계획을 검토할 것

○ 의과-한의과 동일·유사 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 및 선택권 강화방안을 검토할 것

○ 흉부외과 필수 치료재료의 수가 현실화 방안을 검토할 것

○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쏠림 완화를 위한 기능 재정립 방안 및 중소병원 등으로 환자를 분산시키기 위한 연계 대책을 마련할 것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수가 인상이 전체 수가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고, 개별 수가 항목별로 원가보상률 공개 및 저수가 인상 방안을 마련할 것

○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의 알코올(중독) 분야 포함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

○ 간병비 지원과 관련하여, 건강보험 이외의 재원조달 방식에 대해 재검토할 것

○ 간병비 지원 본격화하기 앞서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 체계 확립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점검할 것

○ 중증장애인 및 희귀질환자 등 중증환자 중심 간병 급여화의 우선지원과 간병 급여화 대상 병원 부족 및 장기집중 간병 등 실질적 대책 마련에 대해 검토할 것

○ 의료진의 처치 정도와 간병의 강도가 높은 루게릭 환자 전문요양병원에 대한 별도 수가 적용 및 중증근육성 희귀질환 연구('24)에 따른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

○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가 전면 시행되는 2030년이 되면 건보 재정확보 문제는 없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재정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간병지원 필요성이 낮은 경증 환자들의 사회적 입원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하나로 요양병원 퇴원환자 방문진료사업 시행에 대해 검토할 것

○ 간병 급여화 실효성 확보 방안 관련, 재정관리·허위청구 방지 등 세부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전 공정 자동 의무화,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화 등 제도화 방안 및 제재 기준을 마련할 것

○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관련, 분리 지급·질 관리·재수탁 등 위수탁 문제 해결을 추진하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시 진료 공백과 행정 부담을 키우지 않도록 설계할 것

○ 녹십자의료재단에 대해 공정하고 적합하게 심사하여 인증취소 1개월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하고, 제재 양형기준 상향 검토 등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 희귀질환 신약에 대한 신속 등재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행과정에서 중증·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접근성을 개선할 것

○ 국내 제약산업 보호를 위해 국산 제네릭 약가 일률적 인하 추진을 재검토할 것

○ 항생제 내성관리 및 CRE 등 슈퍼박테리아 다제내성균 신규 항생제 도입을 확대할 것

○ 고위험 산모 지원 확대를 위해 자궁수축억제제 최대 4회 투여 이상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

○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퇴장방지의약품 관련, 공급 중단 모니터링, 주기적인 상한금액 재평가, 원가산정 기준 현실화 등 제도운영 전반을 재검토할 것

○ 퇴장방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 관리 제도의 통합적 관리 방안을 검토할 것

○ 혁신신약의 안정적 국내 공급을 위해 해외 국가의 약가 참조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

○ 환자 접근성 향상, 약가 투명성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등 3대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급형 RSA 적용 약제가 계약 종료나 특허 만료 이후에도 실제가 대신 표시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이중약가제 대상을 기등재 약제, 수입의약품 및 철수위기 의약품으로 확대할 것

○ 위험분담제를 항암제뿐 아니라 면역질환·만성질환·극희귀질환 등 혁신신약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고, ‘환급형’ 위험분담제를 신약의 일반 등재 트랙으로 확대할 것

○ 위험분담제 적용 약제의 계약 종료 문제 관련, 동일 제제 등재 시 기존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현행 구조 개선 및 재정영향 분석, 사후 환급관리 강화, 가격 투명성 확보 등 종합적 관리대책을 함께 마련할 것

○ 혁신 의약품 가치 평가와 약가체계 개선을 위한 RSA 확대, 국내 투자 기여도에 따른 ICER 기준 탄력 적용, 혁신 신약의 지속적 개발 유도를 위한 선진국형 적응증별 약가제 도입 등의 제도개선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추진할 것

○ 감기약 처방 시 위장약의 불필요한 동반처방 관행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경우에 의약품 처방이 이루어지기 위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환자의 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암 치료제(담도암・대장암・전립선암・방광암・간암・위암・비소세포폐암・전이성 요로상피암 등 소외 암종)의 급여화를 검토할 것

○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025년도 시행계획’ 관련, 조기 유방암 단계에서도 재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내 개발 신약의 국내 우선 출시와 글로벌 시장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리적인 약가 산정체계를 마련할 것

○ 기존 혈전용해제보다 빠른 일시에 투여하고 의료진의 치료 부담을 낮춘 3세대 혈전용해제의 국내 빠른 보험급여 적용과 필수의약품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

○ 간질성 폐질환(ILD), 특발성폐섬유증(IPF)에 대한 항섬유화제 및 폐동맥고혈압(PAH), 만성 혈전색전성 폐고혈압(CTEPH) 치료제의 건강보험 신속 등재와 급여 범위 확대를 통해 환자들의 약제 접근성을 강화할 것

○ CRM 기반 만성질환 치료제의 통합 급여체계 마련 및 SGLT-2 치료제의 조기 치료 등 급여기준을 확대할 것

○ 혁신신약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임상가치 중심의 급여심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민 건강권 보장과 형평성 강화를 위한 재정절감형 혁신신약 신속심사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최근 혈액암 2차 치료에 사용가능한 CAR-T 치료제가 등장함에 따라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치료의 강화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급여 등재를 통해 환자들의 부담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 백혈병 환자의 치료기회 증진을 위한 CAR-T 치료제를 비롯한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제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 필요성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것

○ 연구개발을 통해 신약을 개발한 국내기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약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할 것

○ 외국약가 재평가 도입에 따른 제약산업 위축 가능성 고려하여, 외국약가 재평가에 대해 신중하고 세밀하게 접근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등 제약사 R&D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을 희귀·중증질환 신약을 중심으로 우선순위화 하는 등 전향적으로 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것

○ 동일암종이라도 말기 환자일수록 몇 개월의 생존기간 연장이나 미미한 수준의 삶의 질 개선효과도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급여 평가 과정에서 치료 차수 등을 고려하고 시급성과 의료공백, 미충족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연한 평가체계를 마련할 것

○ 희귀질환인 X-염색체 연관 저인산혈증(XLH) 치료제 관련, 성인도 소아와 같이 자료 생성이 어려운 건 동일하므로 성인에 대해서도 경제성 평가 면제 트랙을 적용해 급여기준을 완화할 것

○ 마운자로의 2형 당뇨병 환자 대상 급여 적용 관련, 국제 약가와 급여 사례를 반영한 신속등재 제도 활용 및 당뇨병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위하여 급여 적용 시기를 앞당길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바이오시밀러는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의료비 부담 경감의 핵심 열쇠로, 약제비 절감에 그치지 않고 재정 효율화로 확보된 여력을 국민 건강보장 강화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의 약가 정책을 확립할 것

○ 약가 인상 품목 확대의 주요 원인과 향후 예상되는 연간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하여, 약가 인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전심의 절차를 개선할 것

○ 필수의약품 지원 정책이 재정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전략을 마련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균형잡힌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

○ 최근 5년간 약가 협상 결렬이 집중된 신약, 항암제, 희귀의약품 분야에 대한 협상 구조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급여가 지연되고 있는 약제에 대해 중재 또는 조정기능을 강화하며, 협상 결렬 후에도 선급여·후평가 제도 등을 검토할 것

○ 난임치료제에 대한 사용량-약가 연동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 약가 협상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제약사와 공단 간 협상 결과, 재정 절감 효과, 사회적 환류 방안의 정기적 공개를 검토할 것

○ 보험등재 제한 조치 등 리베이트 반복 위반 제약사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할 것

○ 치매 치료제에 대한 급여 적용 및 고가약의 위험분담제(RSA) 또는 조건부 급여제도(선급여·후평가) 도입을 검토할 것

○ 저혈당증 치료제인 글루카곤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검토할 것

○ 폰히펠린다우 증후군을 포함하여 급여적용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 등 희귀질환 환자들의 필수 치료에 대해서 개별 질환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신속한 급여적용을 검토할 것

○ 결절성 양진의 중증 환자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할 것

○ 국산 원료의약품 사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공급안정성이 중요한 필수의약품에 대한 약가관리 방안을 검토할 것

○ 당뇨 환자들의 가장 큰 고통인 ‘합병증 및 사망의 공포’를 해소할 수 있도록, 혈당 관리를 넘어 당뇨병 관리가 가능한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할 것

○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NMOSD) 환자가 재발 이전에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련 치료제의 급여기준을 개선할 것

○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들을 위해 신약의 조속한 급여 필요성을 검토할 것

○ 미 정부의 MFN 조치 등 글로벌 통상 급변 속에서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허가-급여 병행심사 패스트트랙 제도화, 필수약제 도입 절차·심사기간 단축 방안 및 해외에서 시행 중인 3제 병용요법 도입 등을 검토할 것

○ 진료비 확인 제도 관련, 일정 횟수 이상 비급여 진료비 부당청구 비율이 높은 기관에 대하여 심평원이 직권 심사하는 기능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건강보험 부당청구 반복 기관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AI 등을 활용한 부당청구 감시체계를 고도화할 것

○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원활한 집행과 의료기관 참여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2027년 상병수당 본사업이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 상병수당 시범사업에서 제기된 적용대상·보장수준 등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방향을 검토하여, 2027년 상병수당 본사업 시행 시 실효적 제도로 정착하도록 할 것

○ 상병수당 본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적정 대기기간 및 지급액을 검토하고, 법정 유급병가 도입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논의할 것

(14) 필수의료지원관

○ 지역·필수·공공의료 문제해결을 위해 진료권 기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담당조직을 설치할 것

○ 비급여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 '25.3월 발표한 비급여·실손 개선대책을 주요 과제로 다루어 계속 추진할 것

○ 재난적의료비를 저소득층 뿐아니라 중산층까지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본인부담상한제 제도를 개선할 것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사후정산 TF를 운영하고 향후 계획을 마련할 것

○ 지역불균형에 따른 소아청소년과 부재에 대한 실효적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

○ 지역완결형 중증 소아심장 진료체계를 도입할 것

○ 비급여 관리를 위해 비급여 의약품 목록화를 추진하고, 비급여 표준 명칭·코드 사용을 의무화하며, 비급여 보고 대상을 확대하고, 비급여 의약품 관리를 강화할 것

○ 관리급여 제도 및 체계적·통합적 비급여 관리를 위한 비급여 관리법 등을 도입할 것

○ 지역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확대를 추진할 것

○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추진 계획을 마련할 것

○ 선별급여 항목인 NGS 검사 중 일부 암종에 대한 본인부담률 완화 등을 검토할 것

○ MRI 사용량 관리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15) 건강정책국

《 건강정책 일반 》

○ 보건지소를 단순 진료 기능 위주로 운영하기보다는 만성질환 관리, 운동·영양·정신건강 상담 등 건강증진 기능을 강화할 것

○ 전남 지역 진료 공백 해소 위해 공보의 우선 배치, 도서·벽지 지역 순회진료 인력 확충, 지방 근무 의사 유인 강화 및 응급원격협진 실적을 응급의료기관 배치 최상위 기준으로 설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업무활동장려금(진료장려금) 인상 등 공중보건의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공중보건의사 제도 유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지역보건의료기관 의사 근무 시 퇴직연금 지급 정지에 따른 퇴직 의사(퇴직연금수급권자)의 지역의료 봉사 유인 저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농어촌의료법」에 보건진료소의 방문진료 근거를 명문화하고 돌봄통합법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것

○ 보건진료소를 돌봄통합법 일차의료 핵심기관으로 법제화하고, 전문직위화 및 승진체계를 개선할 것

○ 보건소 수질검사 주기와 항목 관리 방법 및 향후 실시간 수질관리 시스템 도입 계획에 대해 검토할 것

○ 공중보건의사 자원 감소에 따른 의료취약지역 보건소 의사 충원 계획을 마련할 것

○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

○ 식품사막과 관련하여, 국민영양관리법 개정에 협조할 것

《 숙박업 》

○ 외국인 관광객과 장기체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도입된 생활숙박시설의 합법 사용지원을 양성화하기 위한 숙박업 신고기준 완화를 검토할 것

《 만성질환 관리 》

○ 소아당뇨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것

○ 30세 미만 당뇨병 환자의 급증 원인을 분석하고, 취약계층 및 장애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것

○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에서 케어코디네이터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 야간혈압 측정 결과를 반영한 만성질관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당뇨발에 대해 조기검진, 예방관리, 교육 지원 등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포함하는 등 예방적 기능을 강화할 것

○ 청년층에서 급증하는 당뇨환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및 조기검진 사업을 확대할 것

《 문신 제도화 》

○ 문신사법 시행 유예기간 중,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고 대법원 판례변경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조치할 것

《 금연정책 》

○ 액상전자담배 무인점포 현황을 파악 위한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시행할 것

○ 정부 차원의 통합적 금연정책 목표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한 금연종합관리계획과 정책위원회 관련 법 개정 방안을 검토할 것

○ 변화하는 흡연 행태에 대응 및 금연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약국 활용을 포함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검토할 것

《 건강검진 》

○ 한국건강관리협회가 건물 입주기업인 노보진코리아에 유전자 정보를 유출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조사할 것

○ 건강검진기본법에 성별 차이를 고려한 내용을 포함할 것

○ 영유아 검진에 안과 정밀 검사를 포함하여 안과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국가검진 폐결핵 검사 항목의 효과성이 낮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인력기준) 관련 의료기관 규모와 상관없이 임상병리사를 필수 인력으로 지정할 것

○ 여성질환(골다공증, 폐경기 질환 등)에 대한 국가검진을 확대하고 성별 차이를 고려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

○ 한국건강관리협회가 개소한 메디오픈랩 입주 기업 선정 및 운영 절차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데이터 안보 상황에 대해 점검할 것

○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에 대한 공공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개편 필요성 및 정기적 검진 성과 평가체계 구축, 유소견자 사후관리 강화 등 건강검진제도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영유아발달정밀검사 이용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안저검사 도입할 것

○ 영유아구강검진 문항에 ‘치아조기탈락 여부’ 포함할 것

○ 국가건강검진 중 간염검사 대상자를 확대할 것

○ 국가건강검진을 통한 치매 조기예방체계를 강화할 것

《 비만예방 》

○ 만성질환의 원인인 비만예방 및 관리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비만기본법 제정을 검토할 것

《 음주폐해예방사업 》

○ 콜라보 주류 및 법을 반복해서 위반하는 주류에 대한 실질적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

○ 주류마케팅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민건강증진 차원의 예방 교육과 홍보, 조사연구, 주류광고 규제 강화 등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확대할 것

《 구강건강 》

○ 노인 방문구강관리사업의 전국적 체계 구축과 제도화를 뒷받침 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계획 마련할 것

○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지역선정 공모계획 등 세부 추진계획과 추진 일정 및 예산 등을 보고할 것

(16) 정신건강정책관

《 정신건강정책 거버넌스 》

○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향후 운영방안 등 점검할 것

《 심리상담 서비스 》

○ 심리상담서비스 법제화 관련 복지부 추진 방안 보고할 것

《 정신건강 일반 》

○ 청년·여성·아동 정신질환 급증에 따른 대책 및 섭식장애 등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 AI 기반 정신건강 상담 관리・보호 대책 마련 검토할 것

《 정신응급대응체계구축 및 운영》

○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 시 병원 참여 적극 유도할 것

○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 시 응급입원을 위한 24시간 당직의 배치할 것

《 정신의료기관 치료환경 개선 및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개선 》

○ 격리·강박 실태조사 이후 별도의 행정처분과 의료기관평가 인증이 이뤄지도록 할 것

○ 국가책임 강화를 위하여 사법입원제 등 검토할 것

○ 보호의무자 자격 요건에서의 ‘소송’에 형사소송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보호입원제 폐지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정신건강정책 영역에서 당사자 참여 보완할 것

《 동료지원쉼터 》

○ 일시적 정신과적 위기상황시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공간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동료지원쉼터 개소당 단가 확대 등 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동료지원쉼터 관련 시행규칙 중 인력기준, 유형 등 검토 후 보고할 것

○ 주간형 동료지원쉼터 삭제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정신건강 주거지원 시범사업 》

○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시범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동료지원 제도 》

○ 동료지원인 발굴 및 취업, 제도 홍보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

○ 당사자 중심의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시행계획을 마련할 것

《 중독자 지원 》

○ 중독치료회복지원법이 조속히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청소년 중독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재난 트라우마 심리지원 》

○ 대규모 사회적 참사 피해자·유가족 상황을 감안한 맞춤형 심리지원 및 중장기 지속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의 12·29 여객기참사 관련 부적절한 대응,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로의 연구용역 몰아주기 등과 관련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

○ 트라우마 심리지원의 컨트롤 타워인 국가트라우마센터의 대응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적·조직적 개편 방안을 검토할 것

○ 대규모 사회적 참사 피해자 등의 정신건강 상태를 중장기 추적 및 관리하는 국가트라우마센터·권역별트라우마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온라인 원스톱 구조의 심리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할 것

○ 소방·경찰공무원 등 재난 대응인력의 트라우마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트라우마 극복, PTSD 치료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로서 소관 부처와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할 것

○ 이태원참사 유가족 항의 서한 사례(9.18)가 반복되지 않도록 참사 피해자·유가족 상황을 감안한 맞춤형 심리지원 등 섬세한 지원방안 검토할 것

《 안산마음건강센터 》

○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을 위해 안산마음건강센터 심리지원시 유가족, 미성년 피해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운영하고, 재난트라우마 대국민 인식개선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 체계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하여 확인할 것

《 자살예방서비스 》

○ 실질적인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 자살징후 감지 시스템을 구축할 것

○ 자살예방상담전화 간 자동연계시스템를 구축하고 상담 후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할 것

○ 자살사망자 수가 급증한 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것

○ 중앙-지역으로 이분화되어있는 자살예방 컨트롤 타워 체계를 개편할 것

○ 국가자살예방전략 내 장애인 자살예방 방안을 마련할 것

○ 심리부검 제도에서 청소년이 소외되지 않도록 확대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자살유발정보를 신속히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

○ 자살유발정보 급증에 따른 모니터링 인력 추가, 절차 개선 등 모니터링 강화 방안 마련할 것

○ 정신건강 비전문가도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자살위험 선별도구를 개발·보급하고, 장애인 대상 수어 영상 상담 체계를 도입할 것

○ 청소년 자살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자살예방 상담전화 인력 확충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 지역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한 경증 자살시도자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성별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을 마련할 것

○ 자살률이 높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자살예방정책연구소·교육전담기관 신설, 자살예방기금 설치 및 법제화 계획, 자살예방 필수인력 확보 계획 등을 마련할 것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김제시 부정 결제 사건을 재조사할 것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방거주자 및 중장년층 참여 확대 방안, 상담 품질 및 성과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할 것

○ 예산 부족으로 신청이 중단되는 사례 발생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17) 보건산업정책국

○ 한의사의 의사과학자(MD-Ph.D) 양성사업 참여 필요성을 검토할 것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의 환자 치료 및 산업화 성과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의 PM 지원인력 및 조직을 확대하고, PM 채용 및 과제 선정·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추진단의 상설조직 전환을 검토할 것

○ 해외우수기관과의 보건의료기술 분야 공동연구 지원을 강화할 것

○ 글로벌 R&D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위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원료의약품 자급화를 위한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할 것

○ 합성의약품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필요성을 검토할 것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재설계 방안을 검토할 것

○ 원료의약품 자급율을 제고하고 수급불안정의약품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계획을 마련할 것

○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일몰기한 연장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간단보험대리점(여행자보험) 병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8) 첨단의료지원관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검토할 것

○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공공성 확보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진료정보교류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안 조치 등 수립할 것

○ 제약 바이오 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할 것

○ 디지털 병리 산업을 국가전략 산업과제에 포함할 방안을 검토할 것

○ 우리나라 첨단재생의료 규제완화나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

○ 전북이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지와 관심을 가질 것

○ 생체내 유전자치료 임상연구가 불가한 상황에 대한 법률 개정안 마련을 검토할 것

○ 국내에서 생체 내 유전자치료 임상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구조가 환자의 치료기회와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것

○ 세포처리시설이 유전물질을 취급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규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

○ 환자중심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비(2억원)를 신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재생의료분야) 다학제 협력에 의한 R&D 필요성을 검토할 것

(19) 의료개혁추진단(의료혁신추진단)

○ 지역 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할 것

○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지역의료 격차 해결을 위해 국민 중심 의료혁신을 추진할 것

○ 의료혁신위원회 운영 시 한약계 참여 방안을 검토할 것

2)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급여 》

○ 과잉의료이용 방지 등을 위해 실손보험으로 본인부담금을 보상받은 가입자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하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 비급여 증가 및 실손보험으로 인한 과잉진료 등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므로 비급여 과다이용 관리 및 실손보험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 2형 당뇨 환자에 대한 연속혈당측정기 급여화 추진 중단 사유를 밝히고, 당뇨 질환관리를 위해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당뇨관리체계 정착 방안을 마련할 것

○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연계심사를 위하여 비급여 코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할 것

○ 평생 관리가 필요한 심장질환에 산정특례 30일 적용은 불합리하며, 지원기간 조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므로 복지부의 기준 마련을 위해 공단이 적극 협조할 것

○ 재난적의료비 관련 일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및 제도남용을 막고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 약제비 및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성분명 처방제 도입을 검토할 것

○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모바일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을 막을 대책을 마련할 것

○ 지역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임신·출산 바우처 사업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 실손보험금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 이중지급 관련 대책과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을 마련할 것

○ 낮은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평점과 앱에 접속이 안 되거나 끊기는 현상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인공임신중절수술 건강보험 적용범위 명확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할 것

○ 남성 난임 지원과 포용적 임신출산(공공정자은행 제도화) 지원 및 난임 지원 사업 대상(결혼 여부 불문)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 레이저 채혈기 소모품(일회용 캡)의 요양비 급여확대를 검토할 것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운영 관련 저소득층에 지급 안내를 강화하고, 고액・장기체납자 체납액과 상계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지급 지연을 개선할 것

○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방식은 사전・사후방식 모두 환급이 늦어 의료비 부담 즉시 완화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개선할 것

○ 탈모, 임플란트 등이 재난적의료비로 지원되어 실손보험처럼 운영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므로 제도를 개선할 것

○ 장애인 전동휠체어 배터리의 건강보험급여 정률제 적용 및 내구연한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 보건의료인력 인권지원센터 인지도 제고와 이용률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미지정으로 희귀질환자의 과도한 비용 부담에 대한 산정특례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 중증 호산구성 천식 약제 급여화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지정을 검토할 것

○ 성분명 처방제도 도입을 통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및 약제비 절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공단·제약사 간 별도 계약 제도 적용 대상 약제를 선정하고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관련, 간병인 확보 문제에 대해 공단이 대책을 검토하고, 운동·예방접종 등 건강관리 사업을 통한 재정지출 보완책을 마련할 것

○ 제약사 환급 중단에 따른 위험분담제 계약(환급형)의 표준화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

○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이중약가제 확대 및 재정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

○ 본인부담상한제 신청제도를 개선하고, 미환급금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성장호르몬 주사’ 비급여 처방 등 관리부재에 따른 부작용 급증과 오남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외국인 부정수급 및 자격도용 방지를 위해 부정수급률이 높은 국가에 대한 별도 관리체계 및 진입 제한을 검토할 것

○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다학제 기반 건강관리를 도입하고, 수가체계를 개편하며, 전국민 주치의 제도와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

○ 희귀질환 치료제 사전심사 제도 관련, 선치료·후심사 도입과 희귀질환 치료제 심의체계 관련 구체적인 개선 로드맵 및 추진일정을 제시할 것

○ 고가항암제 등에 대한 실사용량 기준 청구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

○ 자가도뇨카테터 요양비 확대(지원 개수 상향 등) 방안을 검토할 것

○ 안정적 의약품 공급을 위한 제약사 공급의무 강화 제도화를 추진할 것

○ 제약바이오산업의 예측가능성 향상을 위해 복지부-공단-심평원과 협의를 거쳐 약가 사후관리 제도를 개선할 것

○ 의원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약가 인하 효과가 크지 않고 환자의 안전을 우선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함께 고려할 것

○ 혈액검사 과다 시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과잉진료 관련 한방진료 모니터링 등 개선을 추진할 것

○ 비용효과성 떨어지는 첩약 급여화보다 희귀·난치·중증질환자에 대한 급여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 CT 등 특수장비 제조 연한 공개 관련, 제조 연한 공개보다 임상영상검사 시 선량표기나 개인 피폭량 추적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

○ 현재 시행 중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의 재정 절감효과 미약하므로 연간 365회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건강검진 및 증진, 시범사업 》

○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기간 중 대기기간, 지급수준 산정근거 및 유급병가와 관련하여 검토할 것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요양기관이 중증환자를 배제하고 경증환자를 선별해 입원시킨다는 논란이 있으므로 제도를 개선할 것

○ 국가 암검진 사후관리를 위해 진료연계율을 높이고, 사후관리 대상자 기준을 마련할 것

○ 검진항목 주기적 타당성 재평가를 제도화하고, 항목 조정 기준을 마련하여 신규 항목(COPD, 안저검사 인공지능 유방암 판독기술 등) 도입을 검토할 것

○ 여성 건강권 확대를 위해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검진항목(자궁・유방초음파 등) 확대 및 조기 골밀도 검사 지원 등을 검토할 것

○ 초고령사회 진료비 증가와 관련하여 파크골프 등 시니어 스포츠를 국민건강증진 정책으로 활성화시킬 방안을 마련할 것

○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이 저조하므로 검진기관 접근성을 제고하고, 사전 홍보를 강화하며, 정밀검사 등 검진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폐기능검사 건강검진 도입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교육상담료 신설 방안을 마련할 것

○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감축한 인원의 79%가 2년 내 복구된 부분 관련, 공단의 효율성을 높인 바람직한 정책이었는지 검토할 것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환자 배제 문제에 대해 인센티브 제도 보다 강력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다문화가정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폐암검진 관련 흉부엑스레이에 AI기반 폐암 판독 보조시스템을 접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흡연・음주로 인한 급여비 지출이 최근 5년간 약 28조원에 달해 예방중심의 대책을 마련할 것

《 요양기관 》

○ 요양기관 부당청구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요양급여 부당청구 적발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네트워크병원과 간납 문제를 해결하고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회계 경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추진할 것

○ 사무장병원 개설에 관여한 중복 가담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건보재정이 누수되고 있으므로 공단 특사경 도입을 추진할 것

○ 환자 제보에 의존하는 부당청구 감시시스템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의료기관이 진료받지 않은 항목을 부당청구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이용자의 수정신청을 받지 않는 문제를 개선할 것

○ 부천 이룸병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청구 관련 공단이 지난 9월 11일 결론을 내리고 복지부에 현지조사 의뢰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실시할 것

○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므로 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 특정 약국체인(30여곳) 행정조사 과정에서 행정권 남용 지적에 대한 공단의 입장을 제시할 것

《 자격부과 및 징수 》

○ 외국인 부당수급 문제 관련,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 시 사업주가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못해서 부당수급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공단의 소득 조사가 국세청 세무조사와 중복되는 문제에 대하여 국세청 세무조사로 일원화를 검토할 것

○ KT EDI 서비스 종료로 1인 세무사의 보험사무 업무대행에 불편이 발생하므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

○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경우 매년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과 공단에 중복하여 소득신고를 하고 있어 불필요한 업무부담이 발생하므로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 소득신고를 국세청 연계자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특정 국가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보다 전체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관리 기준이 개선되도록 검토할 것

○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건강보험료 재산비중을 축소하고,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단일 부과체계로 전환하도록 노력할 것

○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무차별적 예금압류 조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한 보험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사업자등록 소득은 1만 원만 발생해도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불공정하므로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개선을 검토할 것

○ 보수총액통보서 수기 업무 처리 시 착오출금 등 오류 발생에 대한 통제 시스템을 마련할 것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탈락자(소득・재산 초과)에 대한 유예기간 설정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체계(등급별 점수제)의 역진성과 상한제의 불공정성을 해소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외국인 건강보험료 체납 및 결손 증가에 대하여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체납정보를 체류연장 심사와 연계하고, 출국 전 건강보험료 정산의무제를 도입하며, 국적별・체류자격별・체납 규모 중심의 맞춤형 관리체계 방안을 마련하고, 압류 등 징수 강화를 위한 체납자 정보 확보를 노력할 것

○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외국인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의무 교육을 제도화하고, 실시간 자격검증시스템을 보완(출입국 체류자격과 건강보험 자격관리 시스템 실시간 연동)하며, 부정수급자 재가입 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별 위험등급제・보건안전 사전평가제(HIA)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

○ 외국인 자격상실 후 수급과 관련하여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장에 적기 신고를 독려하고,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선별제외 기준 및 심의위원회 투명성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재산 보유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 부과체계를 검토할 것

○ 결손처분 및 체납세대의 절반이상이 사회적 취약 및 소액체납으로, 이러한 소액체납자(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납부를 유도하고 복지 연계 대책을 마련할 것

《 장기요양 》

○ 장기요양기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환수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 서울요양원 비정규직 위주 채용문제에 대하여 정규직 위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기관의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요양보호사의 장기근속장려금 근속기간 산정 기준 완화 등 전향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

○ 국공립 데이케어센터 확충 및 프로그램 다양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장기요양 위생원 업무범위 불명확으로 인한 환수처분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 온요양원 부당청구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치하고, 장기요양 부당이득금 악성채권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장기요양시설 내 직종 간 장기근속장려금 불균형 해소 및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대상에 고령친화식품이 포함되도록 검토할 것

○ 온요양원 업무정지 개시 이후 전산상계 중지 관련, 채권·동산 압류 등 징수 현황을 보고할 것

○ 현행 공단과 지자체의 장기요양기관 현장점검 체계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조사방식 개선 및 점검항목 세분화·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노인장기요양보험 특사경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학대 발생기관 등급평가·설치기준을 강화하고 허위 홍보 처분기준을 마련할 것

《 기관운영, 재정 》

○ 의료대란으로 인한 건보재정 2조 원 지출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대비할 것

○ 육아목적 단축·단시간근로자 공백 관련, 대체인력뱅크 운영 등을 점검할 것

○ 최근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원활한 노사관계를 위해 사측의 책임있는 역할을 할 것

○ 개인정보 관리 부실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 의료대란에 건보재정 투입으로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고, 건보재정에 대한 법상 국고지원은 20%이나 지원율이 점점 하락 중이므로 법정 정부지원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상임감사 공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것

○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불법유출 근절 방안과 개인정보 사고 관련 일벌백계를 위한 공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 담배소송과 관련하여 공단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의료대란에 건보재정 투입 등 정부 정책 결정 관련, 건정심에서 공단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

○ 공단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 지적에 따른 대책방안을 마련할 것

○ 공단은 국세청에서 소득자료를 제공받아 건보료를 산정하는데, 건보료 산출근거에 대해 공단이 국세청으로 민원을 전가하는 태도를 점검하여 조치할 것

○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및 국회 심의 구조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

○ 건강보험 적립금 운용수익률 개선을 위해 운용담당자 순환보직 최소화 및 전문트랙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

○ 공단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위해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를 포함한 독립적 통제기구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접근 로그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 강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것

○ 개인정보 유출·노출 사고에도 소홀한 정보보안에 대하여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및 개인정보 통제 시스템 강화하고, 전문인력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AI 고객상담 플랫폼 도입 관련 일자리 감소, 상담 효율성 저하, 시스템 오류 등 우려가 있으므로 대책을 수립할 것

○ 개인정보 유출 문제 관련 솜방망이 수준의 징계수위를 강화하기 위해 보통징계위원회(4급 이하)에 외부위원 30% 이상, 여성 30% 이상 포함할 것

○ 직원 자녀학자금 지원 관련 시정 조치할 것

○ 임직원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하여 징계양정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무선백도어 해킹 위협 증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보안 기본지침」내 무선백도어 규정을 포함할 것

○ 장기요양 서버과부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시간외 및 조기퇴근 정산근무 허위 확인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할 것

3) 국민연금공단

○ ESG 평가 하위등급 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지침을 마련할 것

○ 국민연금기금의 사모펀드 투자방식을 점검・개선할 것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종합조사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 및 신뢰성・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조사인력의 역량 및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사전고지제도를 도입할 것

○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서비스 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개선할 것

○ 사모펀드의 차입매수(Leveraged Buyout; LBO) 방식에 대한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를 제한할 것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20・30세대의 불신과 세대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자동조정장치 등 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방안을 검토할 것

○ 중증장애인 평균수명을 고려한 노령연금 조기수급 허용 방안을 검토할 것

○ 노령연금 급여액의 성별 간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을 연구할 것

○ 기금운용직 운용성과 개선을 위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최근의 「상법」 개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

○ 연구결과물의 발간·공개 등과 관련한 국민연금연구원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

○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재원이 조기에 소진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이자부담을 경감할 방안을 마련할 것

○ 가습기살균제사건 가해기업을 대상으로 적정 수준의 구상금을 청구하고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를 제한할 것

○ 국민연금기금의 적자 전환시점 등을 고려한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

○ 향후 연기금 국면별(기금 성숙기 및 기금 고갈기) 기금 운용 전략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것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주식보유비율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관련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 유지를 위하여 정책펀드에 대한 출자를 신중히 검토할 것

○ 노인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소득활동 연계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할 것

○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지원을 확대할 것

○ 비위 임직원 징계처분 등 임직원 윤리점검 시스템을 강화할 것

○ 외국 입법례를 고려하여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방지할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민연금공단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분할연금 소급청구 가능기간 단축 등을 검토할 것

○ 국민연금기금 해외투자 증가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 재조정 방안을 검토할 것

○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소득요건을 상향할 것

○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국고를 선제적으로 투입할 것

○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지침 (스튜어드십코드) 절차 준수 등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웹(Web)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 등 장애인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인적자본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투자사업 자문단 설치 방안을 검토할 것

○ 일산대교 매각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이재명 정부가 국내주식 투자 비중 등 연기금 운용에 개입한다는 사회적 우려 커지고 있으므로, 기금 운용의 독립성 원칙을 강화하고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기금운용 전문가 중심의 국민연금기금운용 위원회 구성 및 포트폴리오 설계의 독립성 보장 방안을 검토할 것

○ 영세사업자의 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근로자 보호 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 특별재난지역 주민의 국민연금 보험료 감면 등 직접적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장기화 방지 및 납부재개 유도 방안을 마련할 것

○ 노무제공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장가입자 편입 방안을 검토할 것

○ 국민연금 과오납금 자동 환급제도 도입 및 과오급금 사전 방지 방안을 검토할 것

○ 청년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한 선제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검토할 것

○ 자립준비청년 재무상담서비스 참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투자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국고 투입 논의 시 증세 등 재원 마련 방안을 함께 검토할 것

○ 청년 세대가 동의하는 연금 개혁에 대한 공단의 입장 표명할 것

○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세대별 수익비가 낮은 청년 세대의 부담 해소 및 세대 간 형평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

○ 청년 세대 불신 해소를 위한 교육·홍보 및 연금 개혁 과정에서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

○ 기금운용직 인력 이탈에 대한 원인 및 방안,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수익성과 안정성 등을 지키는 기금운용원칙과 기금운용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공단의 입장을 표명할 것

○ 대체투자 등에 대한 책임투자(ESG) 강화 및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할 것

○ 홈플러스 투자금의 구체적 회수 방안을 마련할 것

○ 지역균형발전 실천을 위한 이사회 지역 개최를 검토할 것

○ MBK 투자 잔여금액 회수 가능성 확인 및 사모펀드를 점검하고 투자 방식 및 원칙을 개선할 의향을 표명할 것

○ 2015년 공단 내부 투자위험보고서에 담긴 홈플러스 인수 위험성 인식 여부 및 투자 경위를 해명할 것

○ 투자대상 회사의 기업가치 제고에 중점을 두는 위탁 운용사 선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단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제시할 것

○ 고령층의 근로 유인을 저해하는 노령연금 감액제도에 대한 공단의 입장 및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35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 대한 조기연금 감액 완화 또는 전액 수급 허용 제도 정책적 검토할 것

○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 감액 제도 개선에 대한 공단의 입장을 표명할 것

○ 중증장애인의 노령연금 조기 지급 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 및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나설 의지를 표명할 것

○ 평균수명이 짧은 장애인에게 63세 이후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가 실질적 소득보장 제도인지 및 장애유형별 수급기간 격차 분석 결과를 확인할 것

○ 사별 후 재혼 시 유족연금을 전면 소멸시키는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로드맵을 마련할 것

○ 유족연금 중복급여 조정제도 완화나 합리적 제도 보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나 계획 상세 보고할 것

○ 청년층의 연금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직업훈련 크레딧의 구체적 도입방안 검토할 것

○ 크레딧 제도 사전지원 방식으로의 변경에 관한 공단의 입장을 표명할 것

○ 생애 최초 청년 연금보험료 지원 도입 시 공단이 추정하는 금액 및 지원사업 정착을 위한 비용을 추산할 것

○ 저소득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방안 및 고소득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 극대화 등에 대한 공단의 입장을 제시할 것

○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관련 외부 회계감사 및 모니터링 제도화를 추진할 것

○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이용자 확충, 전담인력 및 예산 적정성, 지원 내용 및 대상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반복적인 비위행위와 관련 재발방지 대책 및 조직문화 개선 방안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

○ 외부위원을 대폭 확대하고 노동조합원 등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징계 시스템을 마련할 것

○ 과오지급·미환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연금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

○ 기초연금 부정수급 관련 AI·데이터를 활용한 사후관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할 것

○ 연금 과오지급 방지를 위한 필요한 법률 개정사항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 관련 취약계층에 대한 감액 예외나 면제 등에 대한 보완책을 검토할 것

○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동시수급으로 인한 생계급여 삭감 문제에 대한 공단의 입장을 표명할 것

○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대상 포함 등 개선 필요성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할 것

○ 지역별 가입기간 및 수급액에서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 분석 및 불균형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

○ 저임금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차별 해소 및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평균 임금의 85% 수준 상향 계획을 마련할 것

○ 비연고자 숙소 확충, 노후 숙소 개선, 숙소 미사용 비연고자에 대한 교통비 등 수당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전북권역 지사의 과밀화 문제에 대한 공단의 입장 및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향후 계획을 마련할 것

○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관련 인력 증원, 공정성 및 맞춤형 지원 보장 방안, 인권침해 예방 노력, 사전 설명 등을 보완할 것

○ '26년 장애인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공단의 역할/수행 업무 및 본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예산 확보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마련할 것

○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의 가입률 제고 방안 및 기초 통계자료 확보 방안 마련할 것

○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제외 시 문제점 및 보험료 면제 협정 체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

○ 외국인 추납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단의 입장을 표명할 것

○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의 웹 접근성 품질인증 및 향후 기획 단계부터 접근성을 고려할 절차·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 노인과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서비스를 위해 별도의 접근성 전담 조직 운영을 검토할 것

○ 해킹 건수 관련 의원실 자료요구 답변 제출에 대한 공단의 입장 및 해킹 시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 방법 및 계획을 마련할 것

○ 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해 국고지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가평상담센터 폐쇄 철회 및 지역상담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공단의 퇴직연금 수탁운용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

○ 초고령사회, 노인 빈곤 및 국가채무 증가 대비를 위한 8대 사회보험 통합 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공단의 입장을 표명할 것

○ KT 대표 선임 과정에서 공단이 인사개입을 한 것 아닌지에 대해 해명할 것

○ 영구 비공개보고서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할 것

○ 기금운용에 전문성이 없는 상근전문위원이 계속 근무하는 것에 대한 공단 이사장의 견해 표명를 표명할 것

○ 가습기 살균제 가해자에 대한 강제집행, 손해배상소송 등 실질적 조치 이행 여부 및 실질적 징수 대책을 마련할 것

○ 수급자 안부 우편 서비스 수도권, 대도시 지역 확대 및 타 기관 서비스와의 중복 여부에 대한 공단의 입장을 제시할 것

○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대출 상한선 조정 필요성에 대한 공단 입장을 표명할 것

○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추진을 검토할 것

○ 2023년 국민연금의 외환 시장 영향 보고서에 따른 환율 변동률 기여도 상승에 대한 대책 및 국내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외투자와 국내 투자의 비율 재조정할 필요성을 검토할 것

○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 서비스의 신뢰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독립적 회계감사 및 모니터링 제도화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

○ 연금 과오지급 예방을 위한 지급 전 자동검증시스템 도입의 구체적 일정과 예산 확보 계획을 마련할 것

○ 소멸시효 만료 환수 불가능 처리된 환수금에 대한 특별 관리 대책 및 법적 허점 보완을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지연으로 인한 시효완성' 문제에 대한 공단의 책임을 표명할 것

○ 고의·상습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부정수급 전담 조사팀 신설 또는 검찰·경찰 공조체계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

○ 수급권 변동 검증 체계 및 환수시효 문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및 연금관리 체계 복원 방안을 보고할 것

○ 공직기강 해이 반복에 대한 감사 후속 조치의 재발 방지 실효성 및 사후관리 체계 작동 방식에 대해 보고할 것

○ 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으로 참여 시 발생 가능한 재산권 침해, 시장 왜곡 문제 등에 대한 공단의 입장을 표명할 것

○ 크레딧 사전지원 전환 시 재정 부담의 주체별 분담 구조 검토 및 청년 세대 지원 철학을 반영할 것

○ 환율 상승 원인으로 지목되는 해외투자 대신 국내투자 비율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공단의 입장을 표명할 것

○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대면심사 강화, 심사 투명성 및 소통 강화 등 장애등록심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KT 헬스케어 매각 관련 대주주로서 기업가치 평가 및 공단의 입장을 표명할 것

○ KT를 대상으로 한 비공개 서한 발신, 면담, 중점관리사안 지정 등 주주 활동 수행 여부에 대해 보고할 것

○ KT의 반복적 기업 리스크(소액결제 해킹 등)에 대한 국민연금의 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

○ 이재명 정부 목표 대비 국민연금 탈석탄 이행 시점의 시기적 부적절성 여부를 해명할 것

○ 전환금융, 선제적 투자전략 등을 통한 탈석탄 로드맵 가속화 및 공약 이행 가능성 여부를 검토할 것

○ '2030년 이전 단계적 석탄투자 감축 계획 수립' 및 '국내 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

○ 거래증권사 선정 시 '책임투자 보고서 발간 건수' 중심 평가의 형식적 ESG 평가 우려 해소 및 실행 지표 반영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

○ 거래증권사 선정·탈락 사유를 공개할 것

○ ESG 경영을 저해하는 거래증권사에 대한 사후 평가 및 제재체계 마련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

○ 무선백도어 해킹 대비를 위한 규정 보안 계획 및 사전 예방적 대응 방안 마련을 마련할 것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경피적 승모판막 성형술(TEER) 시술 관련 행위 및 치료재료 급여 결정신청의 심사와 검토가 지연되는 구체적 사유에 대해 설명할 것

○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관련, 시범사업에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는 평가 방식과 심사 기준 등을 적용할 것

○ 폐동맥고혈압 치료제와 관련하여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 약제의 선정 기준과 절차, 폐동맥고혈압 치료제의 급여 검토 진행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제시할 것

○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관련 비식별화 조치의 안정성 검증의 방식 및 재식별 위험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모의해킹 테스트 결과 3년 연속 동일 취약점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개선방안과 근본적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관련, 의원급에서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통계 체계 강화할 것

○ 한약사의 자동차보험 청구 배제 문제에 대해 제도를 개선할 것

○ 2002년 여대생 청부살인사건 연루된 모 심사위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하고, 임명 관련 감사원 감사할 것

○ 금품수수·이해충돌 심사·무허가 겸직 등 공정성 및 투명성 훼손 및 직원 기강해이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기강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할 것

○ 주요 요직 및 의사결정 위원회에 특정대학 인맥 알박기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

○ 퇴직 후 대형 로펌행, 이해충돌과 전관예우 관행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 혈액검사 급증에 대해 선별집중심사에 항목 포함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암 환자의 삶의 질 제고와 존엄성을 위한 통증치료 보험급여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젊은 중증 강직척추염 환자의 치료에서 생물학적 제제와 JAK억제제의 효과가 동등하고 후자의 약가가 더 저렴함에도 생물학적 제제 치료 실패 이후에만 급여를 인정하고 있는데, 두 약제를 동일선상에서 급여를 인정하여 환자별 최적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최근 5년간 의료기관 건강보험 부당청구 5배 급증한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장애인 건강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 수행 및 물리치료사·재활치료사·사회복지사 등을 포함한 다학제적 접근을 고려하고, 매년 수행하는 연구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 건강 관련 연구로 배정하며, 연구 및 심사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 또는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노인학대 요양병원에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평가 체계를 개편하도록 계획을 마련할 것

○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난임시술 유형별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기관의 범위, 평가기준 지표, 정보 공개 범위를 개선하고, 시술 건수가 적은 기관에 대한 별도 평가 기준 마련하며, 자료 미제출 기관에 대해 별도 조치를 하고, 난임시술 의사 보수교육 이수율을 향상시킬 방안을 마련할 것

○ 약물 오남용, 중복처방 등 국민 약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DUR 의무화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정신과의원 원내 처방 후 직접조제 하는 경우 조제단계에서 DUR 점검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심사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민 알권리를 위해 병원 표준화 사망비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할 것

○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임신중지에 대한 항목 추가 방안을 검토할 것

○ 중증의 결절성 양진 환자에 한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치료 선택권을 보장할 것

○ 콜린 의약품의 급여기준 및 허가사항을 준수한 적정처방으로 관리할 것

○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 치료제의 경우 신속한 급여 등재가 핵심으로, DLBCL 2차 치료에서의 CAR-T 치료제 급여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할 것

○ 상임감사, 기획상임이사 공모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

○ 비급여 진료비 부당 청구 비율이 높은 기관에 대한 직권 심사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환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료비 확인 제도를 적극 홍보할 것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상모형 등을 적극 검토할 것

○ 발달지연이나 발달장애 치료의 경우 R코드와 F코드 등 상병코드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발달지연・장애 아동 진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세밀한 상병코드를 마련할 것

○ 자동차보험 세트처방 심사기준 마련과 평가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

○ 대리수술, 유령수술과 관련된 건강보험 부당청구행위를 개선하고, 적발기관에 대해 실효성 있는 현장조사와 환수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

○ 공적마일리지가 상당수 단순 유효기간 만료 또는 퇴직직원에게 귀속되어 소멸되는 것으로 확인된 바, 공직복무관리업무 취약분야(국외출장) 자체점검 이행과 함께 권익위의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활용한 사회 공헌 활동 의무화, 효율적 사용을 위한 항공사 협업 노력에 대한 권고 사항을 지키는 등 사용 현황 관리할 것

○ 비급여 국소마취제 등을 사용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이중부당청구 의심 행위에 대해 이중청구 의심 기관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부당 청구액을 환수할 것

○ NGS검사 장기·전주기 비용-효과성 평가 체계 도입과 해외 연구·임상 근거를 포함한 비용-효과성 평가를 통한 보장성 확대에 대해 검토할 것

○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과 환자 삶의 질을 높여주는 신경성형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할 것

○ 조기 유방암 재발률 감소를 위한 국가적 대책으로 조기 유방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 급여화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조기 유방암 치료제 급여 검토 시 주요 평가요소에 재발 방지 효과성 등을 함께 고려할 것

○ 담도암 치료제 임핀지주 급여 등재에 대한 입장과 추진 계획, 탄력적 ICER 적용 검토 계획을 마련할 것

○ 국민동의청원 1호 안건인 VHL 폰히펠-린다우증후군 치료제, 웰리렉정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요구도에 대한 의견, 두 차례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논의에서 급여 기준 미설정으로 결정한 이유, 질환의 특수성을 반영한 검토 방식과 현재 진행상황 및 해당 치료제 급여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검토 계획을 제시할 것

○ 상근심사위원장의 인사관리 및 서울에서 회의와 심사가 이루지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혁신적 양성 위암 표적치료제의 급여 적용 추진 의의와 국가암관리 정책 반영 방향을 제시할 것

○ 시신경척수염 치료제는 1·2·3·4차로 나누어져 있고, 재발 후에야 신약을 투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적기에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없으므로 급여기준을 개선할 것

○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중 주사제·경구제 교차투여 및 운동기능 평가 등 환자 상태를 고려한 급여기준 개선을 검토할 것

○ 당뇨병 신약의 급여화에 대한 입장 및 최근 5년간 경제성평가를 통해 평가된 당뇨병 치료제 리스트 등을 제출할 것

○ 비만 치료제 급여화에 대해 일본처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 요로상피암 치료제 급여화에 대한 입장 및 향후 계획, 위암 말기 표적치료제 급여화 진행 현황을 제시하고,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의 사전 심사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중증호흡기질환 적정성 평가 관련 흡입제 처방률 하락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며, 낮은 흡입기 처방률의 질 개선을 위한 심평원의 견해를 표명할 것

○ 최근 개정된 약평위 운영규정에 위원장 선출방법, 소위원회 구성 및 결정권과 환자단체 추천 인원 수 축소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국민청원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리브리반트주의 검토 진행상황, 리브리반트주 급여화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암질심 심의 반영 여부, 급여화 필요성 및 경제성평가 방향 및 향후 계획을 제시할 것

○ 비급여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의 비상식적인 가격 책정으로 인한 국민의료비 지출 영향과 관련하여, 의료질평가 지표에 '뇌사 추정자 신고율'을 본지표로 반영할 것

○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 TAVI) 관련 적용 연령에 대한 급여기준을 완화할 것

○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관련, 국내에 등록된 희귀질환의 치료제 허가·급여 등재 현황·급여 미등재 및 허가-급여기준 상이 등에 대해 검토하고, 희귀질환 사각지대 실태를 파악하여 축소 방안을 마련하며,

폐기능 건강검진 이후 관련 질환자의 치료 연계 실효성과 적정성 평가에서 일차의료기관의 낮은 흡입약제 사용률을 고려하여 교육 상담료를 신설할 것

○ 행정기준에 의한 과도한 진료비 삭감에 대한 심평원의 입장을 밝히고, 심사 강화를 위한 임상 근거 중심의 전문심사체계로의 전환 방안을 마련할 것

○ 항생제 오남용과 내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소아청소년에서 항생제 사용이 급증하고 있어 유·소아 급성 중이염 모니터링, 처방일수 등 지표를 세분화하여 관리할 것

○ AI 기반으로 개발한 부당청구 감지시스템 현안을 통해 AI 기반 사업 설계 시 충분한 예산, 인력 및 기술 검토를 선행한 뒤 사업기획 추진할 것

○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관련, 서류제출 행정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성장호르몬 주사 부작용 급증 및 오남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VHL 폰히펠-린다우증후군, 한랭응집소병 등 희귀질환 치료제에 건강보험 적용하고 신약 등재 소요기간을 단축할 것

○ 방문진료 참여율 제고를 위해 중소병원 부담을 완화할 지원책을 마련할 것

○ 의과-한의과 동일(유사) 행위인 한의과의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관련,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대해 결정행위 조정신청 중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한 지체 사유와 향후 계획을 제시할 것

○ 임신·육아를 위한 단축·단시간 제도의 정착을 위해 퇴직자를 활용하여 대체 인력을 추가 배치할 것

○ 건강보험 임시등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AI 의료기술에 대해 미국이나 영국처럼 국내 AI기반 의료기기의 새로운 수가 모델 도입을 고려하거나 이에 대해 연구할 것

○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에 Pola-R-CHP 병용요법을 도입할 것

○ 항암제 병용요법 급여 개선 진행상황을 검토하고 급여를 확대할 것

○ 중증화농성한선염 환자들의 치료옵션 확대를 위해 신약의 급여화를 신속히 검토할 것

○ 신경섬유종증 치료제 코셀루고의 급여기준을 확대할 것

○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약제성과평가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립할 것

○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특혜 의혹 진상 파악을 위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 자동차보험 심사에 있어 경상환자의 약침술·첩약 등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할 것

○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것

○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급증과 과잉진료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특수의료장비 노후화에 대한 정보(제조연한 등) 공개 시 영상 품질, 장비 적정 관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공개할 것

○ 자동차보험 합의금 수령 후 2년 이내에 동일 병명으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는 등 건강보험 누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타이바소흡입액 비급여 결정 사유를 설명할 것

○ 작년 국정감사 시 제기된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 관련, 심평원의 자생한방병원 밀어주기로 수백억 원의 수익을 거둔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

○ DUR의 중복 금기 처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험도별 경고 구분과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실시간 연계 등을 개선할 것

○ 인공지능, 디지털 치료기기 임시등재 제도에서 과도한 청구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전문심사 항목 선정기준과 퇴출기준이 불명확하며, 전문심사 비율은 줄었지만 심사항목은 늘어나고 있어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 하에 전문심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간암 치료제 임핀지-이뮤도 병용요법 관련 투약비용비교 기준의 재설계 검토 진행 상황, 전문가 검토 범위・방법, 향후 비용효과성 평가 반영 시점과 절차와 급여 등재에 대한 구체적 추진 계획을 제시할 것

○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관련, 응급환자 수용률, 중증환자 진료비율 같은 핵심지표 강화 및 지역별 진료권 세분화를 고려할 것

○ 무선백도어 해킹 등 신종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실거래 약가 조사 약가 인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등의 시행 시기가 다르므로 통합할 것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 추진단 운영을 체계화하고 PM 등 소속 직원의 해외출장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의 사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PM 블라인드 채용방식 및 절차를 개선할 것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 관련 우주의학 분야 과제평가단의 전문성을 제고할 것

○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완화할 것

○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상생 협력을 고려한 지역의료연구역량 강화사업(R&D)을 추진할 것

○ 의료기관 특화 서비스 로봇 연구개발(R&D) 사업 추진과 병원현장 적용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장애인·노인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기기 실용화 연구개발(R&D) 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등 관리를 강화할 것

○ 장애인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확대할 것

○ 수요자 중심 연구개발(R&SD) 시범사업을 확대할 것

○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제약기업 연계를 강화할 것

○ 바이오헬스 융복합 인재양성사업에 한의사 참여 허용을 검토할 것

○ 의정갈등으로 붕괴된 의사과학자 양성체계를 복원할 것

○ 공공의료에 대한 철학을 바탕으로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변경 타당성을 재평가할 것

○ 의료해외진출 신규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국제의료사업 전문위원(GHKOL) 심화컨설팅 지원사업의 적정 추진 여부를 조사할 것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등 임직원의 불요불급한 국외출장을 자제할 것

○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임직원 복무기강을 확립할 것

○ 보건의료분야 연구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할 것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임직원의 항공 공적마일리지 사용 현황을 점검·관리할 것

○ 스마트병원 기술 및 로봇 분야 연구개발(R&D)을 추진할 것

○ 의료기관 회계기준사업 인력을 증원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

○ 보건의료분야 연구비 관리감독체계를 개선할 것

○ 중소화장품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개선할 것

○ 외국인환자 급증을 고려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유치행위를 예방할 것

6)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공익활동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노인역량 활용사업은 40%까지 확대할 것

○ 노인일자리 수요충족률이 저조하므로 지속적으로 노인일자리를 확충할 것

○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노인공익활동(공익활동) 활동비를 인상할 것

○ 취업 지원사업(취업알선형)과 고령자친화기업에 대한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 취업 지원과 고령자친화기업의 중도포기자 통계를 관리할 것

○ 취업 지원 사업과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에 장기 취업 유지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경로당 급식 지원의 노동 강도 등을 고려하여 노인역량활용(사회서비스형) 사업으로 확대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할 것

○ 참여자 대비 부정수급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 감독 및 점검 체계를 강화할 것

○ 부정수급 환수 이행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마련할 것

○ 노인일자리로 연계된 폐지수집 노인이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으므로, 정책 대상자의 욕구 분석을 통하여 일자리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

○ 노인일자리 사업 전문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담당자의 저임금, 짧은 근속 기간,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할 것

○ 2020년부터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829명으로 집계되었는데, 보행·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면접 심사 등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참여노인 선발기준·절차를 재검토할 것

○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검토할 것

○ 2026년 지침 내 노인일자리 담당자 경력인정 범위, 기준을 마련할 것

○ 노인일자리 담당자 제수당 예산항목을 인건비로 편성할 것

○ 노인일자리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것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인력 및 전문가를 확충할 것

○ 민간형 노인일자리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체사업단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할 것

《 노인일자리 참여자 보호 》

○ 노인일자리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으므로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 안전사고 다발 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조치와 함께 안전전담인력을 배치할 것

○ 수행기관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취약하므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맞는 위험성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

○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로 2020년 대비 2024년 안전사고가 2배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관리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노인일자리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위험성 평가 도구와 매뉴얼을 마련할 것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발기준의 활동역량 비중 상향을 검토할 것

○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상해보험·산재보험 등 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

《기 타》

○ 홈페이지 도용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 의뢰 계획을 수립하고 보안 침해 사례 대응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노인일자리 관련 허위 AI 콘텐츠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

○ 공적 마일리지 관리 규정을 재정비할 것

○ 기관 업무보고 자료에 직급별, 성별 임직원 현황 및 장애인 고용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7)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

○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 발급대상 아동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복지멤버십의 전반적인 목표를 현실화 하고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 복지멤버십-서민금융 연계 사업의 실효성 부재 및 승인여부 확인불능 구조 개선방안을 보고할 것

○ 복지멤버십 전국민 가입을 위한 단계별 목표 관리제 도입을 검토할 것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 정보 민간 개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도록 복지부 소관 부서에 관련 내용을 공유 및 지원하고,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국가 정보시스템 사업에 기술력 있는 기업이 참여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다각도적인 노력을 할 것

《 사회서비스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활동미감지 시 대응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에서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매뉴얼을 검토해서 보고할 것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기자 수요 급증 및 응급관리요원 업무부담 과부하 상황을 고려하여, 응급관리요원 증원 및 대기자 적체 해소방안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정보연계와 활용을 위하여 노력할 것

○ 장애인건강검진기관 및 건강주치의제도 등 보건의료기관과의 정보연계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위기청년지원시스템 적기구축 및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바우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부정수급 현장조사시 지침을 숙지하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장애 유형과 제도적 상황을 고려하여 사례별 판단을 할 수 있는 내부 조사 원칙 및 지침을 마련할 것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연말정산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추진 관련, 차질없는 진행 및 홍보를 강화하고, 현재까지의 진행현황을 보고할 것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자바우처시스템 장애기간 중 바우처 잔량 초과결제 관련, 이용자에게 부당함이 없도록 전향적 대책을 마련할 것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중단으로 이용자, 지자체 공무원 등의 불편이 매우 컸다는 점을 유념할 것

《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아동 》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아동의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읍·면·동 복지 인력 확충과 아동학대 사례관리대상자를 포함한 보호체계 전환을 위해 시스템 기능을 개선할 것

○ AI를 통한 복지 대상자 욕구 파악 기능개선 및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복지위기알림앱과 129콜센터간 제공되는 서비스가 중복되고 있어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고독사 예방을 위해 기술적 역량과 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구체적 정책설계와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

《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

○ 민간의료기관 보안관제 가입을 지원하는 방안 및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디지털돌봄시스템 복구지연으로 독거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등 실시간 모니터링 혼란 야기, 향후 정보시스템 등급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

○ 반복되는 해킹 위협으로부터 실시간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

○ 보건복지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통합 및 AI인퍼런스 클라우드 센터 구축을 노력할 것

《 기　타 》

○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률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 장기 수탁사업을 고유사업으로 전환할 것

○ 공적 마일리지 관리 규정을 재정비할 것

○ 기관 업무보고 자료에 직급별, 성별 임직원 현황 및 장애인 고용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8)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기관장 관련 내부 징계규정을 마련할 것

○ 내부 교수진 확충 방안 마련과 강사 활용 절차 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종사자 대상 보수교육을 체계화하고 및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인재원 조직문화 진단결과 재발 방지 계획을 마련할 것

○ 임원 징계 종류 등 내부규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것

○ 청년 WHO 진출을 위한 교육·멘토링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공적 마일리지 사용 규정을 재정비할 것

9)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기관 운영 》

○ 보건교육사 자격심의위원회 대면 회의 관련 회의비용 과다 지출 및 증빙 미비에 따른 회계처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정건전성 악화 관련 중장기 대책 및 흡연예방이나 금연정책이 아닌 목적 외 지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장치 등을 검토할 것

《 건강증진사업 》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집행률 제고와 지원단가 현실화를 위해 노력,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24년 농어촌특별회계에서 지특회계 자율계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이므로, 농어촌특별회계로의 복원에 대해 검토할 것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 앱 '채움건강', '오늘건강', '금연길라잡이' 등 개발원 운영 앱의 장애인 접근성 인증을 위해 노력할 것

○ 개발원 연구과제 결과 평가 및 발표 지연 문제 관련, 내부통제와 관리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보건소 만성질환관리서비스와 타 사업 간 중복이 없는지 검토하여, 유사 사업 간의 통합 방안을 검토할 것

○ 핵심 사업(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미래 건강 시스템,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성과를 제고하고, 실효성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건강수명 연장,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

○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관련 시스템 노후화 대책을 마련하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채움건강(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오늘건강(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연구 부정행위 적발 체계를 마련할 것

《 담배규제정책 및 금연사업 》

○ OTT를 통한 청소년 흡연 조장 문제 개선을 위해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액상형 전자담배 무인 점포 실태를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확대할 것

○ 담배사업법 상 담배 정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한 광고·판촉,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등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

○ 지역금연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운영자에 유리한 공모구조와 평가지표 개선 및 사업 실적에 대한 정확한 평가, 지원 사업 참여기관 관리부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보건소 금연상담클리닉 사업을 검토하고 금연 성공률을 제고하도록 할 것

《 음주폐해예방사업 》

○ 게임, 음료와 콜라보로 음주를 조장하는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와 주류 광고 상습 위반 기업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주류 광고 및 마케팅 모니터링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 음주폐해예방사업의 예산·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10) 국립암센터

○ 국가암데이터센터 분석 인프라 확충 및 국가 암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할 것

○ 장애인건강검진 필수장비 구비 계획을 수립할 것

○ 호스피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립암센터 노후 의료장비를 개선할 것

○ 전문의 중심 필수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에 노인암, 청년암을 포함하여 수립할 것

○ 폐암 검진사업의 농어촌 확장을 위한 순회 검진 사업을 검토할 것

11) 대한적십자사

○ 이산가족 상봉·교류 재개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제안을 위하여 노력할 것

○ 영주기독병원 산모 사망 사건 관련 혈액 모니터링 구축 및 공급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항응고제 오투입 관련 헌혈자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

○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F-RBC) 및 성분채혈혈소판(A-PLT)의 보급률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 혈장분획센터 혈장 냉동창고 신설 사업의 자구책을 마련할 것

○ 부산혈액원 이전 신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

○ 헌혈기념품(영화관람권) 입찰 시 유찰 사유를 보고할 것

○ 적십자병원의 임금 지연 및 적자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적십자병원의 의료인력 구인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헌혈 시 승진심사 가점 부여와 같은 직원 인센티브를 개선할 것

○ 내부 직원 인권 보호 및 청렴성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할 것

○ 징계부가금의 기금화를 통한 윤리교육 강화 등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

○ 공적 항공 마일리지의 활용 현황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적십자 표장 사용 관련 홍보 및 계도 방안을 마련할 것

○ 연휴 기간 등 혈액 보유량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

1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25년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 감소에 따른 예산 부족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

○ 의료윤리 문항 출제 확대가 필요해 보이며, 외국 윤리문항 출제비율 사례 조사 후 보고할 것

○ 공적 마일리지 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것

13) 한국장애인개발원

《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 》

○ 공공후견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할 것

○ 발달장애인 권리구제를 위한 인력기준 미충족과 변호사 인력 부재 개선할 것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및 관리체계를 정비할 것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지원율 제고 방안 마련할 것

○ 장애인 학대 지원체계 정비를 통해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접근성 개선할 것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발언점검 및 자질검증할 것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추진 계획 점검 및 공유할 것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시 '이주 장애아동'을 사업대상으로 포함할 것

○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 현황파악 및 활성화 대책마련할 것

○ 형사사법절차 지원 및 수사재판과정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하고 권리구제 업무인력 기준을 준수할 것

《 정책지원 》

○ 연구기능을 강화할 것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원의 역할을 다할 것

○ 장애인 개인예산제 기준강화를 통해 자율성 강화할 것

○ 장애인 재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 검토할 것

○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준비에 전문기관으로써 역할을 다할 것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속방안 검토할 것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마련 계획 보고할 것

《 직업재활(일자리)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을 위해 역할 수행할 것

○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을 통해 포용적 일자리 제공 가능성을 검토할 것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재택근무 및 디지털 직무를 개발할 것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실효성 제고 및 관리감독 강화할 것

○ 직업재활 훈련수당 및 사업체 지원금 격차 개선할 것

《 편의증진 및 BF인증 》

○ BF인증 심의위원회 관련 장애인당사자 참여방안을 보완할 것

○ BF인증 사후관리 및 재인증 등 BF인증운영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것

○ BF인증 심의위원 교육 인정기준의 사후 변경 등 행정편의주의 개선 및 탈락 장애인위원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

○ BF 교육 신청, 심의위원 위촉 과정 등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 체계적인 운영내규를 마련할 것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셀프주유소 및 전기차 충전소를 포함할 것

○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면적 기준 폐지와 준공 연도 예외에 대한 부분을 개선할 것

《 기관운영 》

○ 공적마일리지 사용 현황을 관리할 것

○ 국제장애인협력사업을 강화할 것

○ 기관 업무보고 현황자료에 직급별, 성별, 구분하고 장애인고용 현황을 포함하여 기재할 것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책무를 다할 것

○ 여성 고위직 및 관리자 임용 확대를 노력할 것

○ 회계 및 보안관련 비위의 재발 방지 계획을 보고할 것

14)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해외사무소 관련 》

○ 해외사무소 법적 지위 확보 방안, 파견직원 보호 및 안전관리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

○ 해외사무소 사업 회계 투명성, 감사 및 평가 통일성을 강화할 것

《 인도주의 사업 등 관련 》

○ 북한 보건의료 지원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검토할 것

○ 기부금품 수집 및 별도 의료물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할 것

○ 공적 마일리지 사용 현황을 관리할 것

15)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기부식품등제공사업 》

○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격차, 현장 중심의 제도 보완을 위해 노력할 것

○ 푸드뱅크 배분 지역불균형 및 종사자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

《 개인정보 및 전산 운영 》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

○ 정보자원 이전계획 추진에 대해 보고할 것

《 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 》

○ 케어뱅크 미래 수급불균형과 봉사자 보상 등 대응책을 마련할 것

○ 케어뱅크를 전국단위로 확대하고 운영체계를 개선할 것

《 사회복지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갑질예방 및 관련 직능위원회 회의에 대해 보고할 것

《 기관운영 등 》

○ 육아휴직 중 영리활동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국외출장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관련 지침 개정을 검토할 것

○ 업무보고현황 직급별·성별 구분을 명시할 것

○ 공적마일리지 사용 현황을 관리할 것

16) 국립중앙의료원

《 신축 이전 》

○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할 것

○ 국립중앙의료원의 정부 위탁사업을 위한 공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기관 운영 》

○ 유휴공간을 활용한 어린이집 신설·운영을 검토할 것

○ 시니어 의사 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체계 구축사업의 실적 개선 및 지역·진료과목 불균형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예술단에 대한 정규 사업화, 고용 연장을 검토할 것

○ 장애인건강검진 당연지정기관으로서,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 관련 장애인 여부 판단 시스템 구축과 개인정보 보호를 병행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건강검진 시설 및 필수 장비를 구비할 것

○ 겸직 관리 및 자격 검증 등 인사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겸직 허가 여부 확인 없이 임용하는 등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다루는 개인정보의 양이 방대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

○ 국립중앙의료원의 정책지원 역할 강화를 위해 센터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병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업무지원을 강화할 것

○ 분만취약지 산모의 건강한 분만환경 조성을 위해, 인프라 확충 중심으로 추진되던 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산부인과 전문의 외에는 지원이 불가하고 운영비, 시설장비 개선 등 예산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것

○ 치매 관련 공식 국가통계에서 조사기관 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치매환자 의료기관 이용 건수가 특정 연도에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등의 문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할 것

○ 제5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에 치매환자 구강돌봄(치과진료, 구강질환 예방, 생활교육 등 포함)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

○ 사용연한 경과한 중앙치매센터 전산실 UPS 배터리를 교체할 것

○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소방청과 연계하여 실시간 정보 공유 및 전원 조정 체계를 구축할 것

○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현장 중심 지표로 개선하고, 병원 전 단계 환자 분류체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안정적 상시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할 것

○ 취약지 응급영상판독 지원사업 관련 휴일·야간당직비 증액 및 휴일·야간 당직인력 증원 방안을 마련할 것

○ 의료기기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환자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

○ 전공의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진행 상황을 검토할 것

17)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신의료기술평가 》

○ 선진입 의료기술 트랙으로 진입한 기술들이 비급여 상태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

○ 규제기관이 아닌 혁신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

○ 신의료기술평가 시 외부 전문가, 산업계, 환자단체 등을 참여키는 등 개방화 방안 마련할 것

《 의료기술재평가 》

○ 의료기술재평가 결과가 ‘권고하지 않음’인 의료기술에 대하여 급여 조정, 퇴출과 같은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

○ 의료기술재평가 대상 선정과 평가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산하 편입 이후 이러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할 것

○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TAVI)의 급여기준을 조정할 것

《 기관운영 등 》

○ 제보로만 이루어지는 연구부정행위 적발 프로토콜에 대하여 보완할 것

○ 기관 업무보고 자료 내 직급별·성별·장애인 고용 현황을 기재할 것

○ 기관 내 여성 고위직 및 관리자 비율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

○ 공적 마일리지 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것

18)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에 조산, 저체중아 등 고위험군이 제외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

○ 환자대변인 일부가 의료기관 측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할 것

○ 진료과목별, 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율 편차가 있으므로, 개시율이 저조한 의료기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할 것

○ 비급여 의료기관 등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징수 및 대불재원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손해배상금 대불금 구상률을 제고할 것

○ 조정 결과의 강제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공적 마일리지 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것

19) 한국장기조직기증원

○ 장기기증 관련 허위 정보 대응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할 것

○ 장기기증 동의율을 높일 수 있는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DCD 관련 인식 제고와 뇌사추정자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기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선 순위자 서면동의가 불가능한 사유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 기증자 보상 확대 마련 및 기증자 유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예우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지자체 간 장기기증 제도 운영 편차 보완을 통해 보편적 예우 서비스를 확대할 것

○ 공적 항공 마일리지 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것

20) 한국한의약진흥원

《 한의약 육성 전략 전환 》

○ 조제한약 중심이 아닌 한약제제산업 중심으로 육성전략을 전환할 것

《 한약재 정보제공 》

○ 한약재 정보제공 사업의 목적과 대상의 명확화와 관련 단체와의 소통할 것

《 한약제제 표준화》

○ 한약제제 제약사들의 제품 개발 및 산업 발전을 유도하고 국외에서도 의약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할 것

《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

○ 한약재 수급조절 관련 특정기업 특혜의혹에 대해 검토할 것

○ 국산한약재 수매실적 증빙자료 인정 기준을 개선할 것

《 한의약사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

○ 품목허가 등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개선할 것

《 한약소비실태조사 》

○ 한약소비실태조사에 조제전담인력 배치 항목 복구하고 전수조사할 것

《 약침약제 제도화 》

○ 약침약제에 대한 제약화 및 허가제 전환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공적 항공 마일리지》

○ 공적 항공 마일리지 사용 현황 점검하고 관리할 것

2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의료기관 인증 》

○ 정신의료기관 인증 조사위원 구성 및 항목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중소의료기관의 인증 참여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

○ 진료지원 간호사 관련 의료기관 인증기준 신설을 검토할 것

○ 환자안전사고 개선을 위해 약사 조사위원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 항생제 사용 관리에 대한 의료기관 인증기준을 확대하고 항생제 사용량을 의료기관 평가항목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요양병원 인증기준 내 감염 관리 강화 대책을 검토할 것

○ 기관 이사회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공적 마일리지 사용 현황 관리 방안을 검토할 것

《 환자 안전 》

○ 지역환자안전센터 확대 지정 및 운영 방안을 검토할 것

○ 2차 환자안전종합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

○ 환자안전 예산 전용 사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환자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환자안전 전담인력 기준 확대를 검토할 것

22) 한국공공조직은행

○ 인체조직의 미용성형 목적 활용에 대한 바람직한 관리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복지부 및 식약처와 협의할 것

○ 공적 항공 마일리지 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것

23) 아동권리보장원

《 입양 관련 》

○ 이관될 기록물의 소독, 편철 등 작업 관련 예산 추계, 필요성 등 보고할 것

○ 입양기록물, 아동카드 등 중요 자료의 검수 및 관리체계로 내부 전담 TF팀 등을 통해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시 입양인들의 현장 의견 반영할 것

○ 25만권 입양 기록물 전수 스캔을 위한 연차별 계획 수립 및 우선순위 등을 토대로 실행할 것

○ 개편된 공적입양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력 및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정보공개청구제도 담당인력을 현실화하며, 처리 절차 단축 및 경찰과의 공조 등 구조적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친생부모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의료상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입양정보공개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 검토할 것

○ 임시서고와 관련한 문제사항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과 입양기록물의 안전한 보장을 위한 철저한 데이터 관리 및 기록관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국회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는 등 노력할 것

○ 전산화 사업 종료 이후 민감정보 파기 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으로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

○ 입양기록물 전수조사 및 이관·보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고, 철저히 관리할 것

○ 입양기록물이 임시서고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시 소독·탈취 및 보존처리 등 절차로 시간이 지연되어 입양정보공개 열람이 중단되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적 지원을 병행할 것

○ 입양기록 불완전 시 고아호적 조작, 신원 바꿔치기 등으로 입양기록이 불완전하거나 정보제공이 어려운 경우 가족찾기 사업 추진을 검토할 것

○ 입양인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입양기록 검토와 실태 연구를 추진할 것

○ 입양정보공개청구 친생부모 동의여부 확인을 우편발송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 이에 대해 입양정보공개사이트 개선 및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해외입양인 2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을 검토할 것

○ 2025년 입양정보공개청구 매뉴얼 내용 중 입양정보공개 청구 횟수 제한 내용을 즉각 삭제할 것

○ 가족찾기 성공률 제고를 위해 경찰관서 협조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입양기록관 건립 계획 지연과 임시서고 안정성 보완적 마련, 신속한 입양기록관 건립 추진을 검토할 것

○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정보공개청구 웹사이트 개편과 관련하여, 웹접근성 보장 및 웹접근성 품질인증 계획 수립하여 보고할 것

○ 장애인·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방문예약을 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임시서고 및 보장원 본원 방문 시 이동과 기록물 열람·해석 등을 지원할 직원 매뉴얼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 국가기록원과 협력하여 국가기록원의 자료에 장애인 접근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및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보고할 것

○ 아동권리보장원 입양기록물 전산화 작업 감사결과에 따른 용역사업자 입찰참가 제한을 이행할 것

《 아동권리 및 보호체계 관련 》

○ 발의 예정인 보호시설 미성년 후견인 지정 관련 법안 관련하여 보장원이 협조할 것

○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운영 등 위기임신보호출산제도 홍보 다각화를 통한 접근성 제고 방안 구체적 계획을 보고할 것

○ 친부모가 가정위탁지원센터나 행정기관 중재 없이 위탁가정이나 위탁아동을 직접 찾아가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위탁아동과 위탁가정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런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복지부와 협의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수용자 자녀와 같은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검토할 것

《 보호종료아동 등 자립지원 관련 》

○ 아동발달지원계좌 만기 이후 장기 미인출 및 사후관리 미흡 문제 개선을 위해 사후관리 절차 강화와 지급 프로세스 간소화 등 제도 개편, 자동지급체계 도입 및 소유권 인식 교육을 강화할 것

《 아동학대 관련 》

○ 아동학대와 장애아동학대 사건 간 상호 공유 및 대응 보완을 위한 연계체계를 마련할 것

○ 다문화 가족 등을 고려하여, 다국어 버전의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 발간 및 전국 지자체 홍보방안 등을 검토할 것

○ 최근 한국인 부부 입양 후 해외 거주, 교민 아동학대 신고 사건 관련 보장원 및 복지부 지속 관리감독할 것

○ 경찰청의 가정 내 아동 사망사건 통보지침 마련으로 인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보고되는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아동학대 중대사망사건 분석 적정 인력 규모와 인력 확충 계획을 검토할 것

○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을 인권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도록 노력할 것

○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상담원 신설 및 상담원 직위 세분화되었다가 다시 재개정으로 인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근무 경력 관련 피해사례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 실종 관련 》

○ 동거 가능한 형제, 자매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실태조사 등 방안을 별도로 보고할 것

○ 오기되거나 임의 작성된 기아 호적을 가진 사람들의 가족찾기에 보장원이 적극 협력할 것

○ 해외 우수사례 참고한 실종아동 찾기 홍보 정책의 한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실종아동 유전자 검사 절차 소요 기간 단축 등 행정 효율화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 및 수행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와 검토 후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 기관운영 등 》

○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채용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 일·가정양립에 앞장서야 하는 복지부 산하기관들의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 활성화에 노력할 것

○ '20~'21년 입양기록물 및 아동(입소)카드 전산화 사업 부당지급 인건비를 환수할 것

○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충분한 추가 인력 확충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 및 웹접근성 품질인증 계획을 제출할 것

○ 여성 고위직 및 관리자 임용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을 위한 자체 관리 규정을 재정비하고, 마일리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정원 대비 현원은 부족하고 상위직(1·2·3급) 비중이 너무 높으므로 조직 직제 개편을 검토할 것

24)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조건부 수급자 맞춤형 자립지원 》

○ 시장 취·창업이 어려운 참여자에 대해서는 사회참여형 제도로 자활의 역할을 설정하고 사례관리 등 지원을 강화할 것

○ 자활 정책의 성과가 주로 취·창업률로 평가되는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관련 성과 관리·운용에 유의할 것

《 자활사업 일반 》

○ 자립 성과 중심의 자활사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사업분석을 실시하고 성과향상을 위한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취약계층 자활기회 확대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층 참여자 수가 감소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맞춤형 자활프로그램 확대 방안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고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강화위한 목표 및 세부계획을 보고할 것

○ 자활대상자 특성별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를 재설정할 것

《 자활역량평가 운영 》

○ 지자체 공무원 대상 자활역량평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평가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강화할 것

○ 시군구 자활역량평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

○ 초기 사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자활역량평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원이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자활성공률 감소 및 성공률 기준 》

○ 자활참여자의 복합적 성격을 감안하여, 정서적 자활 지원과 역량강화 지원으로 이원화된 트랙 마련 방안을 검토할 것

○ 정서적 자활 지원·역량강화 지원 이원화 방향을 4차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할 것

《 탈수급 이후 지원, 참여율·중도해지, 자활급여 특례·유인책 》

○ 탈수급 이후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전제로, 관련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것

《 제3차 자활급여 기본계획》

○ 제3차 자활급여 기본계획에 맞춰 자활복지개발원의 정책지원·평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

25) 한국보건의료정보원

《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

○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데이터 분석 환경 및 데이터 질 개선, 개인정보 보호 향상을 통해 국가 AI 연구 인프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

《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나의건강기록 앱) 》

○ '나의건강기록앱'의 발달장애, 치매환자 등 돌봄 취약 계층 대상 가족 열람 기능 확대 및 앱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나의건강기록앱' 서비스를 복구·정상화하고, 향후 재난 상황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

○ '나의건강기록앱' 홍보를 통해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 이원화된 건강정보 고속도로,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관련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의료데이터 서비스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

《 EMR 인증 사업 》

○ 인증절차 간소화, 표준(KR CDI, KR Core) 필수 적용 등 EMR 인증 개선 방안을 마련해 EMR 인증 활성화하도록 노력할 것

○ EMR 사용인증율 확대보다 제품인증율 제고 방안을 검토할 것

○ 진료기록의 사후 수정 등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기관 운영 등 》

○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중요도가 높은 보건의료데이터를 전송·연계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으로, 데이터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기간제 근로자 비율이 높은 상황으로 정규직 전환, 무기계약직 확대, 처우 개선 등 인력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 수립할 것

○ 공적 항공 마일리지 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것

26) 중앙사회서비스원

○ 종합재가센터 운영현황 점검, 보고 체계 정비, 민간곤란 분야 유지 등을 위해 노력할 것

○ 대체인력 현장 종사자에게 인센티브 등 보상책 마련과 임금 가이드라인 설정 등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사회서비스원의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수탁 관련 검토할 것

○ 육아기 단축근무제도 홍보하고 대상자에게 적극 사용하도록 안내할 것

○ 기관장 공석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

○ 서울·경북 사회서비스원 미설치 지역 설립 협의 등을 노력할 것

○ 종합재가센터 관련 표준운영지침 등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

○ 통합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을 검토할 것

○ 공적 마일리지 관리 규정을 재정비할 것

○ 사회복지시설 평가 후 사후조치 체계를 개선할 것

○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고도화하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

27)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해외 사례 참고하는 등 성별 특성에 기반한 자살예방 연구와 정책 개발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

○ 청소년소외계층 온라인돌봄 시범사업이 성공하기 위해 드러나지 않은 소외(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하기 위해 청년 특성을 반영한 홍보방안을 모색할 것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연계율, 동의율을 높이고 사후관리 중도탈락을 낮추기 위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자살상담전화 급증에 따른 대응을 위해 민·관 전화상담 협의체 구성, 자동연계시스템 구축, 연계율과 사후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등 방안을 마련할 것

○ 자살 상담인력 대상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심리지원, 예산 확보 등 계획을 수립할 것

○ 공적 항공 마일리지 사용 현황 점검하고 관리할 것

○ 직급별·성별 임직원 현황 분류하고 장애인 고용현황까지 기재할 것

28)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 기관별 업무보고시 직급별, 성별로 임직원 현황 분류, 장애인 고용현황을 반영할 것

○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연합회가 함께 지방의료원의 내구연한 초과 장비에 대한 단계적 교체 로드맵과 공공의료장비 관리 기준, 응급상황 발생시 인근 의료원간 장비 공동활용 또는 긴급지원 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공적마일리지 사용 현황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1) 식품의약품안전처

(1) 기획조정관

《 산하기관 조직 운영 관련 》

○ 식약처 산하기관의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 수범사례 제안 직원 표창 및 격려 관련 》

○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한 직원을 표창·격려하고, 앞으로도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행정소송 및 행정처분 관련 》

○ 지방식약청별로 행정집행 과정에서 해석·판단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처분 기준 표준화 방안과 기관 차원의 관리·점검 체계 강화 계획을 마련하고, 행정처분 확정 전 사전조정 절차 마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 소송 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 전용을 최소화하고, 패소율 급증 원인을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할 것

《 식약관 파견 관련 》

○ 일본 식약관 파견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소비자위해예방국

《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관련 》

○ 해외직구 문신용 염료의 유해물질 차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문신용 염료 수입신고 실적이 저조하므로 미신고 업체 실태조사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 미세플라스틱 관련 》

○ 식품 용기·포장재에서 기인하는 5㎛ 이하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표준화된 시험법·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노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

《 담배유해성관리 관련 》

○ 유사니코틴 등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대비할 것

○ 담배 유해성분 시험법과 성분 범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반영할 것

(3) 식품안전정책국

《 표시·광고 관련 》

○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약사를 활용한 온라인 부당광고를 차단하고, 처분 실적을 관리할 것

○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약사 활용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통계와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건강기능식품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기사형 광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언론사, 관계부처, 업계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일반식품이 명칭, 형태로 인해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되지 않도록 정제·캡슐 형태 제형 제한, 표시문구 의무화, 기능성표시식품 제도개선 등 근본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 의약품의 명칭과 유사한 제품명을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

○ 일반식품 제품명에 양약 처방명, 성분명과 유사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의약품 명칭, 모양 등을 흉내내어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일반식품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것

○ 영업정지 기간 중 품절된 것처럼 홍보하는 편법 판매와 의약품 명칭이나 모양이 유사한 과장광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 두뇌 기능 향상 보조식품처럼 인식되도록 과장하여 홍보하고 있는 서울대 기술지주 자회사인 밥스누(BOBSNU)의 수능시즌 일반식품 과장광고를 제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우리나라는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경우 디카페인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미국, EU 등 국제 기준과 차이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아이스크림은 유통과정 중 부분 해동 및 재냉동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할 것

○ 설탕 제로 등 무당을 강조 표시한 당알코올(말티톨 등) 함유 제품이 혈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표시를 개선할 것

○ GMO 완전표시제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산업계가 우려하는 원료 확보, 단계적 시행 방안을 잘 협의하여 철저히 준비할 것

○ GMO 완전표시제 도입에 대한 공청회 등 공식 절차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의견수렴과 신속한 조정을 추진할 것

《 위생·안전관리 관련 》

○ 일반・휴게음식점으로 등록・운영 중인 메이드카페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성상품화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시정조치를 할 것

○ 기내식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적합 기내식이 어느 항공사에 납품되는지 대국민 알림 방안을 마련할 것

○ 배달앱 이물 통보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배달앱 플랫폼의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배달플랫폼의 사전관리 의무와 식약처의 감독·관리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므로 협조할 것

○ 주류제조업체의 법 위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처분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수준이므로 위반업체에 대한 처분을 강화할 것

○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 허용을 신속히 법제화하고, 영업자들이 위생과 안전기준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것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변화에 맞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점검주기, 기관별 역할분담, 위반 시 제재방안 등을 명확히 해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관리체계부터 마련할 것

《 푸드QR 도입 관련 》

○ 타임바코드나 푸드QR 도입시 식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제도 확대 과정에서 식품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문제 해결 과정을 거친 후 비용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등 기업이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

○ 푸드QR 표시 위치가 가이드라인에 맞게 표시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푸드QR 적용 확대 추진, 인센티브 도입 검토 및 소비자 대상 홍보방안을 마련할 것

《 음식점 위생등급제 관련 》

○ 모범업소 폐지에 따른 영업자 대상 위생등급제 전환 비용 지원과 변경된 제도 홍보를 추진하고 중기부의 백년가게 등 유사 음식점 인증제의 통합도 추진할 것

○ 백화점 입점 업체의 농약 검출 우롱차 판매 건과 관련하여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식품안심구역 지정 시, 시설 내 위생등급 지정업소 대상으로 식품위생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할 것

○ 배달플랫품 내 입점 업체에서 철저히 위생관리할 수 있도록 위생등급 표출 등 위생등급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기 타 》

○ 중소 수출업체에 대한 통관 부적합 예방 및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 전 품질검사, 기술지원, 국가별 맞춤형 정보제공 확대 등을 추진할 것

○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식품진흥기금의 사업 범위에 영업자의 업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을 포함하는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및 용도 확대를 위해 생계형 자영업자의 영업장 운영을 위한 용도 지원(운영자금 등) 근거 신설 계획을 보고할 것

○ 식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후보자 모집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훼손 여부 등에 대해 식약처 차원에서 조사하여 시정조치하는 등 지도·감독할 것

○ 식품위생교육 전문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법적·제도적으로 이의가 없도록 투명하게 시행할 것

(4) 식품기준기획관

《 인공소초를 함유한 벌집꿀 판별법 마련 및 수입 점검 관련 》

○ 천연벌집꿀과 천연벌집으로 만든 인공소초 함유 벌집꿀을 구별할 수 있는 시험법을 만들어 수입검사 시 활용할 것

《 유산균 함유 일반식품의 관리 관련 》

○ 건강기능식품은 유산균 수를 100억 CFU까지 허가하는 보장균수·허가 체계로 관리되고 있는 반면, 일반식품은 유산균 수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간 유산균 관리상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할 것

《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성분 안전성 재평가 검토 필요 관련 》

○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이상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성 재평가를 다시 한번 검토할 것

《 식품공전 분류체계 개편안 관련 》

○ 연구 중에 있는 장류 통합 등 식품공전 개편안을 전통 식문화의 가치를 고려하여 K-푸드 세계화 노력에 역행하지 않도록 전면 수정할 것

○ 장류 통폐합 관련 식품공전 개편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 계획을 제출할 것

《 특수의료용도식품 임상자료 제출 의무화 도입 관련 》

○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포장 및 광고가 질환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므로 소비자 신뢰 저하 방지를 위해 임상시험 결과 제출 등 추가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교육·홍보할 것

《 과불화화합물 선제적 기준 마련 관련》

○ 식품 중 과불화화합물(PFAS) 기준 마련을 위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

(5) 수입식품안전정책국

《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

○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관련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객관성을 토대로 국민께 알릴 건 알리고 검증할 건 검증하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

《 수입식품 안전관리 》

○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를 확대하고 비협조 업체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것

○ 건강기능식품 원료인 쏘팔메토(Saw palmetto) 열매추출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강화한 기준·규격을 수입검사 시 적용할 것

○ 중국산 식재료 등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폐기 대상이 된 수입식품의 대부분이 회수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회수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미국산 참깨에서 글리포세이트(glyphosate)가 국내 기준 대비 19배 초과 검출되었다고 언론 보도됨에 따라 해당 농산물에 대한 글리포세이트 검사를 강화할 것

○ 수입식품 무작위표본 검사 시 검사항목 누락 방지를 위한 검사관 교육 강화,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영업자에 대한 주기적 위생 평가 이행 및 디지털 혁신과제 실질적 구축 계획 시행 등 수입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

《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

○ 해외직구 식품 구매검사를 통해 의약품이나 마약성분이 검출된 제품 반입을 차단하고 있는데 의약 성분 전체를 두고 반입여부를 결정하는 등 안전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할 것

○ 해외직구 식품 검사에서 지속적으로 위해물질이 검출되고 있어 해외직구 식품 구매검사 강화와 자체적인 판매사이트 차단 권한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것

○ LMO 감자와 관련하여 식약처의 입장과 안전성 검사 추진계획을 보고할 것

(6) 식품소비안전국

《 급식 안전관리 관련 》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단 120곳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 간 편차가 큰 바, 해당 사업의 확대를 위한 식약처 계획과 추진방향, 재원조달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것

○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개선을 위해 면허수당 예산 반영 계획 및 고용 안정화 방안을 수립할 것

○ 스마트 급식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중단에 따른 어린이집 등 급식 현장의 위생·영양관리 공백 대책을 마련할 것

《 농산물 안전 관련 》

○ 국민적 우려가 있는 낙동강 인근 농산물에 대한 녹조독소 전수조사 필요성을 검토할 것

○ 농·축·수산물 새벽배송 확대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도 신속검사센터를 확대 설치할 것

《 건강기능식품 관련 》

○ 건강기능식품 및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제도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관리 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

○ 인과성이 높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할 것

○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함유 건강기능식품의 이상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안전성 관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할 것

《 영유아식 안전관리 관련 》

○ 영유아식에 대해 미생물·중금속 등 관리 기준과 회수·공개 절차의 실효성 확보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

(7) 의약품안전국

《 의약품 허가 관련 》

○ 임신중지 의약품에 대한 조속한 허가를 검토할 것

○ 의약품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할 것

○ 해외에서 허가된 희귀질환 치료제 등을 신속하게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신속허가 할 것

《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

○ 식약처에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식약처 소관 물품에 대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이용을 촉진하는 법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고, 동물대체시험 국제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관련 》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조사를 확대하고 제도 인지도 제고 방안 마련과 홍보 다각화를 추진할 것

《 면역증강제 관련 》

○ 의약품 재평가 시 최신의 과학 수준에 근거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한다면 면역증강제 관련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평가 결과에 근거해 의약품 재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문헌 재평가를 통해 신속하게 판단할 것

○ 면역증강제 관련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평가 결과와 의약품 재평가의 연관 여부와 비스쿰알붐과 이뮤노시아닌이 현재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에 맞는지 재검토할 것

《 의약품 안정공급 관련 》

○ 원료의약품 자급률 높이기 위한 국산화 지원 방안을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

○ 필수의약품의 공급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통합 대응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

○ 수급 불안정 의약품과 품절 의약품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심평원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활용할 것

○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과 관련하여 복지부와 상의하여 방안을 모색할 것

○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의약품 선택권을 약국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약국·제약사가 시장을 좌우할 경우 환자에게 의약품 품질과 공급에 대한 불안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 의약품을 최저가로 공급하는 것보다는 환자 안전과 책임이 우선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것

○ 자가치료용 의약품의 부작용 발생 현황 정기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 해외의존도가 높아 공급 불안정이 상시화되는 어린이·희귀 질환용 필수의약품의 공급중단 위험예방을 위해 공적 공급지원을 확대할 것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예산·인력 운영체계를 강화할 것

《 기 타 》

○ ‘OD 환각놀이’ 등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한미 의약품 관세 협상에 따른 수급 불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장애인을 위한 점자 등 표시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시행일 지연 관련, 법률 시행일을 미루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 아세트아미노펜 사례와 같이 장애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제약사 리베이트 적발시, 실효성이 떨어지는 판매업무정지 처분 대신 실질적인 행정처분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할 것

○ 품목허가 이전에 제조한 제품을 허가받은 내용과 동일한 공정으로 생산하여 허가사항에 적합한 경우 허가 후 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

○ 의약품 GMP 적합판정 취소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 문신사법 시행 이전, 불법 마취크림 유통을 단속하고 관리할 것

○ ‘ICH S9 가이드라인(항암제 비임상 평가)’의 특정 조항(내부 연구/학회지 자료 활용 관련)과 관련하여 국제기준과 조화시켜 운영할 것

○ 오래된 의약품 중심으로 금기정보를 재검토하고 허가사항과 DUR 시스템이 일관되도록 재점검할 것

○ 제약사에 레티노이드 제제의 위해성 관리 보고를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복지부와 협의하여 처방 단계에서부터 관리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의 경우 국민의 안전을 위해 품목허가로 관리하고, 부득이 조제실제제로 제조하는 경우 엄격한 심사 및 실질적인 검토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것

(8) 마약안전기획관

《 마약류 관리 제도 개선 관련 》

○ 온라인 마약 광고를 식약처가 직접 차단하는「마약류관리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

○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유흥업소, 텔레그램 등에서 전자담배 형태로 마약류가 불법 유통되고 있으므로, 검사·수거 등을 통해 감시할 수 있도록 할 것

○ 임시마약류 예고기간 단축 등을 통해 지정 절차를 개선하여 빠르게 등장하는 신종 마약의 2차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것

○ 대마 성분 필수의약품의 공급 안정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 마약류대책협의회에 법원행정처를 참여시켜 약물법원 도입 필요성을 관계 부처와 논의할 것

○ 마약류 범죄 등 대응을 위해 관계 부처 간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전담기구 신설 등 대책 마련을 검토할 것

○ 마약류 중독예방 상담약국(마중약국)과 식약처 정책 연계 등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

《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관련 》

○ 6세 미만에 대한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규제·안전 대책이 필요하며, 통계 분석 목적과 대상 등을 고려하여 연령 추출 기준을 마련할 것

○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로 개선하기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할 것

○ CRPS 등 희귀질환자를 위한 적절한 처방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처방 제한을 완화하더라도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마약류 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처방기준 정비와 모니터링 강화 등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처방 기준 및 사후 모니터링 강화, 의료기관 지도·점검 확대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방안을 마련할 것

○ 의료용 마약류 사고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유통·조제 환경 조성을 위한 해결 방안을 마련 후 제출할 것

○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와 의료쇼핑 방지 대상 성분 확대 등 오남용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대책을 보고할 것

○ 의료기관 처방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할 것

○ 한국형 테이크 백 데이, 퇴원 환자 연계 모델, 인근 수거 약국 정보 제공 방안 등 방치된 마약류 수거·폐기사업의 구체적 계획 수립 후 보고할 것

○ 일부 지자체의 마약류 보관 부실 사례와 관련하여, 몰수마약류 보관 등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

○ 의료용 마약류 수요량 예측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GPU 확보와 시스템 운영비 등 인프라를 구축할 것

《 마약류 예방교육 및 사회재활 관련 》

○ 마약류 예방교육 대상자의 적극적인 발굴과 더불어 실질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량 지표를 개발할 것

○ 마약중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부처의 기능과 역할을 정비할 것

○ 검찰청 폐지 등의 변화에도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지속가능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마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시 수사정보 연계와 관계부처 공동 사회재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

○ 마약류 사범 중 조건부 기소유예 재활교육 이수자 현황과 후속 사례 관리 현황에 대해 보고할 것

○ 긴급상황에 대한 1342 상담센터 시스템을 보완하고 전화 외에 채팅 상담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

○ 마약류 중독자와 가족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회복 경험이 있는 당사자를 ‘회복지원가’로 양성·활용하기 위한 계획 마련을 검토할 것

(9) 바이오생약국

《 바이오의약품 관련 》

○ 국내 제약사가 해외기업을 인수하여 생산한 해외 제품을 국내 제조 품목으로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것

○ 바이오의약품 CDMO법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 ‘바이오시밀러 허가혁신 방안’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할 것

○ ‘바이오시밀러 허가혁신 방안’의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할 것

○ mRNA 백신 품질시험 및 바이오의약품 원료(세포) 안전성 분석 업무 관련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미용목적 사용 인체조직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

○ 레켐비 시판 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위험 의약품 허가 시 전문가 자문을 거치는 방안을 고려할 것

○ 비만치료제 불법유통 및 불법판매·알선광고에 대한 단속·감시를 강화하고, 사용상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 정보를 의료기관 등에 안내할 것

○ 위고비 광고 의료기관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위고비 '나눠맞기'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제 한약·약침 관련 》

○ 조제한약·약침 부작용의 경우 피해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조제한약·약침의 안전성·유효성을 국가가 책임질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할 것

《 화장품 관련 》

○ 글로벌 기준에 맞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에 힘쓸 것

○ 식약처가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

○ 위조화장품 대응 기준과 관세청, 지식재산처와의 상시 공조 체계를 마련할 것

○ 화장품 부당광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책임판매업자 중심의 온라인 단속 체계를 마련할 것

○ 허브오일 제품의 향료 성분표시 관리 강화와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비강흡입형 허브오일 제품에 대한 관리 기준 마련을 검토할 것

○ 중소기업이 화장품 수출 시 '비관세장벽'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 K-뷰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화장품 GMP 의무화 도입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

《 의약외품 관련 》

○ 의약품·의약외품 간 오인혼동 방지를 위한 유사 제품명 관련 기준 및 국민인식 제고 대책을 마련하고 표시광고 관리를 강화할 것

(10) 의료기기안전국

《 필수의료기기 안정 공급 관련 》

○ 필수의료기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

○ 의료기기 공급중단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기기 국산화율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정책을 추진할 것

《 기 타 》

○ 과기정통부가 발주한 특정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하여 식약처가 규제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과기정통부의 진상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 선진입 의료기술 사용이 환자에게 위해가 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고시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므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것

○ 의료기기 이상사례 인과관계 조사의 적극적인 운영과 책임보험·공제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것

○ 의료기기 간접납품사 폐해 개선을 위해 UDI 추적관리시스템 개선을 검토할 것

○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기기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홍보, 인센티브 확대 등 의료기기 정보 제공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디지털치료기기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사용자 접근성 평가, 보안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

○ 공급내역 보고대상에서 제외된 로봇수술기의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관련 제도로 인한 중소업체의 행정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할 것

○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으로 혼동되는 무허가 의료기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정부·기관·지자체 등에게 위반 사례 중심으로 더 알기쉬운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협조 요청할 것

○ 식약처에서 개인용 마약검사키트를 관리하게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마약 검사 공백을 해소할 방안을 검토할 것

(11) 감사담당관

《 공직기강 확립 관련 》

○ 내부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공직기강 해이 및 부적절한 복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징계 이후 사후관리 및 비위 재발방지 대책을 강화할 것

《 감사 후속조치 관련 》

○ 위해 의료기기 회수 및 의료기기 품질관리(GMP) 사후관리 부실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철저한 성과관리와 행정 목표 설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산하기관 물품 구매 및 관리 부실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법정 의무교육 미이수 수입식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방치 및 민원 처리기한 미준수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갑질행정 관련 》

○ 식약처의 스마트 HACCP 제도 도입과 관련한 갑질행정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12) 규제과학정책추진단

○ 한국규제과학센터 예산 및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

(13) 위해사범중앙조사단

○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여비, 유류비 등 필수경비 확보에 노력할 것

(14) 사이버조사팀

○ 온라인 불법 유통 마약류와 의약품, 의료기기 광고 판매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

○ 온라인 허위 과장 광고를 막기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 및 제재조치를 실시할 것

○ 온라인 식의약 부당광고 및 불법유통 적발과 차단을 일원화하고 식약처와 온라인 플랫폼 간 소통창구를 마련할 것

○ AI캅스를 활용해 텔레그램 마약거래 단속 등 방안을 검토할 것

○ 홈쇼핑을 통한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의 과장광고를 관리할 것

○ 전문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차단체계를 점검하고 연구하여 보완할 것

○ 의약품 모방 식품 광고에 대해 점검하여 조치하고, 게릴라형 광고 방지책을 마련할 것

(15) 운영지원과

○ 공무직 채용 절차상 불공정성, 서류 관리 부실과 관련하여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 식품안전정보원

○ 식품안전정보원 편법 승진 의혹과 관련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

3)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건비 등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식약처 감사 결과 지적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채용 및 인건비 책정 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을 신규 임용으로 보아 임기를 3년으로 하는 것은 정관과 종전 관행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해명할 것

다. 질병관리청 소관

1) 질병관리청

《 감염병 대응 및 넥스트 팬데믹 대비》

○ 최근 서울 지역에서 쥐(설치류) 출몰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설치류 개체 수 증가 및 관련 감염병 발생을 관리 할 것

○ ’23년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 수립 이후 현재 확보된 감염병 병상은 1,210병상으로 목표대비 34% 수준에 불과하므로 충분한 병상을 확충할 것

○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의 최근 유행 바이러스에 대한 효능 관련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제1급 신규 지정된 니파바이러스 대비를 철저히 할 것

○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이 늘어 3년 만에 45% 급증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확립과 관리 감독이 시급하며 산후조리원 내 RSV 집단감염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할 것

○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객관적 검증 및 공중보건분야 역량 측정을 통해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고자 지난 8월에 WHO 합동외부평가를 실시하여 국제보건규칙 이행을 위한 보건안보 전략 수립,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제도화 등 보강이 필요한 역량으로 평가된바 제2차 합동외부평가(JEE)의 의의와 이를 통해 제시된 핵심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을 마련할 것

○ 차기 팬데믹 위협에 대비한 백신 개발 및 비축계획 등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 대책을 마련할 것

○ 팬데믹에 대한 국제 연대와 국내 위기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감염병위기대응기금 설치할 것

○ 공중보건의사 축소에 따른 현장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 확보 대책 등을 마련할 것

《 검역 및 해외유입 감염병 관리》

○ 항공기 내 위생을 위해 대상 노선 및 검사 구역을 확대할 것

○ 선박위생증명서 발급 시 현행 관능검사 외 검사 방식을 검토할 것

○ 선박 승선 위험성을 고려, 승선 검역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전면 시행되면서 외국인 감염병 유입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여행자 중심 감염병 정보제공,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디지털 기반 검역체계 전환, 오하수 감시 사업 등을 통해 해외 감염병 유입의 사전예방 및 조기 차단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검역 체계를 강화할 것

○ 외국인 결핵, 매독, 에이즈 등 환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국, 태국 등 국가별 위험도 평가 및 모니터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것

○ 외국인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별·질병별 맞춤형 캠페인 및 교육 홍보 전략을 추진하고 수도권 청년층 중심의 고위험군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 최근 5년간 외국인 감염병 발생 현황(A·B형 간염, 결핵, 홍역 등)을 국가별·체류 형태별로 분석하고 중국인 감염자 증가 원인과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

○ 외국인 단체관광 무비자 입국 확대 이후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공항만 오하수 감시 사업 등 선제적으로 검역체계를 강화할 것

○ 외국인 체류자 중 고위험 감염병(간염·결핵 등) 고위험군 관리 강화를 위해 정기건강검진 또는 자율 신고제 도입 검토 및 법령 개정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외국인 밀집 숙소, 음식점, 산업단지 등에서 A형·B형 간염 예방 접종률 제고와 위생 점검을 강화할 것

○ 최근 홍역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및 단체 관광객 대상 입국 전 홍역 예방접종 확인제 또는 국내 예방접종 무료 지원제 검토와 그 추진 방향을 확인할 것

○ 최근 5년간 외국인 감염병 발생 현황(결핵, 매독, HIV 등)을 국가별·지역별로 분석하고 중국인 중심의 증가 원인에 대한 역학적 평가 결과를 확인할 것

○ 외국인 관광객과 단기 체류자 급증에 대비해 입국 시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공항만 오하수 감시 사업 등 선제적 검역체계 강화와 검역 현장의 인력, 예산, 시스템 보완계획을 마련할 것

○ 외국인 체류자 중 감염병 고위험군(결핵, HIV, 매독 등)에 대한 정기검진 및 치료 연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와 국적별 맞춤형 예방 사업 강화 계획을 점검할 것

○ 외국인 입국 후 감염병 추적 관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감염병(결핵, HIV, 매독 등) 환자 관리 과정에서 법무부, 복지부, 관세청 등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관리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 매독·HIV 등 성매개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적별 위험도를 고려한 예방 캠페인, 다국어 교육자료, 진료 접근성 개선 대책, 해외 유입 위험국가에 대한 선별적 관리 계획을 마련할 것

○ 외국인 HIV 감염자의 치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 복지부, 법무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진료 연계 관리 및 다국어 상담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체류 자격 변경·귀국 시 치료 단절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민들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검역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면 시스템 통합이 아닌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AI 검역관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검역업무와 관련한 향후 시스템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 해외 유입 매개 감염병(치쿤구니야열 등)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한 항만·공항 검역 감시 강화 및 지역 방역 인프라 확충 계획을 마련할 것

《 국가예방접종(NIP) 및 백신정책 》

○ 백신은 감염병 외 영역에서도 활용되는 만큼 감염병예방법에 담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과학적·체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예방접종에 대한 별도 법률을 제정할 것

○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을 지원할 것

○ 조달청 처분에만 맡기지 말고 과징금 비율 인상 등 백신 담합업체에 대한 추가적 제한 조치를 실시할 것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수준이 지역마다 상이하여 건강 불평등이 우려되므로 국가예방접종에 대상포진을 포함할 것

○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미지급금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업관리를 할 것

○ 고령층에게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현행 국가 예방접종용 인플루엔자 백신 대신 고면역원성 백신을 지원할 것

○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NIP)을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면역에 취약한 고령층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를 추진할 것

○ 고령층 등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백신 추가 예산 및 물량을 확보할 것

○ 신경 근육계 환자 등 고위험 희귀질환자에 대해 코로나19 및 호흡기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계획을 마련할 것

○ 고령자에게 맞게 개량된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도입을 검토할 것

○ 고령층 대상 신규 폐렴구균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대상으로 도입할 것

○ HPV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와 남성 접종 확대를 통한 집단 면역 추진을 위해 남성 청소년 확대 접종 및 고품질 백신 접종을 도입할 것

○ 폐렴의 국내 사망원인 순위가 2002년 14위에서 2022년 3위로 급상승하고 60대 이상 폐렴 환자 진료비가 10년 만에 약 156% 증가하는 등 고령층 폐렴구균 백신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시급한바 65세 이상 고령층 대상 폐렴구균 백신을 국가예방접종 대상으로 도입할 것

○ 연구 결과와 접종 현실에 부합하도록 HPV 예방접종사업의 우선순위 재검토와 HPV 국가예방접종사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여성암 예방을 위해 HPV 백신 접종 확대를 추진할 것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서 중증 여성 장애인에 대해 확대하고 장애 여성의 낮은 자궁경부암 검진 수검률을 고려하여 예방접종 지원 필요성을 검토할 것

○ HPV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18~26세 저소득층 여성에서 중증 여성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할 것

○ 고령층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감시 강화 및 국가예방접종 도입 검토를 위한 연구를 진행할 것

○ 2026년 정부안에 12세 남성 청소년이 포함되었는데 점진적으로 HPV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9가 백신으로 전환할 것

○ 미래 인구 구조 변화가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할 때 노인 예방접종 사업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

○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영유아 대상 RSV 예방 항체 접종의 NIP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적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바 RSV 예방 항체의 NIP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국가예방접종 백신 비축률이 MMR 39.2%, PPSV 37.1%, Tdap 27.8%로 목표량 대비 절반에도 미치치 못하고 있는바 국가예방접종 백신 비축률 제고를 위한 예산 확충 계획을 마련할 것

○ ’23년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1~6위에 해당하는 백신 중 남성 청소년 HPV, 성인 Tdap, 대상포진 백신 등은 여전히 미도입 상태이고, 특히 HPV 남성 청소년 접종사업은 ’26년 정부안에 포함되었으나 실제 사업 시행까지 3년의 시차가 발생하므로 국가 예방접종 신규 백신 도입의 단계별 일정을 신속히 마련할 것

○ 올해 백신 구매 물량이 접종 수요와 근접한 상황에서, 국민이 차질 없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방접종 운영 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

○ 치료제 대비 백신이 비용·효율 면에서 우수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염병 관리를 치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으로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마련할 것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에 따라 충분한 보상 추진 및 위원회 구성 시 피해자단체 요구를 수용할 것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보상의 범위를 가능한 한 확대하여 폭넓게 보상할 것

《 생물안보 및 생물테러 대비 》

○ 유효기간이 경과된 두창백신을 신속히 교체할 것

○ APEC 대비 생물테러 대응 매뉴얼과 유관기관 공조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물테러 위기 상황 등에 대비하여 충분한 물량의 탄저백신을 비축할 것

○ 비축 중인 두창 백신 중 유효기간 초과 물량이 상당량 포함되어 대응의 신뢰성이 저하된 상황으로, 유효기간 경과 백신의 보관·관리 기준을 재검토할 것

○ 백신 사업은 막대한 시설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으로서 향후 생물 테러 발생 등 유사시 신속한 백신 공급을 위하여 생산시설 운영·유지는 필수적이므로, 향후 다양한 공중 보건 위협으로부터 철저한 방어력을 갖추기 위해서 충분한 물량의 탄저백신을 비축할 것

○ 탄저백신 비축 물량을 축소한 결정 배경과 2017년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수립한 100만명분의 단계적 비축계획 대비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비축계획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

○ 국산 탄저백신의 생산·품질관리·유통 체계가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의 유지·관리 계획과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 '25년 본예산 기준 생물테러 개인보호구 구매 예산 4억 4,300만원 중 16%만 집행되는 등 예산 집행 지연이 발생한바 감염병 대응의 핵심 인프라인 개인보호구 및 방역 장비의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기후변화 및 환경보건 대응 》

○ 기후 위기에 따른 감염병 예방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

○ 재난이 된 폭염에 대비 장애 유형별 특성을 담은 폭염 대비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발간할 것

○ 온열질환 응급실 모니터링은 현재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의 자발적 협조로 운영되고 있는데 응급실의 참여도와 감시정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온열질환 고령자 사망률 감소를 위해 데이터 기반 현장 중심형 기후보건정책으로 전환할 것

○ 기후변화가 취약계층 등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보건법과 같은 독립적인 법률 제정을 검토할 것

《 항생제 내성 및 의료 감염 관리 》

○ 국내 항생제 사용량이 OECD 국가 2위로 굉장히 높은 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항생제 사용량 증가가 지적되는 가운데 요양병원을 포함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및 내성균 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 희귀질환 관리 및 환자 지원 》

○ 만성 혈전색전성 폐고혈압(CTEPH)의 희귀질환 지정을 검토할 것

○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의 소득·재산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

○ 희귀질환 전문기관의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성화할 것

○ 극희귀질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희귀·극희귀질환 환자 상담 및 지원센터 설립’과 ‘환자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

○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등 희귀질환의 조기진단·등록률 제고 및 치료를 위한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확충할 것

○ 영유아 희귀질환 중 조기 치료가 가능한 질환(척수성 근위축증 등)에 대해 조기 진단을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보건 통계 및 연구 기반 확충 》

○ 보건·건강·질병 통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주체로 국가통계센터를 설치할 것

○ 감염병 발생 및 예방접종 장애인 분리 통계 생산 체계를 마련할 것

○ 장애인 건강연구 부재로 인해 발생한 정책 공백 해소와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건강에 관한 연구를 추진할 것

○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반영한 성차 연구 활성화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가 차원의 성차 반영을 제도화할 것

○ 신생아 대상 유전자검사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국가주도의 표준화된 검사체계를 구축할 것

○ 전장유전체염기서열 기반 신생아 선별검사 시범연구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

《 방제정책 개선 및 친환경 전환 》

○ 40여년 가까이 화학제 중심 방제 방식이 유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정책적·행정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현행 성과지표가 GIS 활용률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생물·물리 방제 비중 등 방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할 것

○ 방제 지침 성분 기준 변경 등 향후 지침 개정 시 전문가 자문, 기록 의무화 등을 반영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것

○ 발암 논란 성분이 포함된 화학제 사용과 관련하여 EPA 등 국제기구에서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방제계획을 마련할 것

○ 한국형 원헬스 공동실행계획에 '친환경 방제 트랙'의 구체적인 추진 현황을 제시하고, 환경부와 협력하여 환경 위해 요인을 관리할 것

○ 현재의 방제 관리 체계는 '단기 효과 중심의 화학 살포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 친환경·근거 기반 방제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

《 기 타 》

○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이 다년간 지연된바 신속히 설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소득과 비만의 상관관계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통해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것

○ 당뇨병 관련 통계 및 연구에서 소아청소년 시기에 당뇨병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소아당뇨병 실태 분석과 조기 진단 고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낮은 생존율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것

○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CT 등 장비비 예산을 확보할 것

○ 감염병 전문병원 의무병원 대기 병상 확보로 인한 수익성 보장 등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

○ 불확실한 정보(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자폐증 연관성 발언 등)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한의학 관련 수만 가지 처방을 ‘한약’으로만 통칭하고 간독성과 간 손상을 일으킨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올바른 정보로 수정할 것

○ 일반인이 급성심장정지 환자를 발견 및 목격할 경우 골든타임인 4분 이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현 응급처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것

○ HIV 치료는 지속적 약물 복용이 필수임에도 치료 이탈 시 개인 건강 악화뿐 아니라 전파 위험 증가로 공중 보건상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므로, 최근의 HIV 치료 이탈률 증가 원인을 점검하고 이탈 환자 관리 및 관계기관간 개입을 위한 체계를 구축할 것

○ 20~30대 HIV 고험군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조기검사·익명상담·자가검사키트 보급 사업의 전국 단위 확대와 SNS와 온라인 기반 예방 캠페인을 실시할 것

○ HIV 감염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완화를 위해 언론·교육기관·시민단체와 협력한 공공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고 치료 이탈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동료 지원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

○ HIV 감염인 및 에이즈 환자 중 치료를 받지 않은 국민을 발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립마산병원 인근 국유지 중 민간 사용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불하 방안을 검토할 것

○ 하수기반 감시 대상 하수처리장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전국적 대표성을 확보하기엔 부족한데 향후 감시 지점을 얼마나 어느 기준으로 확대할 것인지 감시지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하수기반 감시 자료를 감염병 대응에 활용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

○ 감시 지점 확대와 감시 병원체 확대 계획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민간 학계와의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하수 감시 병원체 지정 방안을 마련할 것

○ 인수공통감염 병원체와 관련해 ‘바이러스 검출 내역 및 질병정보’를 관련 부처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수감시 정보 공유 시스템을 마련할 것

2) 대한결핵협회

《 결핵 관리(예방, 진단, 치료 등) 》

○ 외국인 결핵환자가 수도권(63%)에 집중되고 이동이 활발한 젊은 층 비중(44%)이 높은 만큼 외국인 환자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2025년 외국인 결핵검진 목표 1만 건 미달성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 수행 계획을 마련할 것

○ 외국인 결핵 관리를 위한 MOU 상시화, 협약 추진 현황, 향후 KPI 및 외국인 밀집 구역 배치 비율과 월별 가동률/차량당 생산성, 불출석·재검률 자료를 제출할 것

○ 외국인 근로자 대상 입국 전 결핵검진 이중판독 사업의 유소견자 입국 차단율과 본국 치료 연계·재입국 승인율 관리 현황 및 실제 차단·치료 연계 건수 및 송출국별 편차 자료를 제출할 것

○ 외국인 근로자 대상 입국 전 결핵검진 이중판독 사업의 현지 검진기관 판독 품질관리체계(위양성·위음성률 검증) 운영 현황 및 국립마산병원과 복십자의원 간 판독 불일치율, 재판독 소요시간(TAT) 통계 자료를 제출할 것

○ 외국인 근로자 대상 입국 전 결핵검진 이중판독 사업의 2025년 목표 7만 건 달성을 위해 국가별 검진기관 확대, 인력 보강 계획 자료 제출 및 질병관리청과의 연계로 외국인 입국 전 결핵검진을 법정 의무화나 사전 등록 제도화를 추진할 것

○ 결핵상담 통합콜센터의 2025년 목표 달성을 위한 인력 확충 및 야간·다국어(중국어·영어·베트남어 등) 대응 계획, 상담 후 검진·치료 연계율 자료를 제출할 것

○ 노숙인 결핵관리시설 미소꿈터의 24시간 관리체계 유지를 위한 2026년 최소 운영예산을 판단하여 제시할 것

○ 돌봄시설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검진과 관련하여 무료검진 지원사업의 재개 또는 유사한 형태의 검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정부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돌봄시설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검진 사업 중단이 현장의 결핵 관리에 미친 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돌봄시설 내 결핵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과 향후 관리 강화 계획을 마련할 것

○ 결핵은 조기 치료로 사회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질환인 만큼, 돌봄 시설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3크리스마스 씰 모금 및 홍보 》

○ 학생 모금 사전 신청제 및 자율 참여 원칙을 안내한 것과 관련하여 교육부·시도교육청 가이드라인 준수, 교실 내 판매·강요 금지 준수 점검 결과와 디지털·비대면 모금 전환 계획 자료를 제출할 것

○ 크리스마스 씰 모금 목표 미달성에 따라 크리스마스 씰로 수행하는 결핵 사업의 차질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마련할 것

8. 증인 및 참고인 주요 신문사항

가. 증 인

황인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 국민 성금 관리 관련 》

○ 배분사업수행기관의 사업비 횡령 사건 발생 관련, 국민의 성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자로서 사과 및 재발방지대책 보고 요구

임철환(열린의료재단 이사)

《 불법 사무장병원 관련 》

○ 불법 사무장병원 수사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 필요

○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신속한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한 특사경 제도 도입 필요

김동락 (㈜씨케이 대표)

《 수급조절한약재 배정특혜 의혹 관련》

○ '24년 한약재 천궁 배정량 100톤 중 씨케이가 48톤(48%)을 배정받은 것은 특혜가 아닌지에 대한 질의

○ 씨케이 국산 한약재 수매실적 인정품목 및 증빙서류에 관한 복지부 감사 필요성에 대한 질의

이상곤 (녹십자의료재단 대표원장)

《 유방암 판정으로 가슴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암이 아니었던 사건 관련 》

○ 검체검사 슬라이드 라벨 부착 오류로 잘못된 병리검사 결과가 통보되어 한 환자는 암 수술을 하고, 다른 환자는 치료가 지연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것

○ 전 단계 장비 자동화 등 재발방지 이행에 대한 요구

○ 피해자들과 적극 소통하여 제대로된 대책과 보상이 필요

○ 검체 오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수탁기관에 대한 제재 양정기준을 강화할 필요

김인원 (한국건강관리협회장)

《 한국건강관리협회 관련 》

○ 한국건강관리협회 건물에 입주한 노보진코리아 업체에 대한 질의

○ 한국건강관리협회에 대한 지속적 해킹 시도 및 대응에 대한 질의

나. 참고인

최 운 (대한노인회 스마트경로당 정책위원장)

《 표준경로당 AI 플랫폼 구축 기반 마련 》

○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서 7만 개의 경로당을 이용한 표준경로당 AI 플랫폼을 조속히 구축 요청

○ 통합돌봄정책 추진 과정에서 핵심 주체인 노인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

김현아(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대표)

《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 관련 》

○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의 존재 필요성 등 균형있는 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한 설명

○ 일부 시설의 학대 사례를 이유로 한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현실적 수요를 고려하지 못하므로 정책의 속도 및 방향성을 재검토할 필요

정은화(자활기업 '홈케어마스터' 대표)

《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보건복지부 주도의 사례관리 지원 필요성에 대한 설명

○ 자활사업이 경계선지능 청년의 자립지원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경제적 지원 필요

권OO(한국사회복지 공익신고자연대)

《 사회복지시설의 공익신고자 보호 필요 》

○ 공익신고기관 범위 확대 및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필요성에 대한 질의

○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및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 강력한 처벌 근거 마련 요구

정은혜 (일자리 참여자)

《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의견 청취 등 》

○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참여 소감 등 의견 청취 및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정부 시행 및 입법을 위한 정부 노력 필요성에 대한 질의

박유로 (수어통역사)

《 농아인협회 조사 요청》

○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성에 대한 질의

김미영 ((사)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
이윤지 (한국당원병환우회 공동대표)
최　운 (대한노인회 스마트경로당 정책위원장)

《 비대면진료 관련 》

○ 비대면진료 제도화시 질환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여 의료접근성 제고 필요

○ 비대면진료에 대한 규제 도입 시 환자 의견 수렴으로 부작용 최소화 필요

○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통해 희귀질환자,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 등의 의료접근성 확보 필요

양동헌 (경북대학교병원장)

《 의료인력 지원 등 지역의료 활성화 관련 》

○ 지역의대 졸업생들의 수도권 유출 현상에 대한 원인, 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질의

○ 공공임상교수제는 한시적 시범사업으로 기존 임상교수 지원사업 및 파견사업과의 연계·활성화 필요

○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병원과 상생협력 및 네트워크 사업을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적·재정적 뒷받침 필요

○ 노후 지역거점책임병원의 신축 및 첨단 장비 지원 필요

유청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

《 전공의의 수련환경 관련 》

○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애로사항 청취

○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전공의법 이행 관련 현장 실태 등 전공의 수련환경 관련 질의

○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에 대한 견해

안기종(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의료대란 피해 관련》

○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 피해에 대한 조속한 조사 및 피해보상 필요

○ 의료공백 사태 재발 방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약속과 방안 마련 필요

강주성 (건강돌봄시민행동 대표)

《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관련 》

○ 법적 근거 없는 중증 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 거부에 대한 처벌 가능성 질의

○ 업무지침에 따라 의사가 중증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을 거부하는 것이 법령에 부합한지에 관한 질의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 약사 · 약국 관련 애로사항 관련 》

○ 창고형약국,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등 약사·약국 관련 애로사항 청취

○ 창고형 약국의 외부 자본 투입 가능성과 의약품 오남용 유발 및 지역 약국 생태계 붕괴 우려 제기

○ 불법적 면허대여 등 창고형 약국의 확산 방지를 위한 약국 개설 기준 재정립 및 자금 출처 등 사전 검증 필요 제기

○ 약사-한약사 면허 직능별 구분·업무범위 명확화 관련 요구 및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불만 사항 등 제기

이세용 (부산의료원장)

《 지방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지원 건의 등 》

○ 지방의료원 경영 위기에 대한 원인과 정상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질의

오경석 (두나무 대표)

《 메디스태프 플랫폼 투자 관련 》

○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복귀 전공의에 대한 언어폭력·따돌림 방조 등의 문제가 발생한 메디스태프 플랫폼에 대한 투자 결정 과정 질의

조문주 (심리상담센터 대표)

《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 삭감 관련 》

○ 상담 지원 예산 삭감으로 인한 운영자 및 이용자의 피해 사항 청취

○ 정신건강 위험도 구분보다 예방적 접근이 필요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횟수 추가 및 안정적 서비스 제공 지원 필요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전문의)

《 지방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지원 건의 등 》

○ 지방의료원 경영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한 질의

○ 지방의료원에 대한 기금이나 특별회계 편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예산 체계 및 총액예산제 개념으로의 전환 필요성 제기

○ 응급실 내 인력 간, 응급실과 최종 진료과 간의 연계 강화, 현행 외상센터와 응급센터의 분리 체계에 대한 대안 강구 필요성에 대한 의견

김성현 (119 구급대원)

《 응급실 미수용 문제 관련 》

○ 응급실 미수용 관련 119 구급대원의 애로사항 청취 및 의료기관의 수용능력 확인 절차 생략 필요성에 대한 질의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

《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개선 관련 》

○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시간 연장 필요성 및 비수도권 지역의 낮은 접근성을 해소하기 위한 심야 시간대 전문의 자격 가산 제도 등 추가 지원 필요성에 대한 질의

정경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 권역외상센터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

○ 권역외상센터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

○ 현행 17개 소규모 외상센터의 6~8개 대규모 권역외상센터로의 개편, 닥터헬기 이송시스템 등 이송·응급의료체계와의 유기적 연계 필요 등 외상체계 개선 필요 사항 청취

이주리 (새안산의원 재택의료센터장)

《 재택의료센터 운영 관련》

○ 재택의료센터 개설 시 시범사업 계획서 작성을 교육이수로 대체할 필요

○ 재택의료 업무에 대한 의협 또는 산하단체 차원의 교육 및 홍보 필요

○ 방문 간호사의 1차 왕진 수가 신설 및 개별 수가 완화 필요

이정식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중앙회장)

《 협회 직영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사망사건 관련》

○ 해당 법인 운영 거주시설에서 두 명의 사망자 및 여러 명의 장애인 학대 피해자 발생에 대한 공식적 사과 및 피해자 보호 및 회복, 재발방지 책임 이행 요구

정 신 (전남대학교병원장)

《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관련》

○ 복지부·교육부 및 국립대병원장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를 통한 구체적인 국립대병원 육성 방안 논의 필요,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병원의 수평적 관계로의 전환과 국립대병원 자율성 보장 필요, 지자체 재정격차를 고려한 지원 등 개선방안 제시

○ 교육부 소속인 국립대병원 겸직 교수들의 지위 안정 문제, 연구·교육에의 영향 및 이관에 따른 교육부 관할 재산 분할에 대한 우려 제시

이한결 (정신장애인 당사자)

《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개선 》

○ 강제적인 입원 및 치료 방식이 아닌 자발적 방식의 치료 필요

《 지역사회 자립 지원 및 정신건강 정책에 당사자 참여 확대 》

○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동료지원 사업 활성화 및 정신건강 정책에 당사자 의견 반영 필요

백종우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

《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개선 》

○ 비자의 입원에서 국가 책임 강화 필요(독립기구 설립 또는 사법입원제 전향적 방향 검토 등)

김가연 (X코리아 공공정책총괄 상무)

《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 관련 》

○ 자살유발정보 90% 이상이 엑스를 통해 유통, 그 원인에 대한 질의 및 사회적 책임 느낄 필요 지적

○ 자살유발정보 신고건에 대한 삭제율이 낮은 원인에 대한 질의

○ 공적 창구를 통한 삭제 요청과 이용자 요청의 삭제율 차이 문제 지적

한쌍수 (이니스트에스티 대표)

《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 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 계획 》

○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 현황과 경쟁력 확보 필요성, 정부의 역할, 주요국 정책에 관한 질의

○ 정부의 원료의약품의 전략품목 선정 및 국산화 위한 R&D 지원과 생산 인프라 구축 등 지원정책 필요

○ 원료의약품에 대한 보건안보 차원 접근과 실질적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